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보

제2601호 2023. 3. 9.(목)

입 법 예 고

제2023-9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

고 시

제2023-100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소재지 변경 고시..... 14

제2023-102호 2022년 경상남도 신설 및 변경 기록관리기준표 고시(도 홈페이지 고시)

제2023-103호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6

제2023-104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변경 시행허가 고시(도 홈페이지 고시)

제2023-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 18

제2023-106호 낙지포항(지방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고시..... 22

제2023-107호 하청항(지방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고시..... 28

제2023-108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34

제2023-10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 36

제2023-1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 41

제2023-112호 정촌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44

제2023-113호 정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88

제2023-114호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 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01

제2023-11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고시..... 152

공 고

제2023-512호 2023년 제1회 경상남도 공무원노동자 채용(재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제2023-513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15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16호	2023년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1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18호	2023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19호	2023년 시·군 교육협력사업 공모 재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20호	「2023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관리운영자」 공모 선정 결과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2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2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23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2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2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27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28호	제한경쟁 입찰 공고[거창대학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 기자재 구입(건강체력 진단시스템)](G2B 공고)	
제2023-529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0호	2023년도 경상남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추가 모집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3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153	
제2023-53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4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5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승인) 공고..... 153	
제2023-536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8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39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제2023-540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41호	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긴급)(G2B 공고)	
제2023-542호	매장문화재 공고.....	155
제2023-543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4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45호	공유재산(선박, 경남911호) 매각 일반입찰 재공고(3차)(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46호	경남도립극단 일반직원단원 추가 합격자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47호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48호	용역 입찰 재공고(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종합구상 용역)(G2B 공고)	
제2023-549호	「2023년 도민예산학교 운영 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평가위원 모집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156
제2023-551호	전력시설물 감리업 양도·양수 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2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56
제2023-553호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결과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4호	2023년 경상남도 양성평등사업 지원 계획 공고(2차)(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5호	2023년 경상남도 여성단체활동 지원 계획 2차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6호	2023년 경상남도 여성가족관련 행사 지원 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7호	경남소방교육훈련장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58호	2023년도 경상남도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생 추가모집 변경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6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61호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58
제2023-56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63호	2023년 농식품 소비자단체 교육홍보지원 수행기관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65호	2023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6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제2023-569호	2023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제2023-570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7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제2023-57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신고 수리(승인) 공고.....	161
제2023-573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162
제2023-5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163
제2023-5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66

알 림

창원시 고시 제2023-4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석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 고시	167
창원시 고시 제2023-42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70
창원시 고시 제2023-43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73
창원시 고시 제2023-4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87
창원시 고시 제2023-45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89
창원시 공고 제2023-458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78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90
진주시 고시 제2023-47호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1
진주시 공고 제2023-578호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5
진주시 공고 제2023-650호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7
통영시 고시 제2023-36호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8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3
통영시 고시 제2023-37호	통영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화장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4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사천시 고시 제2023-34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유원지③:실안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 계획) 결정(변경) 고시..... 219
밀양시 고시 제2023-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4-1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222
밀양시 고시 제2023-64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무안죽구장 정비사업) 224
밀양시 고시 제2023-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5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225
밀양시 공고 제2023-62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공사완료 공고..... 227
양산시 고시 제2023-75호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228
양산시 공고 제2023-684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산대학교 [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침단산학단지/실버·생활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292
의령군 고시 제2023-26호	의령군관리계획(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93
고성군 고시 제2023-29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296
고성군 고시 제2023-30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97
고성군 공고 제2023-359호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고성 Nobel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298
고성군 공고 제2023-362호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0호선(배둔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300
고성군 공고 제2023-372호	고성군계획시설(항만: 병산항) 조성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301
산청군 고시 제2023-40호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 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302
함양군 공고 제2023-312호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5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304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4호	경남도립남해대학 강사 채용 합격자 공고(3차) (도 홈페이지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5호	경남도립남해대학 강사 채용 합격자 공고(4차) (도 홈페이지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7호	경남도립남해대학 호텔조리제빵학부 식자재 구입 소액수의(단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G2B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공고 제2023-68호	경남도립남해대학 조교 채용 임용후보자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3-1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노동자 (방역보조원) 채용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3-14호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기간제노동자 채용 관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4호	연구교습어장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한 현장적용 시험사업」) (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24호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참여업체 모집 재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26호	공시송달 공고..... 306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공고 제2023-83호	산마늘 건강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연구용역(2년차)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도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2호	교량인상 공법선정' 을 위한 공법 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사업소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6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7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8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3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0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2호</p> <p>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3-43호</p> <p>경상남도도립미술관 공고 제2023-4호</p> <p>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9호</p> <p>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10호</p> <p>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공고 제2023-13호</p> <p>경상남도축산연구소 공고 제2023-3호</p> <p>경상남도축산연구소 공고 제2023-4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15호</p> <p>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0호</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p> <p>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G2B 공고)</p> <p>경남도립미술관 시설물 및 정원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계획 재공고(도 홈페이지 공고)</p> <p>2023년 제2회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기간제 노동자(장애인 제한경쟁 포함)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p> <p>2022년산 하계전작물 잔여량 매각 입찰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p> <p>2023년 제2차 경상남도농업인력자원관리원 기간제 노동자(장애인 제한경쟁 포함)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도 홈페이지 공고)</p> <p>제2차 「가축분뇨 중숙 퇴비」 공급(도 홈페이지 공고)</p> <p>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G2B 공고)</p> <p>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307</p> <p>하천점용허가 고시..... 308</p>
---	--

입 법 예 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3-9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과 도내 우수 기술창업기업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른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정비(안 제2조)

- ‘기술창업’, ‘신산업창업’,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 정의 규정

나. 신산업창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안 제6조제1항제7호)

다.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관련 기관·단체 위탁근거 신설(안 제6조제3항)

라. 창업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근거 신설(안 제15조)

마.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근거 신설(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창업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창업지원단
-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안대로 300(사림동)
 - 2) 전 화 : 055-211-2553 (FAX : 055-211-2559)
 - 3) E- mail : rabbit Y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경상남도조례 제 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분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 창업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3.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이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하여 제16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기술창업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의한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별표 제목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 관련)”을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술창업”이란 혁신기술 및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분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 3. “경남대표 기술창업 기업”이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하여 제16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기술창업 기업을 말한다. 4.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p>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p>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현 행	개 정 안
<p>5.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6조(기술창업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신 설></p> <p>7. (생 략)</p> <p>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 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은 별표의 업종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다.</p> <p><신 설></p> <p><신 설></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술창업지원 사업) 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② -----<u>제8호</u>----- ----- -----.</p> <p>③ <u>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 사는 <u>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을 설치할 수 있다.</u></p> <p>② <u>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③ <u>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입주자 및 이용 자에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④ <u>제3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 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u></p>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5조 · 제16조 (생 략)</p> <p>[별 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 관련)</p>	<p>제16조(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의한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남대표 기술 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p>제17조 · 제18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와 같음)</p> <p>[별 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p>

고 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0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소재지 변경 고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진교리 삼층석탑」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그 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1. 고시사항 : 소재지 변경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진교리 삼층석탑」

3. 변경내용

문화재명	지정수량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지정면적 (㎡)	소재지	지정면적 (㎡)	
하동 진교리 삼층석탑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1기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38-1 외	93.22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73-2	16	하동군 (하동군수)

4. 변경사유 : 보존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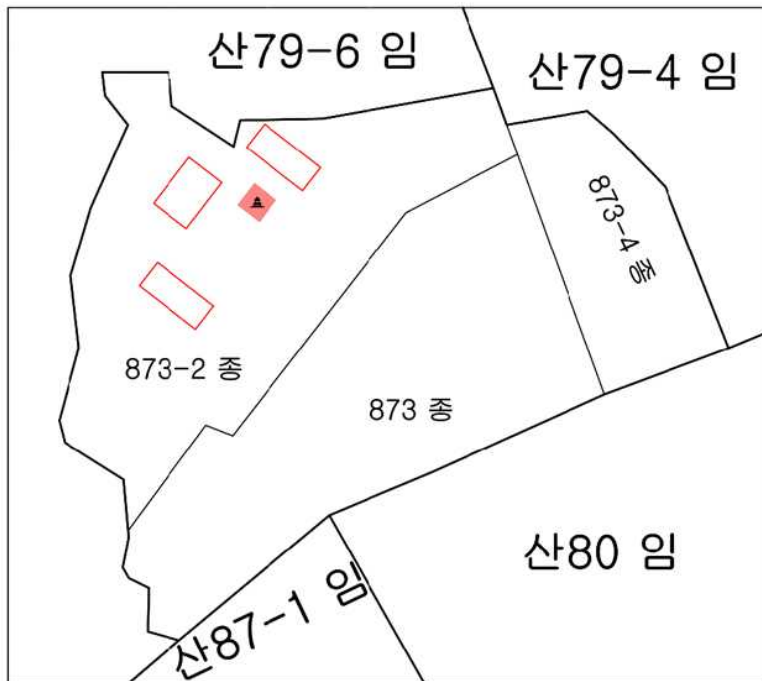
- 5. 연 락 처 - 경남도청 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300
(전화 055-211-4575 · 4576 팩스 055-211-4559)
- 하동군청 문화관광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전화 055-880-2370 팩스 055-880-2369)

- 붙임** 1. 토지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1. 토지조서

문화재명	당 초					소유자	변 경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하동 진교리 삼층석탑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계		4필지	93.22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계		1필지	16	
		338-1	대	2,138	1.70	하동군		873-2	종	4,739	16	금성사
		827-12	대	52	2.60	국 (건설부)						
		338-1	대	2,138	66.38	하동군						
		827-12	대	52	22.54	국 (건설부)						

2. 지형도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하동 진교리 삼층석탑

河東 辰橋里 三層石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8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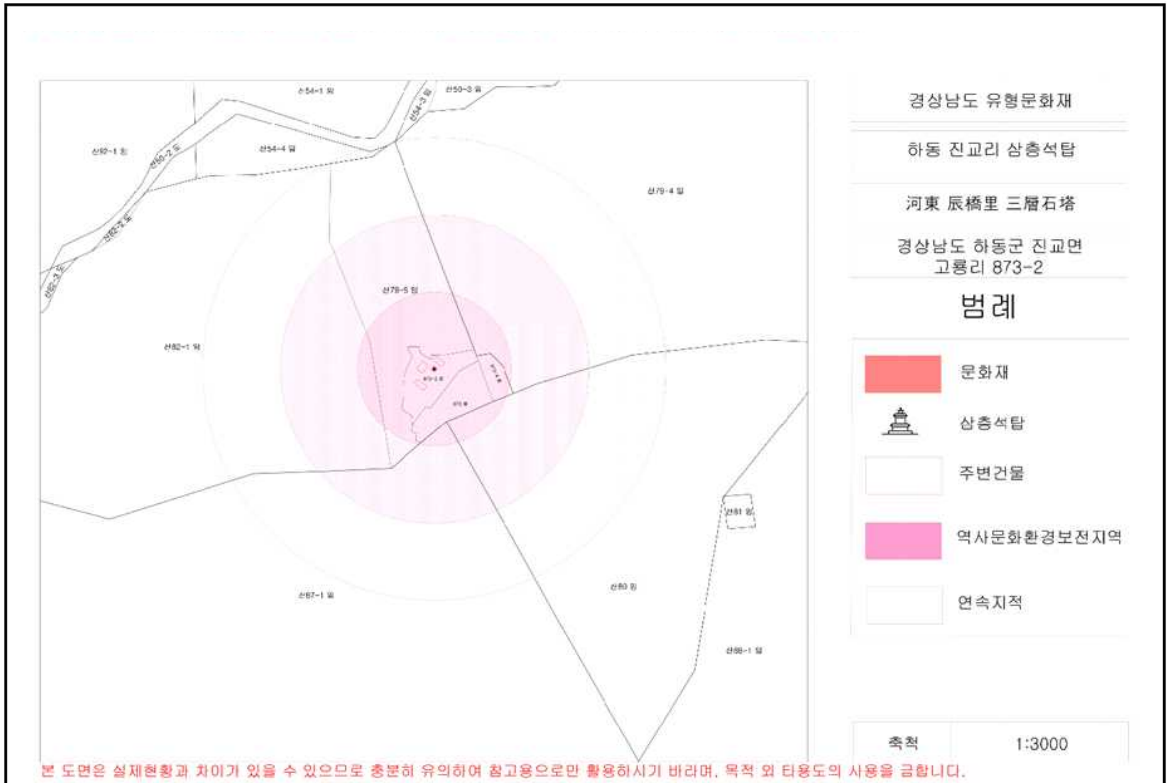
범례

- 문화재
- ▲

삼층석탑
- 주변건물
- 역사문화환경경보전지역
- 연속지적

축척 1:5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언이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복각 및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s://gis-heritage.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3호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서 시행할 「서덕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영농을 확보하기 위함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제당 사석 보강 h=0.8m, L=235m
- 그라우팅 268공(제당 234공, 여수토 34공)
- 구조물(여수토 방수로, 사통, 복통 등) 재설치 1식
 - 취입보 재설치 1식
- 도수로 및 방수로(1.0x1.0,L=343m),관리도로(콘크리트포장 B=3.5m, L=294m)
- 사전방류시설(2.0x2.0) 3개소(서상, 옥계, 구룡저수지)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함양군 서상·병곡면·함양읍 일원

3. 사업비 소요액 : 4,812,000천원

4. 사업예정기간 : 2022. 02 ~ 2024. 12(36개월)

5. 사업의 효과 : 노후저수지 누수 방지 및 안전한 홍수 배제 능력향상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용수확보를 통한 영농편의성 향상

6.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첨부.1 참조

8.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전화 055-940-5533)

<첨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본	부						
1	위천	상천	산46	2	임	36,030	13,267	백○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수용
2	위천	상천	산29	2	임	1,983	1,983	김○동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
3	위천	상천	산30	2	임	3,591	72	청주○씨영모종중	-	"
4	위천	상천	산30	9	임	44,847	473	청주○씨영모종중	-	"
5	위천	상천	산30	1	임	8,642	1,070	청주○씨영모종중	-	"
6	위천	상천	1307	6	구	6,447	334	국(농림수산부)	-	"
7	위천	상천	산64	-	구	27	27	국(농림수산부)	-	"
8	위천	상천	산65	-	구	51,501	942	국(농림수산부)	-	"
9	위천	상천	산30	8	구	880	80	한국농어촌공사	-	"
10	위천	상천	1338	-	구	3,907	115	국(농림수산부)	-	"
11	남상	둔동	산18		임	55,438	6,097	강○수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기정	지방도	1024호선	당항~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일원	-	-	-	-	-
변경	지방도	1024호선	당항~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일원	5,381㎡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 308-2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 295	-	0.280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지1024호 남면 두곡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7 ~ 2023.05.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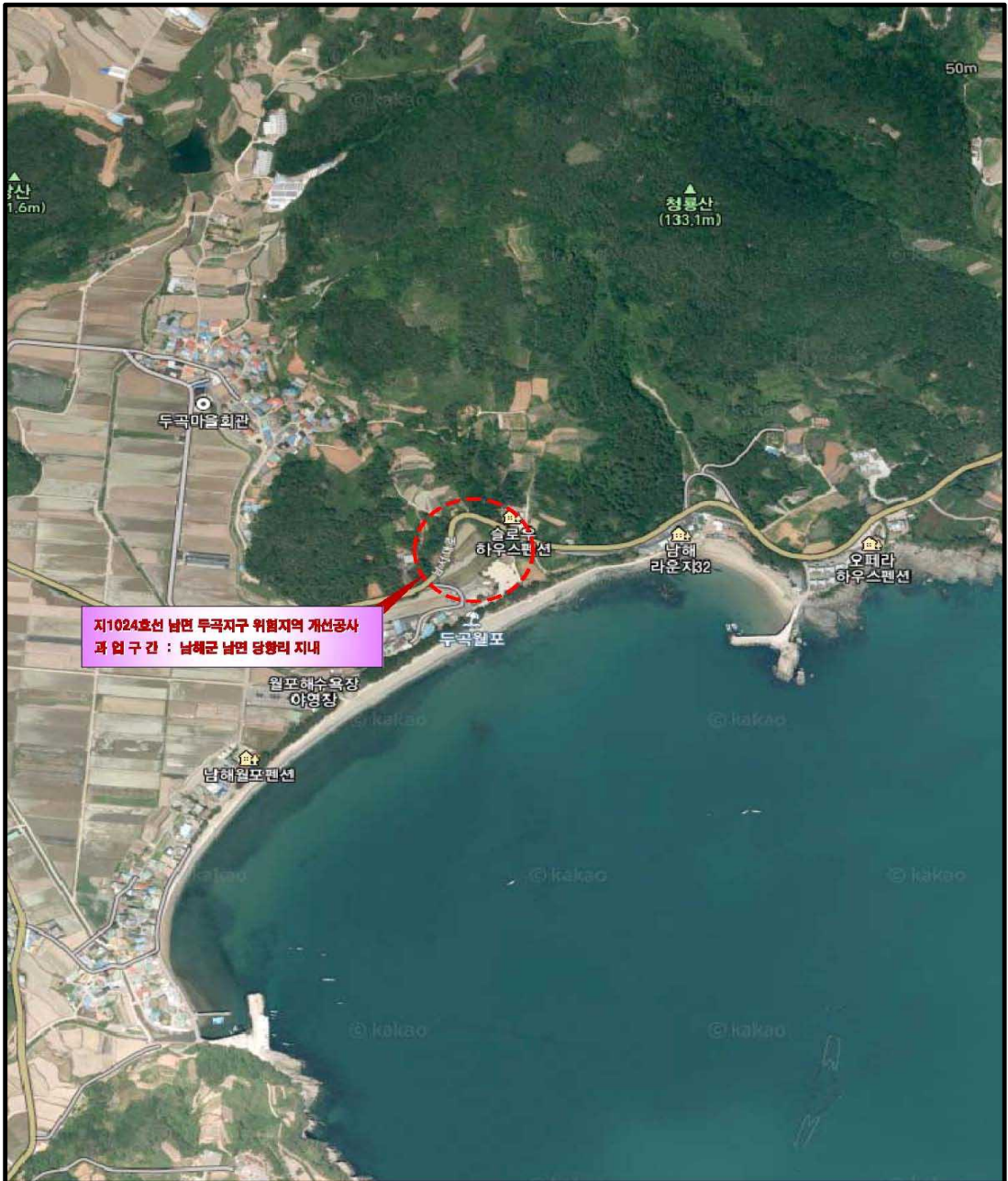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24호선	노선명	당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m 범위 내 ○ 위 치 : 시 점 : 남해군 남면 당항리 종 점 : 남해군 남면 당항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2)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남해군 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위 치 도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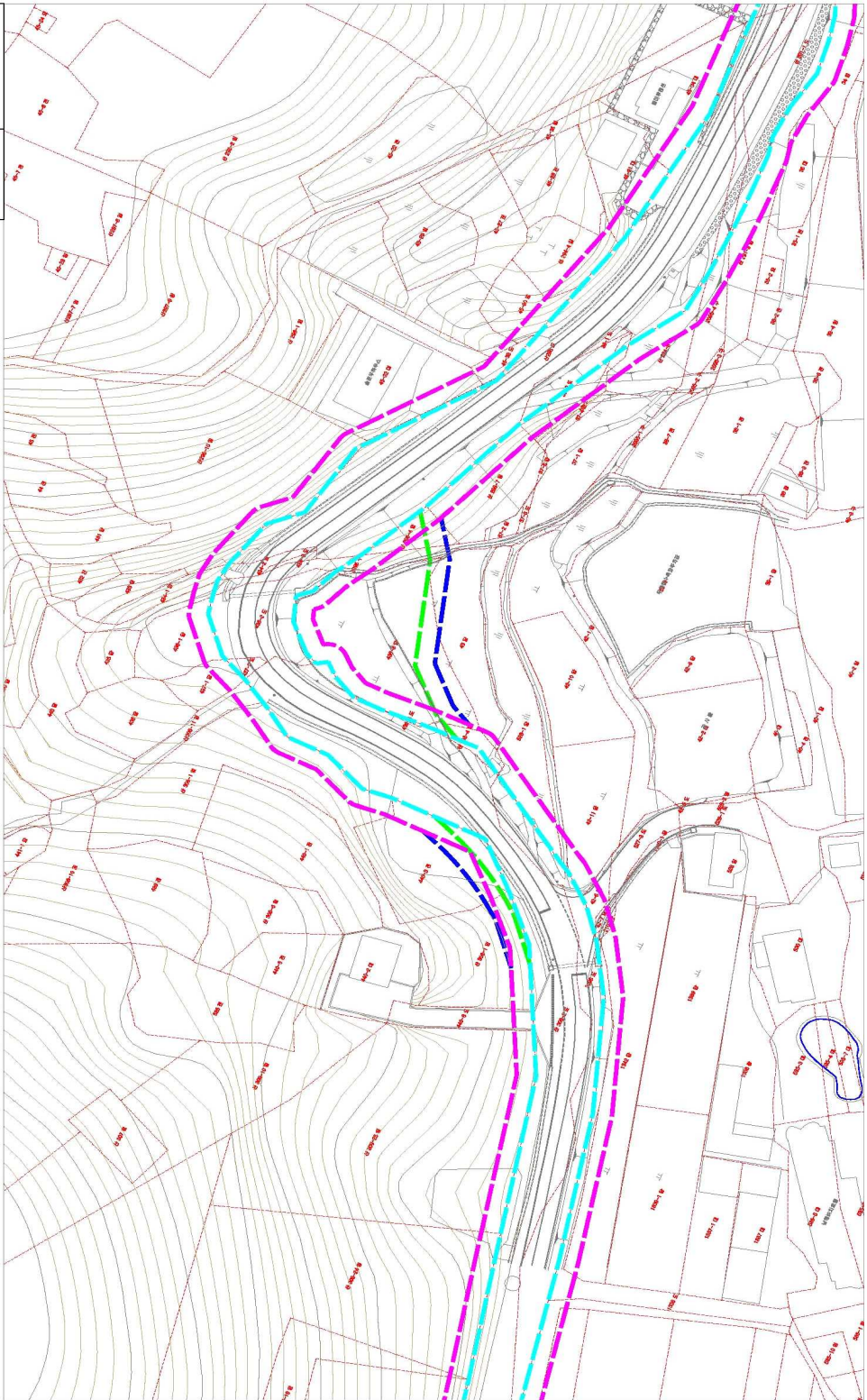
[별첨1]

편입토지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1	남해군 남면 당항리	2096	도	5,347	548	국	국토교통부	
2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308-2	도	3,583	2,174	국	남해군	
3	남해군 남면 당항리	2103	구	17	17	국	농림축산식품부	
4	남해군 남면 당항리	42-7	답	22	22	김동엽	456	
5	남해군 남면 당항리	42-6	도	68	54	박준길	456	
6	남해군 남면 당항리	527-3	도	170	5	신동훈	402	
7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308-1	임	2,169	24	김병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1, 109동 1301호	
8	남해군 남면 당항리	440-3	전	843	85	김병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41, 109동 1301호	
9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308-4	임	83	20	우용	453	
10	남해군 남면 당항리	436-4	도	3	3	김주복	석교리 885	
11	남해군 남면 당항리	436-3	답	1,384	1,108	김영재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6길 16, 104동 1302호	
12	남해군 남면 당항리	436-2	도	520	33	국	남해군	
13	남해군 남면 당항리	2095	구	695	125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296-4	임	131	49	박종엽	석교리 86	
15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295	도	3,413	1,060	국	남해군	
16	남해군 남면 당항리	36-3	도	290	54	국	남해군	

[별첨2]

노선(단선)	노선(이중선)	노선(이중선)	노선(이중선)
노선(단선)	노선(이중선)	노선(이중선)	노선(이중선)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6호

낙지포항(지방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고시

낙지포항(지방어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제1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어항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 가. 명 칭 : 낙지포항
- 나. 종 류 : 지방어항
- 다.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일원
- 라. 변경사유 : 신규매립에 따른 물양장 조성 및 호안, 선양장 개발계획 반영 과 어항시설의 구축 불일치에 따른 면적 조정
- 마. 어항구역

구 분	어 항 구 역 (m ²)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육 역	9,976.8	14,633.8	증)4,657	신규매립
수 역	45,686.2	41,029.2	감)4,657	
합 계	55,663.0	55,663.0	-	

1) 어항 육역

위 치	지 목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제	14-9	1,049	1,049	해양수산부		
		14-10	95	95	해양수산부		
		14-14	294	294	경상남도		
		45-12	987	987	해양수산부		
	잡	14-11	782	782	해양수산부		
		14-12	265	265	사천시		
		14-13	6,504.8	6,504.8	경상남도		
		매립예정	4,657	4,657	-	신규	
	합 계			14,633.8	14,633.8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2) 어항 구역

어항명	어 항 구 역	
낙지포항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당초	○ 동측방과제 시점부 남동측 30m, 서측방과제 시점부에서 서북측 30m, 서방과제 선단부에서 외항측 30m, 남측으로 이동한 선을 연결한 선내 구역
	변경	○ 서방과제에서 30m 이동한 선 No.1 (X : 163,611.933 Y : 105,874.402)에서 남동측No.2(X : 163,457.666, Y : 105,807.017), 동방과제에서 30m 이동한 선 No.3 (X : 163,510.777, Y : 106,122.667)에서 남서측No.4(X : 163,362.021, Y : 106,050.688)을 연결한 선내 구역

2. 낙지포항 개발계획(변경)

시설물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방과제	동방과제	m	190.5	190.5	-	
	서방과제	m	100.0	100.0	-	
물양장		m	110.0	150.0	증) 40.0	연장(매립)
호안		m	-	42.2	증) 42.2	신규
선양장		m	-	63.0	증) 63.0	신규

* 신규매립 4,657㎡ : 어항시설부지 4,551㎡, 가각정비 106㎡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시설별	용도별	단 위	개 발 계 획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기본시설	외곽시설	방과제, 호안	㎡	2,319	2,425	증)106	
	접안시설	물양장, 선양장	㎡	1,080	1,480	증)400	
	소 계		㎡	3,399	3,905	증)506	
기능시설	수송시설	어민 주차장	㎡	1,127	203	감)924	
		주 차 장	㎡	-	2,303	증)2,303	
		도 로	㎡	830	605	감)225	
		계	㎡	1,957	3,111	증)1,154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 분	시 설 별	용 도 별	단 위	개 발 계 획			비 고
				당 초	변 경	증 · 감	
기능시설	어선·어구	어선수리장	m ²	-	122	증)122	
		어구수리장	m ²	-	3,183	증)3,183	
		야 적 장	m ²	1,715	905	감)810	
		어구창고	m ²	555	967	증)412	
		계	m ²	2,270	5,177	증)2,907	
	수산기능	위판장, 제빙시설	m ²	590	1,047	증)457	
		급수시설	m ²	145	345	-	
		급유시설	m ²	200		-	
		해양수산관련 공공시설	m ²	283	-	감)283	
		계	m ²	1,218	1,392	증)174	
소 계			m ²	5,445	9,680	증)4,235	
편의시설	이용자	어민복지회관	m ²	-	276	증)276	
		복지시설	m ²	525	525	-	
	소 계			m ²	525	801	증)276
합 계			m ²	9,369*	14,386**	증)5,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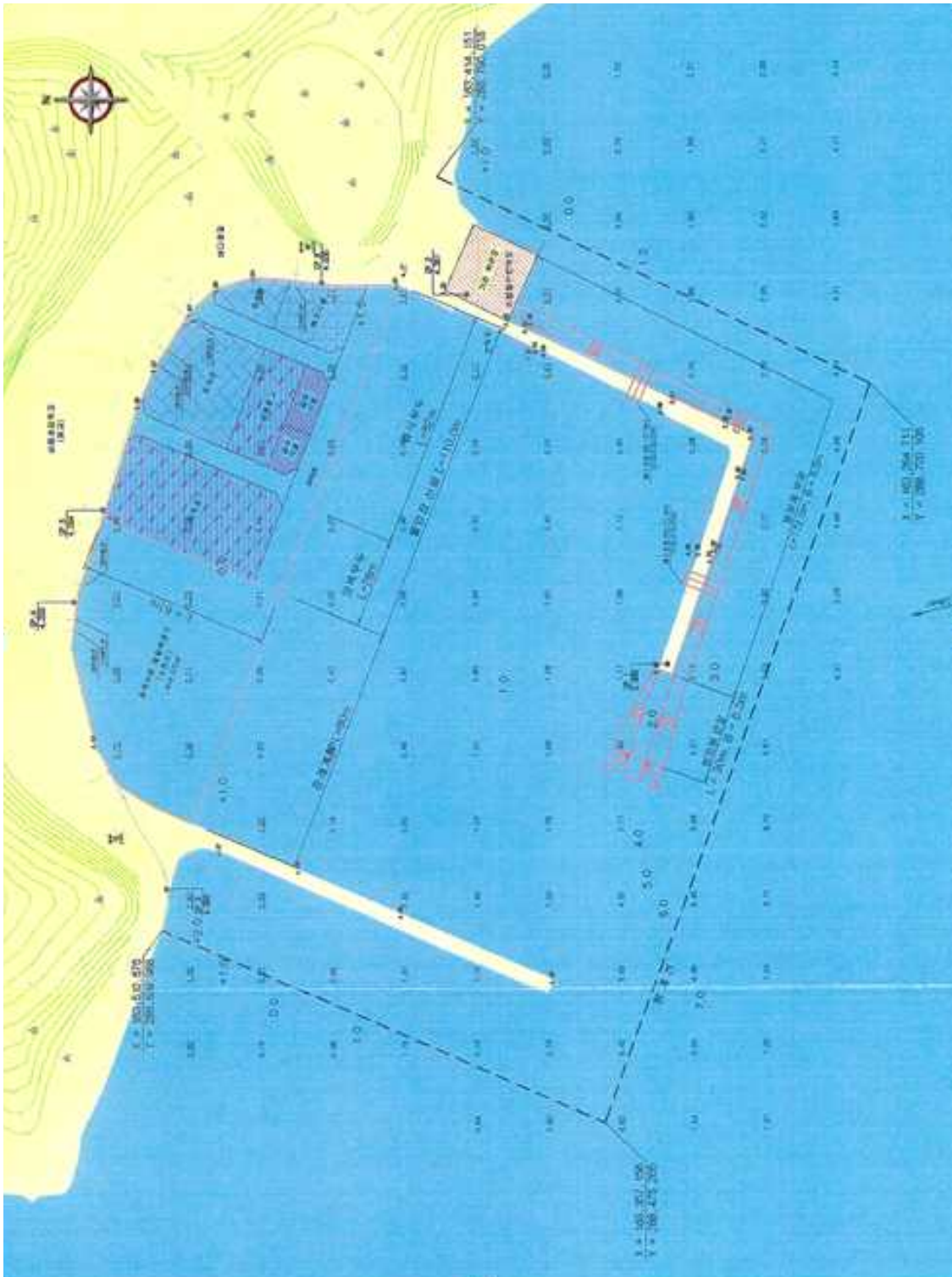
* 2006.12.28. 당초 구적면적 9,369m²로 고시되었으나 정확한 구적결과 9,729m² 확인됨

** 매립면적 4,657m²이 포함된 면적임.

4.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 경남도청 어촌발전과, 거제시청 해양항만과

붙임1 낙지포항 개발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당초)

개발계획평면도 및 부지이용계획도(20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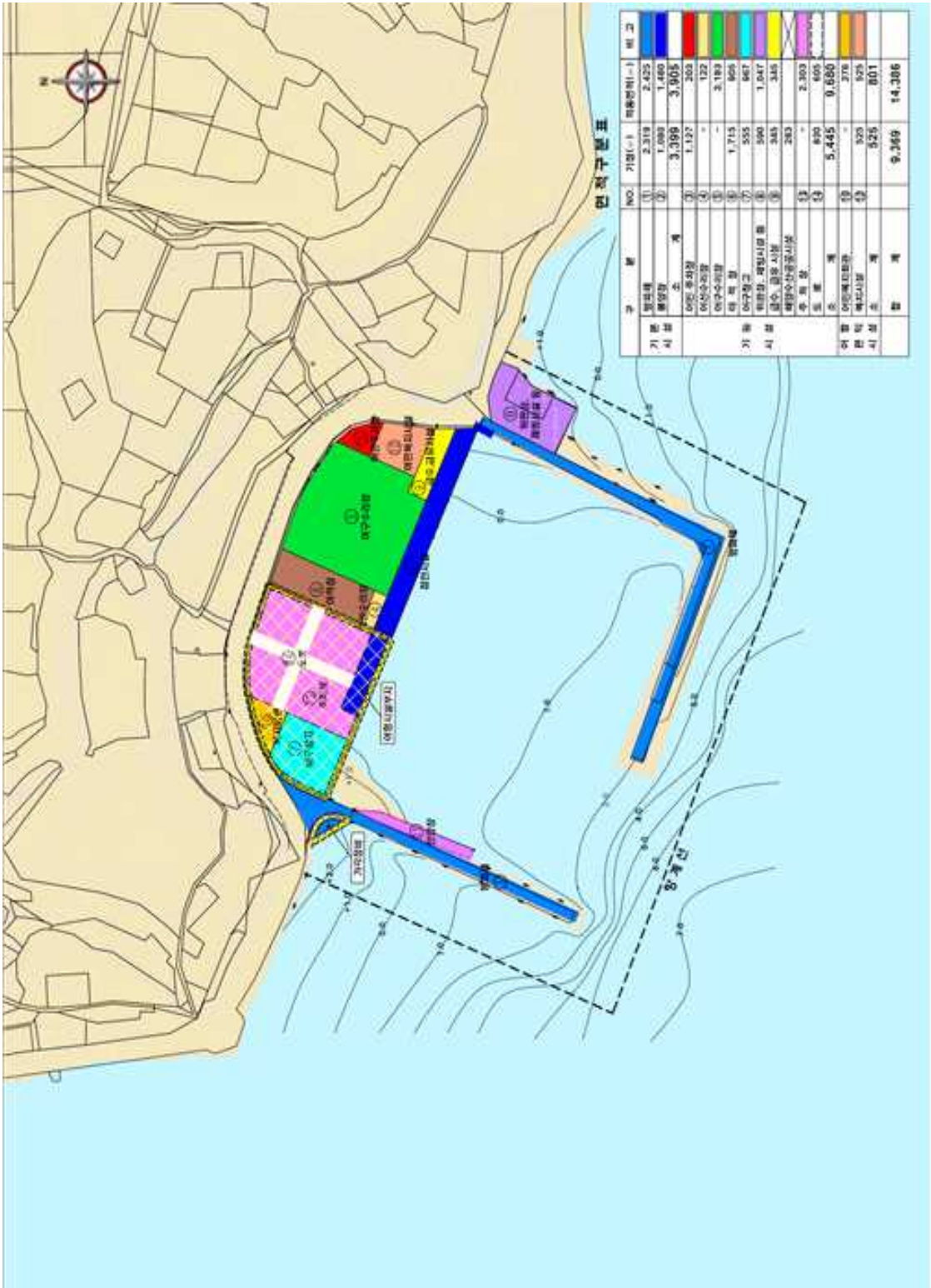


붙임2 낙지포항 개발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개발계획평면도



○ 토지이용계획도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7호

하청항(지방어항)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고시

하청항(지방어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17조 및 제19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항구역 및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어항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가. 명 칭 : 하청항

나. 종 류 : 지방어항

다.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일원

라. 변경사유 : 호안과 매립면적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과 어항시설의 지적 불일치에 따른 면적 조정

마. 어항구역(변경)

구 분	어 항 구 역 (㎡)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육 역	12,407	11,661	감)746	매립지조정
수 역	146,681	147,427	증)746	
합 계	159,088	159,088	-	

1) 어항 육역

위 치	지 목	지 번	면 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제	1239-4	518	518	경상남도	
		1239-5	1,277	1,277	경상남도	
		1239-6	1,038	1,038	경상남도	
	매립지		6,734	6,734		신규매립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잡	1005-7	1,543	1,543	경상남도	유보지
	매립지(방과제)		551	551		신규매립
합 계			11,661	11,661		

2) 어항 구역

어항명	어 항 구 역	
하청항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당초	외꼬지 최남단 돌출부에서 석씨 마을 쪽으로125m 나간점에서 남측으로 90°방향으로 마을앞 도로의 돌출부와 연결한 항내수면
	변경	남방파제 시점부 N0.3 (X : 162,397.143, Y : 167,700.204)에서 352m 나간 No.2 (X : 162,730.079, Y : 167,586.858)에서 북동측 90°방향으로 161m 나간 점No.1 (X : 162,782.030, Y : 167,739.456)을 연결한 항내수면

2. 하청항 개발계획(변경)

시설물	단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남방파제	m	227	227	-	
북방파제	m	110	110	-	
물양장	m	120	100	감)20	매립부지 축소
호안	m	215	133.2	감)81.8	위치조정

※ 주변여건 변동에 따른 수량조정 및 위치조정 : 호안

3. 토지 이용계획(변경)

시 설 구 분			단위	적용면적		
				당 초 (1995.9)	변 경	증·감
기본시설	외곽시설	방파제	m ²	2,833	3,384	증)551
	집안시설	물양장	m ²	2,800	1,000	감)1,800
		소 계	m ²	5,633	4,384	감)1,249
기능시설	수송시설	주차장	m ²	2,230	881	감)1,349
	어선·어구 보전시설	어선수리장	m ²	1,200	200	감)1,000
		어구수리장	m ²	-	3,290	증)3,290
		야적장	m ²	-	420	증)420
		어구창고	m ²	650	543	감)107
		소 계	m ²	1,850	4,453	증)2,603
	수산기능 지원시설	급유시설	m ²	650	-	감)650
		냉동·냉장시설	m ²	890	-	감)890
		급냉시설	m ²	1,000	-	감)1,000
		위판장	m ²	760	-	감)760
소 계		m ²	3,300	-	감)3,300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시 설 구 분			단 위	적 용 면 적		
				당 초 (1995.9)	변 경	증·감
편의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복지시설	m ²	-	400	증)400
		소 계	m ²	-	400	증)400
합 계			m ²	13,013*	10,118**	감)2,895

* 1995.9.22. 당초 구적면적 13,013㎡로 고시되었으나 정확한 구적결과 10,864㎡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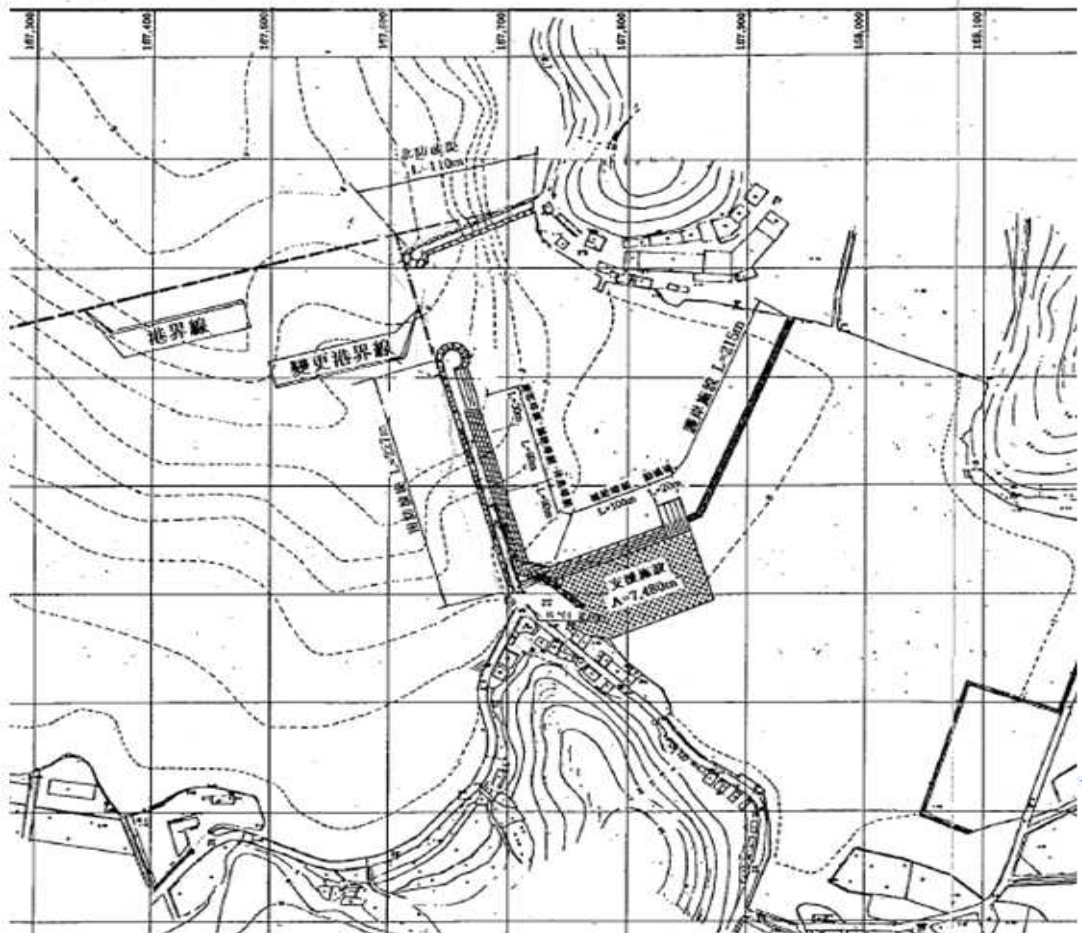
** 매립축소 면적 746㎡이 반영된 면적임.

4.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 경남도청 어촌발전과, 거제시청 해양항만과

붙임1 개발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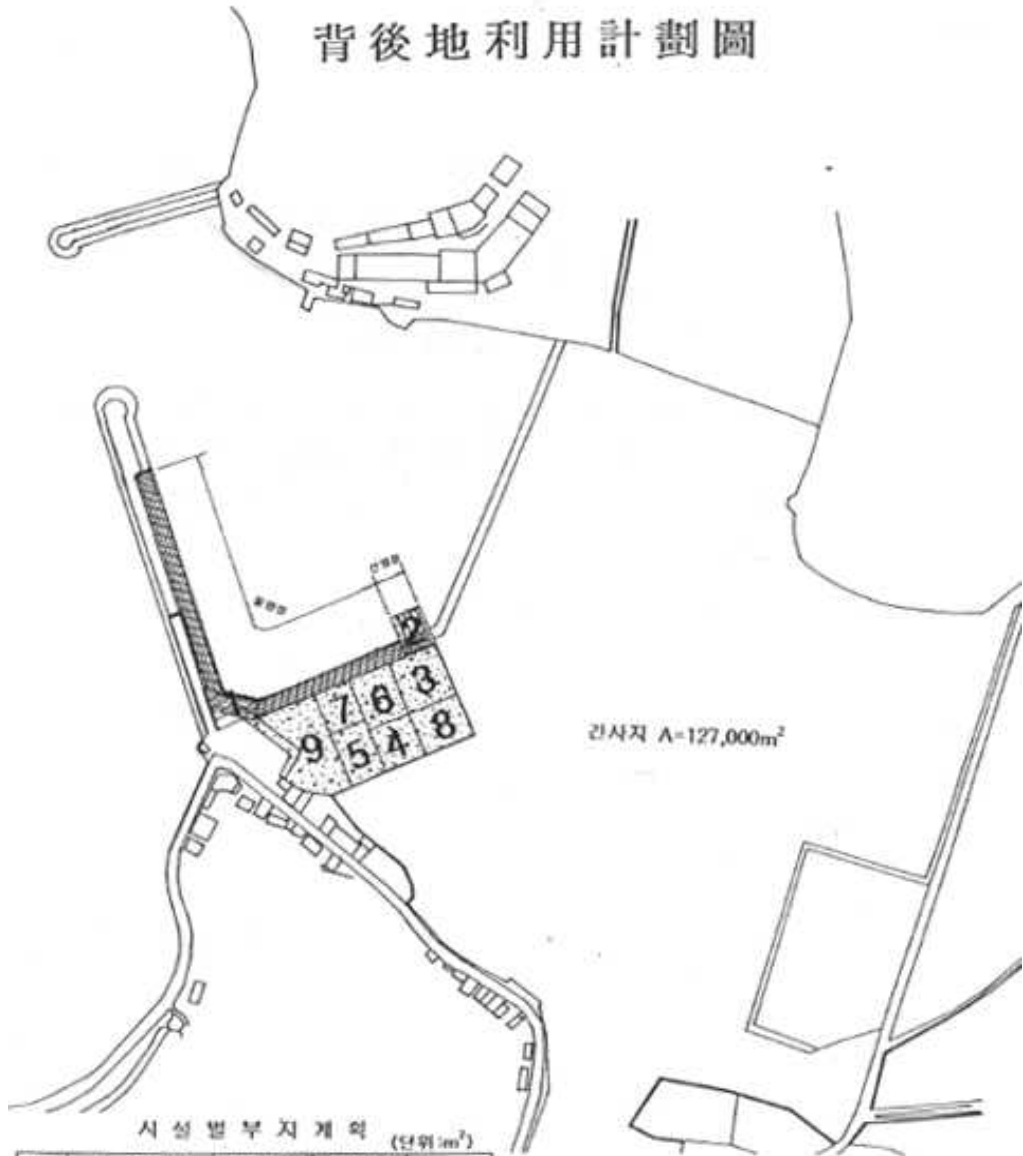
개발계획평면도(1995.9)

河 清 港 計 劃 平 面 圖



토지이용계획도(1995.9)

背後地利用計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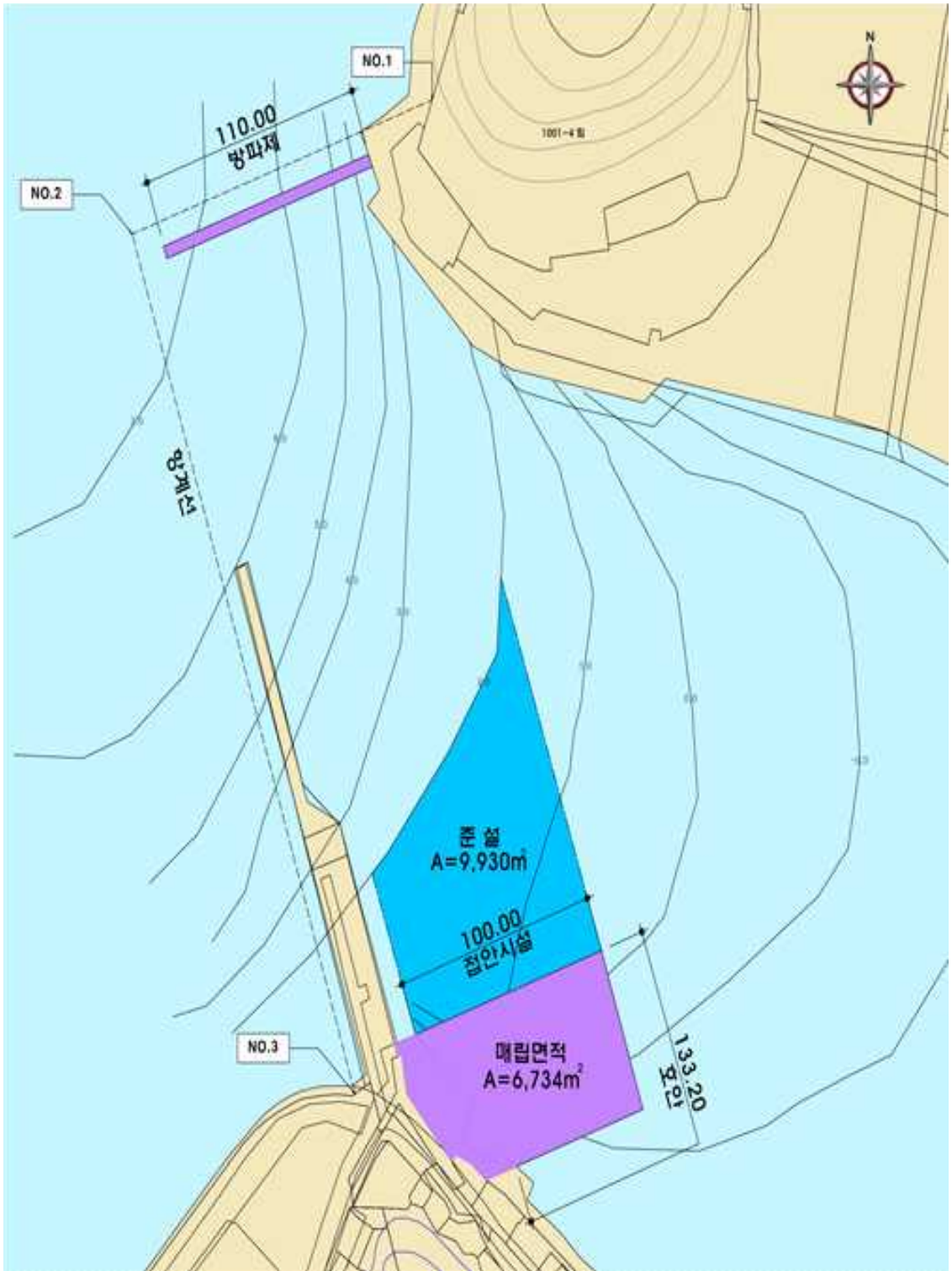


시설별부지계획 (단위: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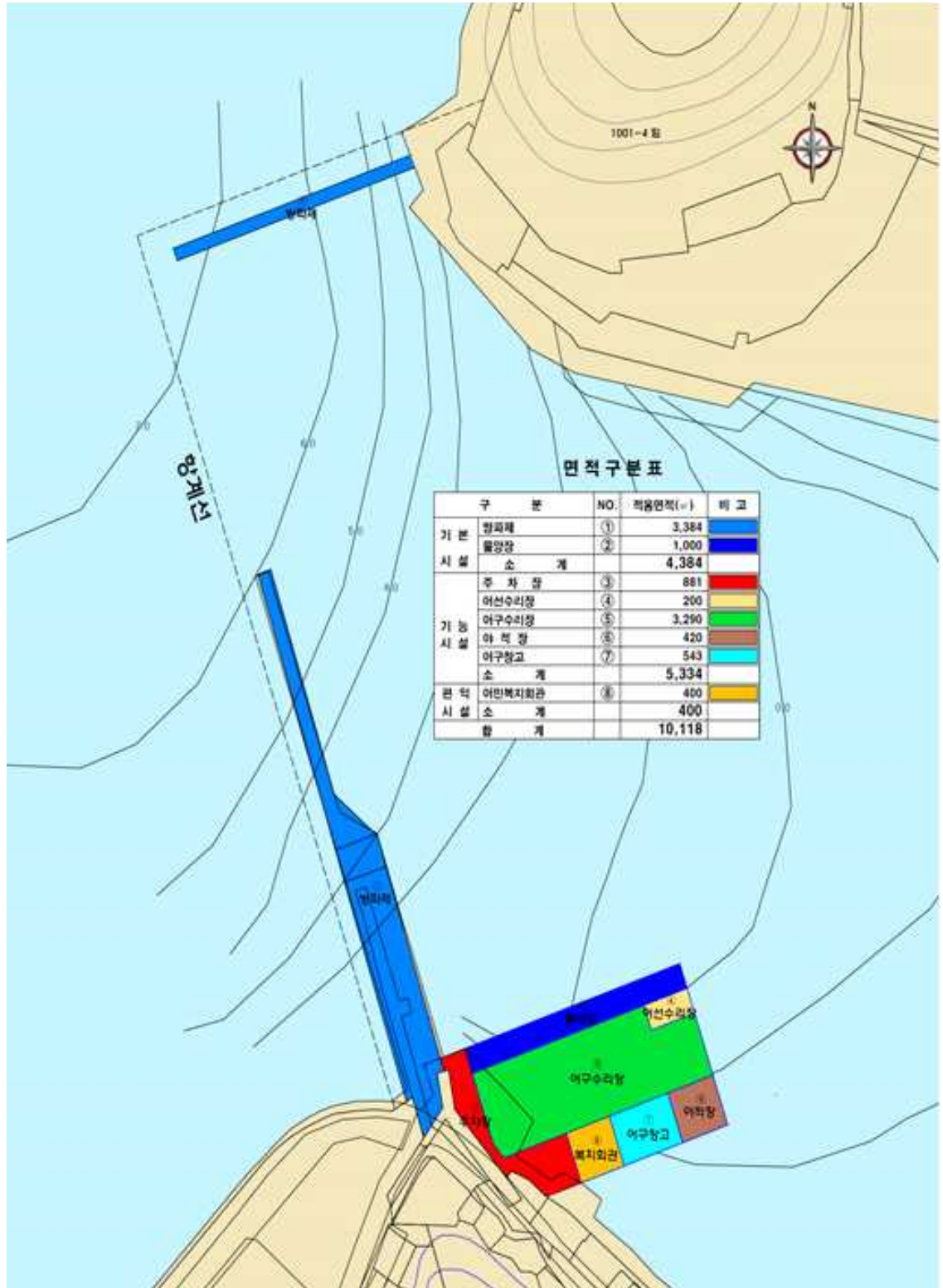
번호	시설명	소요면적	계획면적	비고
1	A PROM	-	2,800	
2	선영선	18.8m	20m	
3	선저장	360	1,200	
4	급유시설부지	50	650	
5	냉동 및 냉장 시설부지	190	890	
6	급냉시설부지	200	1,000	
7	위판상	100	760	
8	공동창고	100	650	
9	주차장	-	2,230	
계		1,019	10,200	

붙임2 개발계획평면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개발계획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08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거창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붙임 1]

2. 관계도면 : 게재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붙임 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 지역	소계	4,873,879	-	4,873,879	0.61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121,743	-	3,121,743	0.39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057	-	196,057	0.02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계	1,575,167	-	1,575,167	0.2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546,725	-	1,546,725	0.19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녹지 지역	소계	25,413,400	-	25,413,400	3.16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자연녹지지역	16,046,669	-	16,046,669	2.00	
관리 지역	소계	263,629,903	-	263,629,903	32.78	
	보전관리지역	173,375,598	감 57,460	173,318,138	21.56	
	생산관리지역	8,398,672	-	8,398,672	1.04	
	계획관리지역	81,855,633	증 57,460	81,913,093	10.18	
농림지역		467,600,498	-	467,600,498	58.15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미지정		-	-	-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3-17호(2023.1.19.)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에 따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57,460	-	57,460	10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7,460	감) 57,460	-	-	
	계획관리지역	-	증) 57,460	57,460	100.0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보전 관리 지역	계획 관리 지역	57,460	100% 이하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과 연계한 제2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체육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제2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361번지 일원	-	증)56,820	56,820	-	

■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6	제2스포츠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신설 - 면적 : 56,820㎡ 	거창창포원 및 남하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체육시설 집중화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경상남도 고시 제 2023-109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1024호	임포~선구	-	-	-	-	-	-
변경	지방도	1024호	임포~선구	남면 선구리	3,280㎡	선구리 1109-2	선구리 1145-2	-	0.190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지1024호 선구지구 외 1개소 굴곡도로 개량공사
- 2).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05 ~ 2023.05.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 첨

나.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24호선	노선명	임포~선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m 범위 내 ○ 위 치 : 경남 남해군 남면 선구리 1109-2~1145-2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피방지 ○ 도로의 미관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고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2).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남해군 도로과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위 치 도



[붙임 1] 편입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남면 선구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선구리	1147-1	도	7.0	7.0	김종태	1226	
2	선구리	1168-5	도	452.0	452.0	강종욱	1335	
3	선구리	1109-2	도	3,211.0	485.0	남해군	-	
4	선구리	1168-4	도	66.0	66.0	김달중	1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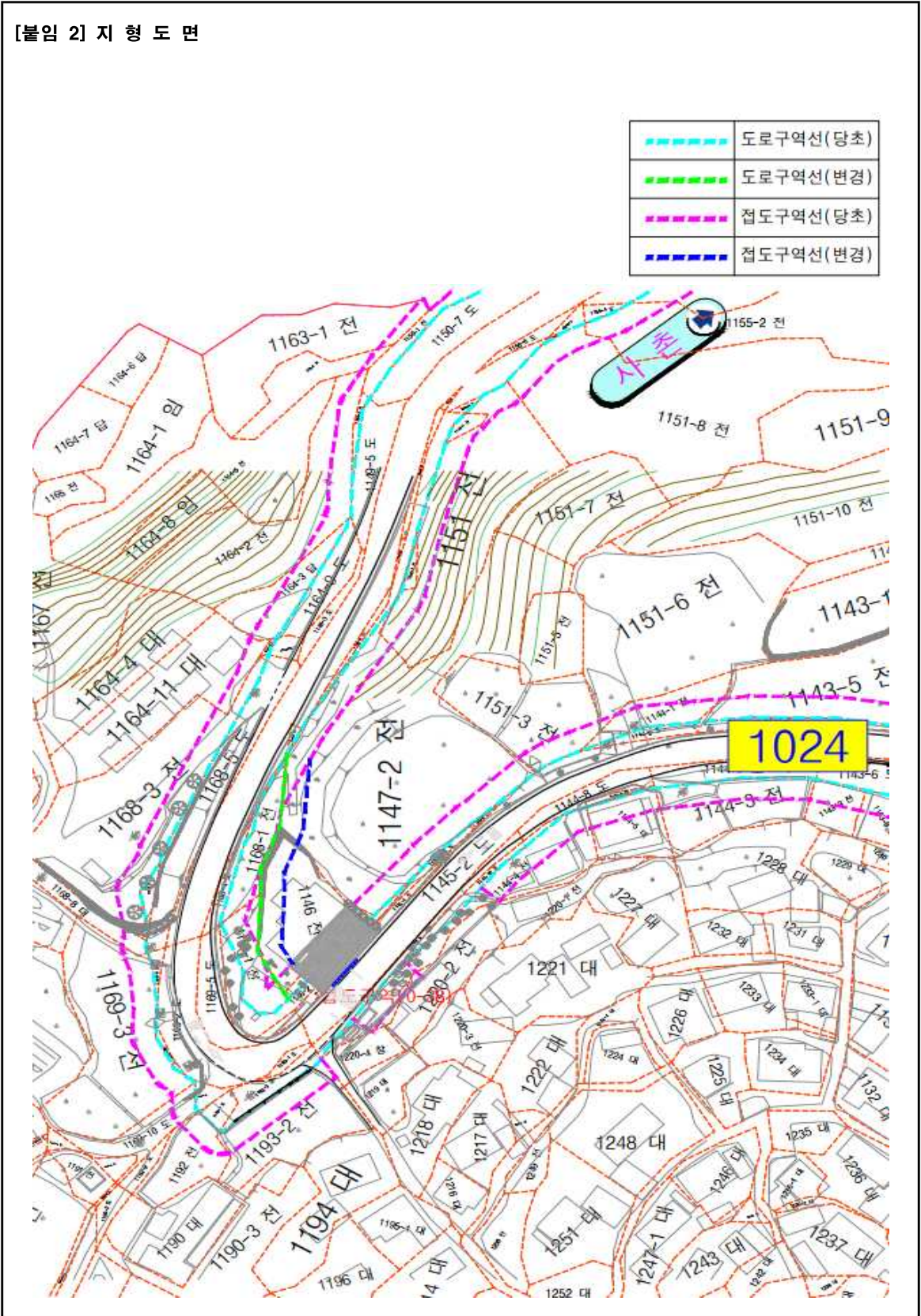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남면 선구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5	선구리	1169-2	도	426.0	426.0	김용도	1233	
6	선구리	1169-5	도	198.0	198.0	김형기	1253	
7	선구리	1146-2	도	183.0	183.0	남해군	-	
8	선구리	1169-8	도	27.0	27.0	남해군	-	
9	선구리	1192-1	도	42.0	42.0	김숙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71, 108동 1403호	
10	선구리	1193-3	도	101.0	101.0	선구리마을회	1293-2	
11	선구리	1193-1	도	23.0	23.0	박춘심	1248	
12	선구리	1145-4	도	96.0	96.0	김돌세	1337	
13	선구리	1144-10	도	69.0	69.0	남해군	-	
14	선구리	1146-1	도	35.0	35.0	김재련	1331	
15	선구리	1145-1	도	76.0	76.0	김학권	1266	
16	선구리	1151-13	도	33.0	33.0	김종태	1226	
17	선구리	1151-12	도	6.0	6.0	김학순	1626	
18	선구리	1145-2	도	1,268.0	565.0	남해군	-	
19	선구리	1144-8	도	126.0	47.0	김돌세	-	
20	선구리	1168-1	전	168.0	168.0	김달중	1236	
21	선구리	1169-1	전	175.0	175.0	김중권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1386, 101동 414호	
합 계				6,788	3,280			

[붙임 2] 지 형 도 면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연속지적도)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연속지적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기정	지방도	1024호	설천~창선	-	-	-	-	-	-
변경	지방도	1024호	설천~창선	창선면 진동리	5,730㎡	진동리 296-5	진동리 509-2	-	0.342

나.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굴곡개량사업에 따른 위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다.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3. 3. ~ 2024. 6.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1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2). 열람장소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남해군 건설교통과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가.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번호	1024호	노선명	설천~창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5.0m 범위 내 ○위 치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296-5 ~ 509-2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도로의 미관보존 ○교통에 대한 위협방지 등을 위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고					

첨부서류 편입용지도 및 지형도면 1부.

경 남 공 보

제25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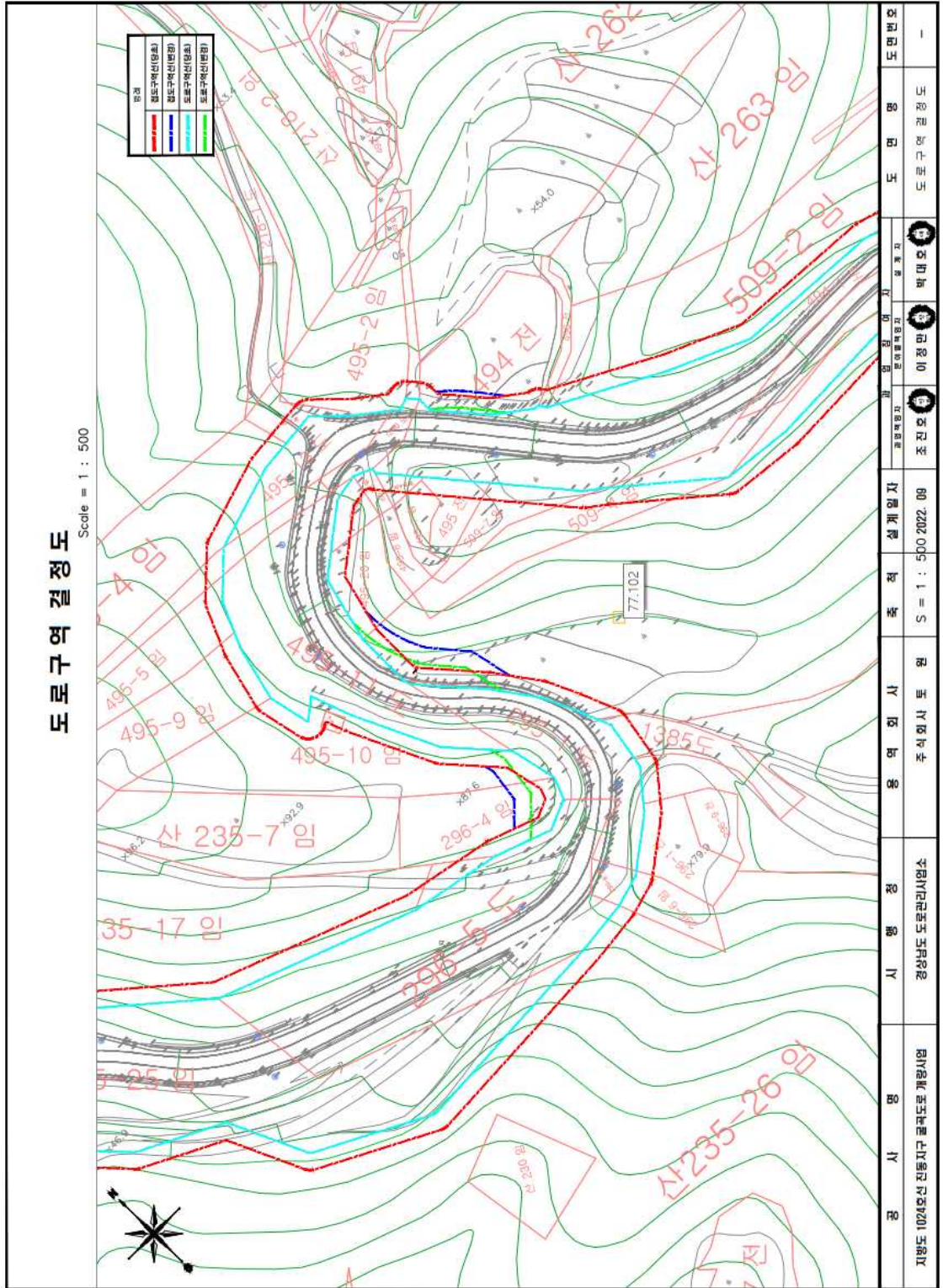
2023. 3. 2.(목)

[붙임 1]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남해군 창선면)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진동리	296-5	도	3,954	1,108	경상남도		
2	진동리	296-4	임	915	230	김일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078	
3	진동리	495-10	임	2,081	149	탁운보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72	
4	진동리	295-1	도	1,282	889	남해군		
5	진동리	1385	도	519	33	(주)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1353	임	97,160	426	(주)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495-11	도	2,297	840	남해군		
8	진동리	495-20	임	487	115	윤계완 외 2인	사정	
9	진동리	495-17	임	160	40	김안식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477	
10	진동리	산168-4	도	5,122	29	(국)국토교통부		
11	진동리	495-12	임	70	6	김준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96번길 32-16	
12	진동리	1240	도	403	217	(국)국토교통부		
13	진동리	495-13	도	612	245	남해군		
14	진동리	494-1	도	4,795	1,143	남해군		
15	진동리	509-9	임	1,280	18	경상남도		
16	진동리	495-2	임	1,299	12	김준길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496번길 32-16	
17	진동리	494	전	1,270	197	박풍택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227	
18	진동리	496	전	139	12	김화금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선로 1504-14	
19	진동리	509-2	임	4,147	21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90번길, 1001호 (청담동,연세리버테라스)	
소 계				127,992	5,730			

[붙임 2]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2호

정촌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322호(2005. 11. 10.)로 산업단지 지정, 경상남도 고시 제2016-75호(2016.03.03.), 경상남도 고시 제2018-413호(2018.11.0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정촌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정촌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정촌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진주시 발전에 따라 도심에 위치하게 된 상평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소
- 상위계획상의 광역유통단지과 산업단지의 통합추진으로 효율성제고
-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발전제고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일원
- 면 적 : 기정 - 1,712,742.3㎡

[1공구 : 901,826.7㎡, 2공구 : 752,781.3㎡ 3공구 : 58,134.3㎡]

변경 - 1,711,677.6㎡(감 1,064.7㎡ 0.06%)

[1공구 : 901,826.7㎡, 2공구 : 751,716.6㎡, 3공구 : 58,134.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5. 11. 10. ~ 2014. 7. 31. (기 준공)
-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제1차금속제품제조업 중 강관제조업(C24132)
-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 전기 장비 제조업(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중 기타 발전업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기 정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 성 명 : 경남개발공사 사장
- 변 경(금회 변경부분에 한함)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 성 명 : 진주시장 조규일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712,742.3	감 1,064.7	1,711,677.6	100.0	
산업시설 용지	소 계	644,933.7		644,933.7	37.6	
	산업시설	580,875.2		580,875.2	33.9	
	물류시설	64,058.5		64,058.5	3.7	
주거시설 용지	소 계	155,667.8		155,667.8	9.1	
	공동주택	142,665.0		142,665.0	8.3	
	단독주택	13,002.8		13,002.8	0.8	
상업시설 용지	소 계	207,109.5		207,109.5	12.0	
	지원시설	75,615.7		75,615.7	4.4	
	유통시설	129,164.0		129,164.0	7.5	
	주유소	2,329.8		2,329.8	0.1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공공시설 용지	소 계	705,031.3	감 1,064.7	703,966.6	41.3	
	공원	71,443.1		71,443.1	4.2	
	녹지	132,306.4	감 1,012.3	131,294.1	7.7	
	철도	22,965.0		22,965.0	1.3	
	도로	316,513.1		316,513.1	18.5	
	보행자도로	1,278.9	감 19.3	1,259.6	0.1	
	주차장	17,756.4		17,756.4	1.0	
	학교	12,098.8		12,098.8	0.7	
	배수지	3,795.9		3,795.9	0.2	
	수도시설	9,386.6		9,386.6	0.6	
	공공공지	1,286.8		1,286.8	0.1	
	저류시설	21,874.1		21,874.1	1.3	
	하천	50,481.1		50,481.1	3.0	
	폐수처리장	14,331.5		14,331.5	0.8	
	폐기물처리시설	29,480.5		29,480.5	1.8	
통신시설	33.1	감 33.1	-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

가) 도로 총괄계획(변경)

(단위 : 개, m, m²)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51	17,621	321,661	14	5,529	105,051	18	7,130	124,407	19	4,962	92,203
	변경	51	17,618	321,641.7	14	5,529	105,051	18	7,130	124,407	19	4,959	92,183.7
대로	기정	4	4,224	113,155	-	-	-	2	1,511	45,330	2	2,713	67,825
	변경	4	4,224	113,155	-	-	-	2	1,511	45,330	2	2,713	67,825
중로	기정	33	11,642	194,184	12	4,953	99,291	11	4,875	73,125	10	1,814	21,768
	변경	33	11,642	194,184	12	4,953	99,291	11	4,875	73,125	10	1,814	21,768
소로	기정	14	1,755	14,322	2	576	5,760	5	744	5,952	7	435	2,610
	변경	14	1,752	14,302.7	2	576	5,760	5	744	5,952	7	432	2,590.7

※ 1. 도로면적은 교차부, 가각부, 하천4개소 포함[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면적
 2. 구역외 도로(대로2-5호선)는 총괄표에서 제외.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나)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도로	1,230	대로 2-5	지구계 남동측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729	국도 3호선	대로 2-4	일반 도로		"	구역외
기정	대로	2	6	30	보조 간선도로	281	대로 3-19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대로	3	19	25	보조 간선도로	1,419	지구계 북서측	대로 3-2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대로	3	20	25	보조 간선도로	1,294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1,035	중로 1-62	중로 1-6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1	20	국지도로	381	중로 2-63	중로 1-6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도로	1,334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3	20	국지도로	141	중로 1-62	사천 비행장선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4	20	국지도로	364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5	20	국지도로	272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6	20	국지도로	680	대로 2-4	대로 3-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7	20	국지도로	263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8	20	국지도로	263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9	20	국지도로	100	대로 3-20	중로 2-6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70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3-3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1	71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2	15	국지도로	173	중로 2-64	중로 2-6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3	15	국지도로	215	중로 1-60	중로 2-6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4	15	국지도로	597	중로 1-62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65	15	국지도로	213	중로 3-32	소로 1-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2	66	15	국지도로	521	중로 2-67	중로 2-67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67	15	국지도로	780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8	15	국지도로	1,307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9	15	국지도로	447	중로 1-66	중로 2-7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488	대로 2-4	대로 3-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	중로 1-62	중로 2-66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2	72	15	국지도로	74	중로 2-66	중로 2-6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258	중로 1-60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191	중로 2-63	중로 2-64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209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254	중로 2-63	중로 3-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152	중로 2-65	중로 3-3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144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239	중로 3-38	소로 1-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67	대로 3-19	중로 2-6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83	중로 1-60	중로 3-3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9	중로 3-29	중로 3-29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4	화개천	구역계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0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소로	3	1	6	특수도로	17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12	중로 1-64	배수지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88	중로 1-60	근린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9	중로 1-60	소로 2-1	보행자 전용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36	대로 3-19	중로 3-3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대로 2-4	지구계 남서측	일반 도로		"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17,756.4		
기정	20	주차장	예하리 1236-335전 일원	4,66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1	주차장	예하리 556답 일원	2,742.3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2	주차장	예하리 산10-1입 일원	2,698.9	"	
기정	23	주차장	예하리 1236-200전 일원	2,56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4	주차장	예하리 523-1전 일원	711.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5	주차장	예하리 11전 일원	2,271.4	"	
기정	26	주차장	예하리 551답 일원	2,10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3)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40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예하리 444답 일원	19,981.8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4) 철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정촌면 화개리	정촌면 예하리	-	1,355	22,965.0	철도 준치구간

5)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

가)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	71,443.1		
기정	18	-	수변공원	예하리 1236-238전 일원	11,858.1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19	-	근린공원	예하리 산27-7입 일원	55,270.4	"	
기정	45	-	어린이 공원	예하리 519-4대 일원	1,435.2	"	
기정	1	-	소공원	예하리 1236-19답	2,879.4	"	

나)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41,516.2	감1,012.3	140,503.9		
변경	35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73전 일원	4,292.9	감686.2	3,606.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수도 중복결정
기정	36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78답 일원	1,775.2			"	
기정	3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5도 일원	613.3			"	
기정	39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산8-21입 일원	45,764.7			"	
기정	40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719-7답 일원	12,222.1			"	
기정	41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80-2입 일원	12,706.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수도 중복결정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기정	42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66-3답 일원	6,353.3			"	수도 중복결정
기정	43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27답 일원	1,655.0			"	
기정	44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34답 일원	2,389.9			"	
기정	4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산16-7임 일원	4,180.0			"	
기정	46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82답 일원	4,897.4			"	
기정	47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53답 일원	1,365.7			"	
기정	4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254답 일원	869.9			"	
기정	49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76답 일원	733.6			"	수도 중복결정
기정	-	녹지	철도내 녹지	예하리 452-4전 일원	6,730.0			"	
기정	50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92답 일원	4,693.4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51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91-4답 일원	2,233.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52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14-2임 일원	3,940.3			"	
기정	53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8-26임 일원	3,158.1			"	
기정	54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65임 일원	35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53답 일원	571.0			"	
변경	56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87임 일원	20,019.5	감326.1	19,693.4	"	수도 중복결정

6)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1,286.8	-	-
기정	1	공공공지	예하리 1236-118전	212.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농수로
기정	2	공공공지	예하리 532구	614.7	"	농수로
기정	3	공공공지	예하리 23답	459.2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7) 공급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7	수 도 공급설비	예상리 784임 일원	3,795.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배수지

나) 우·오수시설 계획(변경없음)

- 유수지시설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	21,874.1		
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예하리 517-2대 일원	7,862.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예하리 436답 일원	14,011.4	"	

-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하리 81답 일원	14,331.5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

다)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예하리 1355-1과 일원	29,480.5	경상남도 고시 제453호(2012.11.8)	

8)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중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정촌면 화개리	정촌면 예하리	-	1,497	18~25	50,481.1	경상남도 고시 제322호(2005.11.10)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9) 학교시설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1	학교	초등학교	에하리 1237-41임 일원	12,098.8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8.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기 준공)

구 분	총공사비(백만원)	비고
총 계	255,086	
용 지 비	1,28,243	
공 사 비	84,646	
기 타 비	42,197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기 준공, 생략)

10.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기준공)

가. 총 에너지수요량

구분	에너지 사용량				계 (TOE/년)	비 고
	연료부문		전력부문			
	LNG (천Nm ³ /년)	석유환산톤 (TOE/년)	전력사용량 (MWh/년)	석유환산톤 (TOE/년)		
합계	36,165	38,156	469,799	101,006	139,162	

나.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해당 없음

다. 에너지 공급계획

- 전 력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근 개양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 : 지에스이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인근 LNG 배관망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

11.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산업시설용지 합계	580,875.2	-	580,875.2	100.0	
1차금속 제조업종 강관제조업(24132) 금속가공제품(C25)	21,399.7	-	21,399.7	3.7	1공구
금속가공제품(C25) 기타 기계 및 장비(C29)	195,929.3	-	195,929.3	33.7	1공구
금속가공제품(C25)	53,778.5	-	53,778.5	9.3	1공구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C27)	17,375.3	-	17,375.3	3.0	1공구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104,238.0	-	104,238.0	17.9	1공구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 운송장비(C31)	98,018.7	-	98,018.7	16.9	1공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기타 운송장비(C31)	90,135.7	-	90,135.7	15.5	1공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기타발전업의 태양에너지발전업	전 지역				

[1군, 2군업종]

가 구	1군업종	2군업종	비고
BL34	①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장비(29) ② 기타 기계장비(29), 기타 운송장비(31)	1군업종의 전 업종	
BL35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장비(29)		
BL36	①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장비(29) ② 금속가공제품(25)		
BL37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 운송장비(31)		
BL38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기타 운송장비(31)		
BL40	기타 기계장비(29), 기타 운송장비(31)		
BL41	전자부품·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28)		
BL42	1차금속 제조(24)중 강관제조업(24132), 금속가공제품(25)		
BL43	① 전자부품·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28) ② 금속가공제품(25), 기타 기계장비(29)		
BL44	① 전자부품·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전기장비(28) ② 전자부품·영상·음악·음향 및 통신장비(C26), 의료,정밀, 광학기기(27)		
BL34~4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기타 발전업의 태양에너지발전업		

12.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기준공)

가. 진입도로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위치	비고
기정	진입도로	30	729	국도3호선 ~ 단지내 연결(주진입로)	구역외

※시행자 : 진주시장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나. 용수시설

1) 송수관로

구분	시설명	연장(m)	규격(mm)	위치	비고
기정	송수관로	3,283	400	소곡삼거리분기점 ~ 단지내 배수지	

※시행자 : 진주시장

2) 배 수 지

구분	시설명	면적(m ²)	규격(m ³)	위치	비고
기정	수도공급설비	3,795.9	4,400	예상리 784임 일원	1공구

※시행자 : 진주시장

다. 오·폐수처리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발생오폐수량 (m ³ /일)	비고
기정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예하리 81답 일원	14,331.5	4,500	1공구

※시행자 : 진주시장

1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기 준공)

가. 재원조달계획(기 조달)

○ 공채발행으로 자체자금 조달

구 분	총공사비(백만원)	비고
총 계	255,086	
용 지 비	1,28,243	
공 사 비	84,646	
기 타 비	42,197	

2) 연차별 투입계획(기 투자)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비고
총 계	2,55	2,443	94	14	
용 지 비	1,282	1,233	48	1	
공 사 비	847	809	35	3	
기 타 비	422	401	11	10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가. 처분대상

구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1,712,742.3	감 1,064.7	1,711,677.6	100.0	
유상	소계	1,057,400.8		1,057,400.8	61.7	
	산업시설용지	580,875.2		580,875.2	33.9	
	지원시설용지	75,615.7		75,615.7	4.4	
	유통시설용지	129,164.0		129,164.0	7.5	
	물류시설용지	64,058.5		64,058.5	3.7	
	폐기물처리시설용지	29,480.5		29,480.5	1.7	
	주유소용지	2,329.8		2,329.8	0.1	
	주차장용지	17,756.4		17,756.4	1.0	
	학교용지	2,419.8		2,419.8	0.1	
	통신시설	33.1	감 33.1	-	-	
	공동주택용지	142,665.0		142,665.0	8.3	
	단독주택용지	13,002.8		13,002.8	0.8	
무상	소계	655,341.5	감 1,031.6	654,309.9	38.3	
	폐수처리장	14,331.5		14,331.5	0.8	
	배수지	3,795.9		3,795.9	0.2	
	철도	22,965.0		22,965.0	1.3	
	도로	316,513.1		316,513.1	18.5	
	보행자도로	1,278.9	감 19.3	1,259.6	0.1	
	공원	71,443.1		71,443.1	4.2	
	녹지	132,306.4	감 1,012.3	131,294.1	7.7	
	수도시설	9,386.6		9,386.6	0.5	
	공공공지	1,286.8		1,286.8	0.1	
무상	학교용지	9,679.0		9,679.0	0.6	
	저류시설	21,874.1		21,874.1	1.3	
	하천	50,481.1		50,481.1	2.9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나. 처분방법, 대상자 및 가격(변경없음)

구 분		처분방법	처분대상자	처분가격	
산업시설용지	기정	추첨/수의계약	입주자격을 갖춘자	조성원가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등	조성원가	
지원시설용지	기정	수의계약	생활대책자	감정가격	
		경쟁입찰	실수요자	낙찰가격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등	조성원가	
유통시설용지	기정	경쟁입찰	실수요자	낙찰가격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등	조성원가	
물류시설용지	기정	추첨/수의계약	자격을 갖춘 자	조성원가	
폐기물처리시설	기정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등	감정가격	
주유소용지	기정	경쟁입찰	실수요자	낙찰가격	
주차장용지	기정	경쟁입찰	실수요자	낙찰가격	
		수의계약	국가·지자체 등	조성원가	
학교용지	기정	수의계약	-	조성원가 이하	
통신시설용지	기정	수의계약	실수요자	감정가격	
공동주택용지	분양	기정	추첨	자격을 갖춘 자	감정가격
	임대		수의계약	자격을 갖춘 자	조성원가 또는 이하
단독주택용지	기정	수의계약	이주대상자	조성원가 이하	
		추첨	실수요자	감정가격	

15.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각호의 사항(변경)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총괄조서(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712,840,000.0		712,840,000.0	100.00	-
도시 지역	계		275,868,891.7		275,868,891.7	38.70	-
	주거 지역	소 계	19,280,065.2		19,280,065.2	2.71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41,845.4		2,041,845.4	0.29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022,060.8		12,022,060.8	1.69	-	
		제3종일반주거지역	4,089,698.0		4,089,698.0	0.57	-	
		준주거지역	1,126,461.0		1,126,461.0	0.16	-	
	상업 지역	소 계	3,241,163.0		3,241,163.0	0.46	-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051,354.5		3,051,354.5	0.43	-	
		근린상업지역	119,112.0		119,112.0	0.02	-	
		유통상업지역	70,696.5	-1,064.7	69,631.8	0.01	-	
	공업 지역	소 계	6,452,694.5		6,452,694.5	0.90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5,872,954.5		5,872,954.5	0.82	-	
		준공업지역	579,740.0		579,740.0	0.08	-	
	녹지 지역	소 계	246,894,969.0		5,872,498.5	34.63	-	
		보전녹지지역	146,577,922.4		146,577,922.4	20.56	-	
		생산녹지지역	28,091,685.0		28,091,685.0	3.94	-	
		자연녹지지역	72,225,361.6	1,064.7	72,226,426.3	10.13	-	
	비도시 지역	계		436,971,108.3		436,971,108.3	61.30	-
		관리 지역	소 계	149,501,628.6		149,501,628.6	20.97	-
보전관리지역			67,730,816.0		67,730,816.0	9.50	-	
생산관리지역			29,694,024.6		29,694,024.6	4.17	-	
계획관리지역			52,076,788.0		52,076,788.0	7.30	-	
미세분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283,689,479.7		283,689,479.7	39.80	-		
자연환경보전지역	3,780,000.0		3,780,000.0	0.53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2-623호(2022.12.1.), 초전신도심(1단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712,742.3	감 1,064.7	1,711,677.6	100.0	100.0
주 거 지 역	222,937.9		222,937.9	13.0	13.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04.0		28,904.0	1.7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94,033.9		194,033.9	11.3	11.3
상 업 지 역	347,307.9	감 1,064.7	346,243.2	20.3	20.3
유통상업지역	229,961.3	감 1,064.7	228,896.6	13.4	13.4
일반상업지역	117,346.6		117,346.6	6.9	6.9
공 업 지 역	1,041,011.2		1,041,011.2	60.8	60.8
일반공업지역	1,041,011.2		1,041,011.2	60.8	60.8
녹 지 지 역	101,485.3		101,485.3	5.9	5.9
자연녹지지역	101,485.3		101,485.3	5.9	5.9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m ²)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32 일원	유통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1,064.7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부가차로(국도3호선) 확장구간에 편입되어 산업단지 제척되는 구간의 용도지역 환원조치

II.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계획(변경)

(단위 : 개, m, m²)

구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기정	51	17,621	321,661	14	5,529	105,051	18	7,130	124,407	19	4,962	92,203
	변경	51	17,618	321,641.7	14	5,529	105,051	18	7,130	124,407	19	4,959	92,183.7
대로	기정	4	4,224	113,155	-	-	-	2	1,511	45,330	2	2,713	67,825
	변경	4	4,224	113,155	-	-	-	2	1,511	45,330	2	2,713	67,825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중로	기정	33	11,642	194,184	12	4,953	99,291	11	4,875	73,125	10	1,814	21,768
	변경	33	11,642	194,184	12	4,953	99,291	11	4,875	73,125	10	1,814	21,768
소로	기정	14	1,755	14,322	2	576	5,760	5	744	5,952	7	435	2,610
	변경	14	1,752	14,302.7	2	576	5,760	5	744	5,952	7	432	2,590.7

- ※ 1. 도로면적은 교차부, 가각부, 하천4개소 포함[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면적
 2. 구역외 도로(대로2-5호선)는 총괄표에서 제외.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도로	1,230	대로 2-5	지구계 남동측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대로	2	5	30	주간선 도로	729	국도 3호선	대로 2-4	일반 도로		"	구역외
기정	대로	2	6	30	보조 간선도로	281	대로 3-19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대로	3	19	25	보조 간선도로	1,419	지구계 북서측	대로 3-2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대로	3	20	25	보조 간선도로	1,294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1,035	중로 1-62	중로 1-6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1	20	국지도로	381	중로 2-63	중로 1-6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도로	1,334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3	20	국지도로	141	중로 1-62	사천 비행장선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4	20	국지도로	364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5	20	국지도로	272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6	20	국지도로	680	대로 2-4	대로 3-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7	20	국지도로	263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8	20	국지도로	263	대로 3-20	중로 2-68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1	69	20	국지도로	100	대로 3-20	중로 2-69	일반 도로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중로	1	70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3-3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1	71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2	15	국지도로	173	중로 2-64	중로 2-64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3	15	국지도로	215	중로 1-60	중로 2-6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4	15	국지도로	597	중로 1-62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65	15	국지도로	213	중로 3-32	소로 1-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2	66	15	국지도로	521	중로 2-67	중로 2-67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67	15	국지도로	780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8	15	국지도로	1,307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69	15	국지도로	447	중로 1-66	중로 2-7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2	70	15	국지도로	488	대로 2-4	대로 3-2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	중로 1-62	중로 2-66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2	72	15	국지도로	74	중로 2-66	중로 2-6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258	중로 1-60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191	중로 2-63	중로 2-64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209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254	중로 2-63	중로 3-35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152	중로 2-65	중로 3-37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144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3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239	중로 3-38	소로 1-2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67	대로 3-19	중로 2-65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83	중로 1-60	중로 3-37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9	중로 3-29	중로 3-29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4	화개천	구역계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0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변경	소로	3	1	6	특수도로	17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12	중로 1-64	배수지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88	중로 1-60	근린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9	중로 1-60	소로 2-1	보행자 전용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36	대로 3-19	중로 3-37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보행자 전용도로		"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대로 2-4	지구계 남서측	일반 도로		"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 정 일	비 고
합계	-	-	-	17,756.4		
기정	20	주차장	예하리 1236-335전 일원	4,66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1	주차장	예하리 556답 일원	2,742.3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2	주차장	예하리 산10-1입 일원	2,698.9	"	
기정	23	주차장	예하리 1236-200전 일원	2,56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4	주차장	예하리 523-1전 일원	711.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5	주차장	예하리 11전 일원	2,271.4	"	
기정	26	주차장	예하리 551답 일원	2,10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3) 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40	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예하리 444답 일원	19,981.8	

4)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 ²)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정촌면 화개리	정촌면 예하리	-	1,355	22,965.0	철도 준치구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	71,443.1		
기정	18	-	수변공원	예하리 1236-238전 일원	11,858.1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19	-	근린공원	예하리 산27-7임 일원	55,270.4	"	
기정	45	-	어린이 공원	예하리 519-4대 일원	1,435.2	"	
기정	1	-	소공원	예하리 1236-19답	2,879.4	"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141,516.2	감1,012.3	140,503.9		
변경	35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73전 일원	4,292.9	감686.2	3,606.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수도 중복결정
기정	36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78답 일원	1,775.2			"	
기정	3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5도 일원	613.3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기정	39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산8-21입 일원	45,764.7			"	
기정	40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719-7답 일원	12,222.1			"	
기정	41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80-2입 일원	12,706.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수도 중복결정
기정	42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66-3답 일원	6,353.3			"	수도 중복결정
기정	43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27답 일원	1,655.0			"	
기정	44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34답 일원	2,389.9			"	
기정	4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산16-7입 일원	4,180.0			"	
기정	46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82답 일원	4,897.4			"	
기정	47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53답 일원	1,365.7			"	
기정	4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254답 일원	869.9			"	
기정	49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76답 일원	733.6			"	수도 중복결정
기정	-	녹지	철도내 녹지	예하리 452-4전 일원	6,730.0			"	
기정	50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92답 일원	4,693.4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51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91-4답 일원	2,233.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52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14-2입 일원	3,940.3			"	
기정	53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8-26입 일원	3,158.1			"	
기정	54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65입 일원	35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53답 일원	571.0			"	
변경	56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87입 일원	20,019.5	감326.1	19,693.4	"	수도 중복결정

3)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	1,286.8	-	-
기정	1	공공공지	예하리 1236-118전	212.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농수로
기정	2	공공공지	예하리 532구	614.7	"	농수로
기정	3	공공공지	예하리 23답	459.2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7	수 도 공급설비	예상리 784임 일원	3,795.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배수지

- 간선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8	수 도 공급설비	예하리 467-13답	화개리 1628-2도	-	2,050	9,386.6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간선관거 2공구 녹지중복결정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1	학교	초등학교	예하리 1237-41임 일원	12,098.8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마. 방재시설

1)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정촌면 화개리	정촌면 예하리	-	1,497	18~25	50,481.1	경상남도 고시 제322호(2005.11.10)	

2)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	21,874.1		
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예하리 517-2대 일원	7,862.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예하리 436답 일원	14,011.4	"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바.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예하리 1355-1과 일원	29,480.5	경상남도 고시 제453호(2012.11.8)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예하리 81답 일원	14,331.5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

I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정촌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671,731.1	감1,064.7	670,666.4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	정촌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감소 A=671,731.1→670,666.4m ² (감 1,064.7m ²)	• 연접한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부가차로 (국도3호선)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제척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 성 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1,712,742.3	감 1,064.7	1,711,677.6	100.0	100.0
주 거 지 역	222,937.9		222,937.9	13.0	13.0
제1종일반주거지역	28,904.0		28,904.0	1.7	1.7
제3종일반주거지역	194,033.9		194,033.9	11.3	11.3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 분	면 적(㎡)			구 성 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상 업 지 역	347,307.9	감 1,064.7	346,243.2	20.3	20.3
유통상업지역	229,961.3	감 1,064.7	228,896.6	13.4	13.4
일반상업지역	117,346.6		117,346.6	6.9	6.9
공 업 지 역	1,041,011.2		1,041,011.2	60.8	60.8
일반공업지역	1,041,011.2		1,041,011.2	60.8	60.8
녹 지 지 역	101,485.3		101,485.3	5.9	5.9
자연녹지지역	101,485.3		101,485.3	5.9	5.9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32 일원	유통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1,064.7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부가차로(국도3호선) 확장구간에 편입되어 산업단지 체척되는 구간의 용도지역 환원조치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계획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주간선 도로	1,230	대로 2-5	지구계 남동측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대로	2	6	30	보조 간선도로	281	대로 3-19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대로	3	19	25	보조 간선도로	1,419	지구계 북서측	대로 3-2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1,035	중로 1-62	중로 1-61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1	61	20	국지도로	381	중로 2-63	중로 1-62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1	62	20	보조 간선도로	1,334	대로 2-4	대로 3-19	일반 도로		"	2공구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63	20	국지도로	141	중로 1-62	사천 비행장선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1	70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3-3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중로	1	71	20	국지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2	62	15	국지도로	173	중로 2-64	중로 2-64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2	63	15	국지도로	215	중로 1-60	중로 2-65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2	64	15	국지도로	597	중로 1-62	중로 1-60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중로	2	65	15	국지도로	213	중로 3-32	소로 1-2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중로	2	66	15	국지도로	521	중로 2-67	중로 2-67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중로	2	67	15	국지도로	780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2	71	15	국지도로	60	중로 1-62	중로 2-66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중로	2	72	15	국지도로	74	중로 2-66	중로 2-67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29	12	국지도로	258	중로 1-60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중로	3	30	12	국지도로	191	중로 2-63	중로 2-64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중로	3	31	12	국지도로	209	중로 1-62	중로 1-63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2	12	국지도로	254	중로 2-63	중로 3-35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3	12	국지도로	152	중로 2-65	중로 3-37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4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5	12	국지도로	144	중로 3-38	중로 3-31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6	12	국지도로	100	중로 3-38	중로 3-33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7	12	국지도로	239	중로 3-38	소로 1-2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중로	3	38	12	국지도로	167	대로 3-19	중로 2-65	일반 도로		"	2공구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483	중로 1-60	중로 3-37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69	중로 3-29	중로 3-29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75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14	화개천	구역계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93	중로 3-29	소로 2-1	일반 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20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2공구	
변경	소로	3	1	6	특수도로	17	지구계 북서측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88	중로 1-60	근린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9	중로 1-60	소로 2-1	보행자 전용도로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36	대로 3-19	중로 3-37	보행자 전용도로		"	2공구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60	대로 2-6	중로 2-64	보행자 전용도로		"	2공구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12,786.1		
기정	20	주차장	예하리 1236-335전 일원	4,66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1	주차장	예하리 556답 일원	2,742.3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3	주차장	예하리 1236-200전 일원	2,56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기정	24	주차장	예하리 523-1전 일원	711.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기정	26	주차장	예하리 551답 일원	2,105.9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3)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74,655.8	감 1,012.3	73,643.5			
변경	35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73전 일원	4,292.9	감686.2	3,606.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수도 중복결정
기정	3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5도 일원	613.3			"	2공구	
기정	41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80-2입 일원	12,706.0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수도 중복결정
기정	42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66-3답 일원	6,353.3			"	2공구	수도 중복결정
기정	43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27답 일원	1,655.0			"	2공구	
기정	44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34답 일원	2,389.9			"	2공구	
기정	4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산16-7입 일원	4,180.0			"	2공구	
기정	46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82답 일원	4,897.4			"	2공구	
기정	47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153답 일원	1,365.7			"	2공구	
기정	48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1236-254답 일원	869.9			"	2공구	
기정	49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76답 일원	733.6			"	2공구	수도 중복결정
기정	-	녹지	철도내 녹지	예하리 452-4전 일원	6,730.0			"	2공구	
기정	50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92답 일원	4,693.4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51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91-4답 일원	2,233.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52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14-2입 일원	3,940.3			"	2공구	
기정	53	녹지	연결 녹지	예하리 산8-26입 일원	3,158.1			"	2공구	
기정	54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365입 일원	351.0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기정	55	녹지	경관 녹지	예하리 453답 일원	571.0			"	2공구	
변경	56	녹지	완충 녹지	예하리 1236-287입 일원	20,019.5	감326.1	19,693.4	"	2공구	수도 중복결정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4)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고
합계	-	-	-	-	16,172.7			
기정	18	-	수변공원	예하리 1236-238전 일원	11,858.1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기정	45	-	어린이 공원	예하리 519-4대 일원	1,435.2	"	2공구	
기정	1	-	소공원	예하리 1236-19답	2,879.4	"	2공구	

5)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공구 구분	비고
합계	-	-	-	212.9	-		-
기정	1	공공공지	예하리 1236-118전	212.9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농수로

6) 수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간선시설(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8	수 도 공급설비	예하리 467-13답	화개리 1628-2도	-	2,050	9,386.6	경상남도 고시 제545호(2011.12.15)	2공구 녹지중복결정

7)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31	학교	초등학교	예하리 1237-41업 일원	12,098.8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8) 하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m)	폭원 (m)	면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하천	정촌면 화개리	정촌면 예하리	-	1,497	18~25	50,481.1	경상남도 고시 제322호(2005.11.10)	2공구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9)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합계	-	-	-	-	21,874.1		
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예하리 517-2대 일원	7,862.7	경상남도 고시 제412호(2008.8.28)	2공구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	합 계	13,002.8	41 획지	-	13,002.8	
BL 20	BL 20	954.7	2	예하리	270.9	
			3	예하리	305.9	
			4	예하리	377.9	
BL 21	BL 21	1,276.6	1	예하리	323.6	
			2	예하리	305.7	
			3	예하리	323.6	
			4	예하리	323.7	
BL 22	BL 22	3,274.7	1	예하리	323.8	
			2	예하리	329.8	
			3	예하리	239.8	
			4	예하리	329.8	
			5	예하리	324.0	
			6	예하리	323.6	
			7	예하리	330.7	
			8	예하리	329.7	
			9	예하리	329.7	
			10	예하리	323.8	
BL 23	BL 23	3,274.6	1	예하리	323.8	
			2	예하리	329.8	
			3	화개리	329.8	
			4	화개리	329.8	
			5	화개리	323.8	
			6	화개리	323.7	
			7	화개리	330.7	
			8	예하리	329.7	
			9	예하리	329.7	
			10	예하리	323.8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BL 24	BL 24	944.9	2	예하리	298.0	
			3	예하리	175.0	
			5	예하리	296.9	
			6	예하리	175.0	
BL 25	BL 25	3,277.3	1	예하리	324.1	
			2	예하리	330.2	
			3	예하리	330.1	
			4	예하리	330.2	
			5	예하리	324.1	
			6	예하리	324.1	
			7	예하리	330.1	
			8	예하리	330.1	
			9	예하리	330.2	
			10	예하리	324.1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	합 계	142,665.0	3획지	-	142,665.0	
BL 2	BL 2	26,285.1	6	예하리	26,285.1	
BL 19	BL 19	80,142.4	1	예하리	80,142.4	
BL 19	BL 19	36,237.5	9	예하리	36,237.5	

3) 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	합 계	129,164.0	148획지	-	129,164.0	
BL 1	BL 1	3,401.2	4	예하리	717.0	
			5	화개리	950.0	
			6	화개리	798.2	
			7	화개리	936.0	
BL 3	BL 3	10,778.0	1	화개리	1,178.4	
			2	화개리	858.9	
			3	화개리	781.0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4	화개리	780.9				
			5	화개리	780.0				
			6	화개리	780.0				
			7	화개리	838.8				
			8	화개리	844.8				
			9	화개리	777.9				
			10	화개리	777.8				
			11	화개리	776.8				
			12	화개리	776.9				
			13	화개리	825.8				
			BL 4	BL 4	16,167.0	1	화개리	1,007.2	
						2	화개리	1,014.2	
						3	화개리	1,014.2	
4	화개리	1,243.2							
5	화개리	1,308.2							
6	화개리	1,297.0							
7	화개리	1,321.1							
8	화개리	1,226.1							
9	화개리	1,193.1							
10	화개리	1,270.0							
11	화개리	1,164.1							
12	화개리	1,061.2							
13	화개리	1,032.2							
14	화개리	1,015.2							
BL 5	BL 5	4,370.4	1	화개리	1,017.8				
			2	화개리	901.9				
			3	화개리	851.9				
			4	화개리	806.9				
			5	화개리	791.9				
BL 6	BL 6	6,793.6	1	화개리	839.6				
			2	화개리	815.5				
			3	화개리	665.5				
			4	화개리	654.4				
			5	화개리	679.5				
			6	화개리	669.5				
			7	화개리	642.4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8	화개리	584.4	
			9	화개리	591.4	
			10	화개리	651.4	
BL 7	BL 7	4,780.2	1	화개리	922.8	
			2	화개리	945.8	
			3	화개리	988.9	
			4	화개리	979.9	
			5	화개리	942.8	
BL 8	BL 8	3,675.0	2	화개리	904.8	
			3	화개리	844.8	
			4	화개리	897.8	
			5	화개리	1,027.6	
BL 9	BL 9	10,144.9	1	화개리	1,114.8	
			2	화개리	1,130.0	
			3	화개리	1,156.8	
			4	화개리	1,137.7	
			6	화개리	720.8	
			7	화개리	720.8	
			8	화개리	720.8	
			9	화개리	640.9	
			10	화개리	639.9	
			11	화개리	720.8	
			12	화개리	720.8	
			13	화개리	720.8	
			BL 10	BL 10	6,293.9	1
2	화개리	908.6				
3	화개리	878.6				
4	화개리	728.6				
5	화개리	622.7				
6	화개리	731.6				
7	화개리	780.6				
8	화개리	835.6				
BL 11	BL 11	4,772.5	1	화개리	892.7	
			2	화개리	891.7	
			3	화개리	1,066.7	
			4	화개리	914.7	
			5	화개리	1,006.7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BL 12	BL 12	7,629.4	1	화개리	751.1	
			2	화개리	746	
			3	화개리	743	
			4	화개리	741	
			5	화개리	758.1	
			6	화개리	810.1	
			7	화개리	750	
			8	화개리	750	
			9	화개리	750	
			10	화개리	830.1	
BL 13	BL 13	5,159.6	1	화개리	882.1	
			2	화개리	840.1	
			3	화개리	913.1	
			4	화개리	830.1	
			5	화개리	840.1	
			6	화개리	854.1	
BL 14	BL 14	7,892.1	1	화개리	737.3	
			2	화개리	829.3	
			3	화개리	812.2	
			4	화개리	812.6	
			5	화개리	732.5	
			6	화개리	730.4	
			7	화개리	812.3	
			8	화개리	811.5	
			9	화개리	854.5	
			10	화개리	759.5	
BL 15	BL 15	7,159.3	1	화개리	954.9	
			2	화개리	1058	
			3	화개리	865.9	
			6	화개리	858.9	
			7	화개리	857.9	
			8	화개리	855.9	
			9	화개리	854.9	
			10	화개리	852.9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BL 16	BL 16	10,479.7	1	화개리	795.4	
			2	화개리	897.5	
			3	화개리	925.4	
			4	화개리	904.4	
			5	화개리	852.3	
			6	화개리	781.4	
			7	화개리	790	
			8	화개리	844.5	
			9	화개리	874.5	
			10	화개리	920.5	
			11	화개리	916.4	
			12	화개리	977.4	
BL 17	BL 17	8,274.8	2	화개리	1,025.1	
			3	화개리	1,020.2	
			4	화개리	1,022.1	
			5	화개리	1,045.1	
			6	화개리	944	
			7	화개리	1,034.1	
			8	화개리	1,095.1	
			9	화개리	1,089.1	
BL 18	BL 18	11,392.4	1	화개리	832.7	
			2	화개리	850.7	
			3	화개리	843.7	
			4	화개리	794.7	
			5	화개리	762.7	
			6	화개리	728.7	
			7	화개리	668.7	
			8	화개리	670.6	
			9	화개리	779.7	
			10	화개리	832.7	
			11	화개리	853.6	
			12	화개리	846.7	
			13	화개리	918.6	
			14	화개리	1,008.6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4) 지원시설용지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75,615.7	79획지	-	75,615.7	
BL 26	BL 26	10,067.5	1	예하리	700.2	
			2	예하리	793.3	
			3	예하리	805.3	
			4	예하리	829.3	
			5	예하리	955.3	
			6	예하리	1,179.1	
			7	예하리	817.6	
			8	예하리	896.3	
			9	예하리	836.3	
			10	예하리	807.3	
			11	예하리	791.3	
			12	예하리	656.2	
BL 27	BL 27	10,162.6	1	예하리	850.8	
			2	예하리	891.8	
			4	예하리	2259.5	
			5	예하리	1,535.6	
			6	예하리	1,528.7	
			7	예하리	1,560.6	
			8	예하리	1,535.6	
			8	예하리	1,535.6	
BL 28	BL 28	17,396.1	1	예하리	885.3	
			2	예하리	813.3	
			3	예하리	796.3	
			4	예하리	778.3	
			5	예하리	776.4	
			6	예하리	803.3	
			7	예하리	723.4	
			8	예하리	1,084.4	
			9	예하리	1,102.3	
			10	예하리	807.3	
			11	예하리	807.3	
			12	예하리	807.3	
			13	예하리	800.3	
			14	예하리	791.4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15	예하리	771.4	
			16	예하리	794.4	
			17	예하리	818.3	
			18	예하리	812.3	
			19	예하리	808.3	
			20	예하리	808.4	
			21	예하리	806.4	
BL 29	BL 29	9,108.0	1	예하리	879.6	
			2	예하리	871.6	
			3	예하리	812.6	
			4	예하리	855.6	
			5	예하리	1,018.6	
			6	예하리	1,206.6	
			7	예하리	948.6	
			8	예하리	868.6	
			9	예하리	883.6	
			10	예하리	762.6	
BL 30	BL 30	13,742.8	2	예하리	1,324.1	
			3	예하리	1,398.3	
			4	예하리	1,399.3	
			5	예하리	1,336.1	
			6	예하리	1,192.0	
			7	예하리	1,316.1	
			8	예하리	1,435.3	
			9	예하리	1,486.2	
			10	예하리	1,483.2	
			11	예하리	1,372.2	
BL 31	BL 31	15,138.7	2	예하리	730.9	
			3	예하리	743.0	
			4	예하리	773.0	
			5	예하리	773.9	
			6	예하리	750.9	
			7	예하리	760.8	
			8	예하리	771.0	
			9	예하리	1,251.9	
			10	예하리	794.7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11	예하리	794.9	
			12	예하리	794.9	
			13	예하리	778.9	
			16	예하리	839.1	
			17	예하리	793.9	
			18	예하리	797.9	
			19	예하리	775.0	
			20	예하리	775.0	
			21	예하리	744.0	
			22	예하리	695.0	

5) 주차장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12,786.1	5획지	-	12,786.1	
BL 8	BL 8	4,665.9	1	화개리	4,665.9	
BL 17	BL 17	2,561.0	1	화개리	2,561.0	
BL 24	BL 24	711.0	1	예하리	711.0	
BL 30	BL 30	2,742.3	1	예하리	2,742.3	
BL 31	BL 31	2,105.9	1	예하리	2,105.9	

6) 녹지(변경)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	합 계	65,691.9	17획지	-	65,691.9	64,679.6	
BL 1	BL 1	4,643.9	3	예하리	351.0	351.0	완충녹지
			11	예하리	4,292.9	3,606.7	완충녹지
BL 2	BL 2	45,076.8	1	예하리	20,019.5	19,663.4	완충녹지
			4	예하리	4,693.4	4,693.4	완충녹지
			5	예하리	733.6	733.6	경관녹지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기정	변경	
			9	예하리	6,353.3	6,353.3	경관녹지
			10	예하리	206.2	206.2	경관녹지
			13	예하리	571	571	경관녹지
			14	예하리	12,499.8	12,499.8	경관녹지
BL 15	BL 15	1,365.7	4	예하리	1,365.7	1,365.7	경관녹지
BL 19	BL 19	13,122.3	2	예하리	4,180.0	4,180.0	경관녹지
			4	예하리	3,137.4	3,137.4	경관녹지
			10	예하리	1,655.0	1,655.0	경관녹지
			11	예하리	2,389.9	2,389.9	경관녹지
			12	예하리	1,760.0	1,760.0	경관녹지
BL 20	BL 20	869.9	1	예하리	869.9	869.9	경관녹지
BL 46	BL 46	613.3	1	예하리	613.3	613.3	경관녹지
			2	예하리	0.0	0.0	경관녹지

7) 공원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	합 계	16,172.7	4획지	-	16,172.7	
BL 9	BL 9	2,879.4	5	예하리	2,879.4	
BL 19	BL 19	11,858.1	5	예하리	5,423.1	
			7	예하리	6,435.0	
BL 24	BL 24	1,435.2	4	예하리	1,435.2	

8) 공공공지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	합 계	212.9	1획지	-	212.9	
BL 27	BL 27	212.9	1	예하리	212.9	농수로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9) 수도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9,386.6	7획지	-	9,386.6	
BL 1	BL 1	1,363.7	8	예하리	108.6	
			9	예하리	68.2	
			10	예하리	1,186.9	
BL 2	BL 2	8,022.9	11	예하리	4,722.3	
			12	예하리	667.5	
			13	예하리	74.9	
			14	예하리	2,558.2	

10) 학교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12,098.8	1획지	-	12,098.8	
BL 19	BL 19	12,098.8	1	화개리	12,098.8	

11) 하천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47,865.4	4획지	-	47,865.4	
BL 2	BL 2	15,247.7	8	예하리	14,411.7	
			11	예하리	836.0	
BL 15	BL 15	8,277.3	5	예하리	8,277.3	
BL 19	BL 19	24,340.4	3	예하리	24,340.4	

※ 하천면적은 도로 중복구간(2,615.7m²) 제외 면적임.

12) 유수지

도 면 번호	가 구 번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7,862.7	1획지	-	7,862.7	
BL 19	BL 19	7,862.7	6	예하리	7,862.7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13) 통신시설(금회 폐지)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계	33.1	1획자	-	33.1	
BL-2	BL-2	33.1	2	예하리	33.1	

13) 주유소

도 면 번 호	가 구 번 호	면 적(m ²)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 적(m ²)	
-	합 계	2,329.8	2획지	-	2,329.8	
BL 1	BL 1	2,329.8	1	예하리	995.1	
			2	예하리	1,334.7	

마.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BL 20 BL 21 BL 22 BL 23 BL 24 BL 25	2-4 1-4 1-10 1-10 2-3 5-6 1-10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18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동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측면 또는 후면에 발생하는 이격공지를 활용하여 잔디식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과 대문은 생울타리등 자연적요소 사용 •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을 설치권장 • 부속시설(물탱크, 냉난방설비 등)의 외부노출 금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셀색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	
			기 타	• 660m ² 이하 합병허용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BL 2 BL 19	6 1,9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00%이하		
			높이	최고층수	20층이하	
				최저층수	-	
				평균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사업 계획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경관보호를 위하여 통경축 확보 및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배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사업 계획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셀색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으로부터 6m 		

3) 유통시설용지 - A 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BL 3 BL 6 BL 7 BL 10 BL 11	1-13 1-10 1-5 1-8 1-5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4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구성을 도모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건물옥상에 주거용도의 옥탑설치를 금지하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셀색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변 1.5m 인접대지변 1.0m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할·합병허용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4) 유통시설용지 - B 용도(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BL 1 BL 5 BL 9 BL 15	4-7 1-5 1-4 1-3 6-10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4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구성을 도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건물옥상에 주거용도의 옥탑설치를 금지하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선택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 (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1.5m • 인접대지변 1.0m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합병허용 	

5) 유통시설용지 - C 용도(변경없음 : 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	BL 4 BL 8 BL 9 BL 12 BL 13 BL 14 BL 16 BL 17	1-14 2-3 4-5 6-13 1-10 1-6 1-10 1-12 2-9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400%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구성을 도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건물옥상에 주거용도의 옥탑설치를 금지하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BL 18	1-14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셀색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1.5m • 인접대지면 1.0m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합병허용

6)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BL 26 BL 27 BL 28 BL 29 BL 30 BL 31		1-12 1-8 1-21 1-10 2-11 2-13 16-22	용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허용용도</td> <td>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허용도</td> <td>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 </tr> </table>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물 용도 분류표에 따름(별첨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률	700%이하				
			높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최고층수</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저층수</td> <td>-</td> </tr> </table>	최고층수	-	최저층수	-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또는 위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 •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은 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게 함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조롭고 획일적인 구성은 지양하고, 다양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상징성을 줄 수 있는 구성을 도모 • 가로환경의 활성화를 위해 저층부(1층)은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 건물옥상에 주거용도의 옥탑설치를 금지하며,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셀색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하게 사용(단, 외벽면의 70%이상이 유리로 마감된 경우는 제외)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변 1.5m • 인접대지면 1.0m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합병허용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함)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철도보호지구)에서는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음. • 옥외광고물 설치시에는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치함을 권장함. 단,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및 지침’등에 따라 적용하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제시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배될 경우 해당법령에 따름.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7)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주차장	BL 8	1	용도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에 허용되는 용도의 시설 : 1,2층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BL 17	1	건 폐 율	•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 이하)	
			용 적 륜	•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BL 24	1	높 이	• 주차장법 제12조의 2 제4호에 따름	
	BL 30	1	배 치	•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	
				형 태	• 면선택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BL 31	1	색 채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색채 사용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 동일한 계통의 색채사용	
건 축 선	• 진주시 건축조례에 따름				
통신 시설 폐지	BL2	2	용도	지정용도	• 통신용시설에 한하여 건축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륜	• 80% 이하	
높 아	-				
학교	BL 19	8	용도	지정용도	• 초등학교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3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남향 또는 동남향의 배치가 되도록 운동장을 남쪽에 배치	
			형 태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사용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 외부 노출 금지	
			색 채	• 면선택상환에 의해 제시된 범위내의 색상을 사용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색채 사용 •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사용	
건 축 선	-				
기 타	• 도로(중로1-60호선)와 인접한 부분에 소음저감을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폭에 따라 공공조경 설치. 단, 출입구가 설치되는 곳은 제외함.				
주유소	BL1	1,2	용도	지정용도	• 정촌 일반산업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건축물용도분류표에 따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4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 별첨 1. 건축물 용도 분류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별첨 2.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별첨 3. 공동주택규모별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련도서는 경상남도청(산업단지정책과) 및 진주시청(건설하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3호

정촌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210호(2009. 04. 23.) 관리기본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0-604호(2010.11.04.),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0호(2014.10.10.), 경상남도 고시 제2018-413호(2018.11.08.), 경상남도 고시 제2021-170호(2021.04.08.)로 변경 승인된 정촌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정촌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정촌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가. 변경 사유

-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정촌산업단지와 접한 국도3호선 일부 구간을 확장하여 정촌면사무소 방향의 우회전 부가차로를 확보,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 해당 구간이 기조성된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특수도로(보행자도로) 등에 저촉되어 제척이 불가피하므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인가함과 동시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함.

나. 변경 내용

○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 기정 : 1,712,742.3㎡

(1공구 : 901,826.7㎡, 2공구 : 752,781.3㎡, 3공구 : 58,134.3㎡)

- 변경 : 1,711,677.6㎡(감 1,064.7㎡)

(1공구 : 901,826.7㎡, 2공구 : 751,716.6㎡, 3공구 : 58,134.3㎡)

○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산업단지 지정면적	1,712,742.3	감 1,064.7	1,711,677.6	감 0.06%
공공시설용지	705,031.3	감 1,064.7	703,966.6	
① 녹 지	132,306.4	감 1,012.3	131,294.1	
완충녹지 35호	4,292.9	감 686.2	3,606.7	
완충녹지 56호	10,019.5	감 326.1	9,693.4	
② 보행자도로	1,278.9	감 19.3	1,259.6	소로(특)3-1호선
③ 통신시설용지	33.1	감 33.1	-	

2.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관리기관(변경없음)

- 진주시(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
- 산업단지 위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지역경제기반의 활성화와 지방산업의 발전 제고
-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이전을 위한 대체산업단지 조성으로 도시문제 해결
- 상위계획상의 광역유통단지와 산업단지의 통합조성으로 효율성 제고

다. 추진경위(변경)

- '04.08.31 :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 '05.08.11 :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5.11.10 : 정촌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322호)
- '06.07.28 : 사업시행협약서 체결 (진주시↔경상남도개발공사)
- '07.07.19 :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 '07.08.21 :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07.10.04 : 산업단지 지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378호)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 '08.04.15 :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 '08.05.22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08.08.28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8-412호)
- '09.04.23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09-210호)
- '10.10.07 : 정촌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10-533 호)
- '10.11.04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604호)
- '11.12.15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경상남도 고시 제2011-545호)
- '12.11.08 :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453호)
- '13.01.08 :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2-589호)
- '13.03.28 : 산업단지 부분준공(1공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13-208호)
- '13.06.13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240호)
- '13.08.08 : 산업단지 부분준공(2공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13-490호)
- '14.01.16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22호)
- '14.08.07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280호)
- '14.09.11 : 산업단지 부분준공(3공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14-1084호)
- '14.10.10 :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360호)
- '18.11.08 :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413호)
- '21.04.08 :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170호)

라. 분양현황(변경)

(단위 : 천㎡)

구 분	총면적	분 양 가 능 면 적					조성 기간	사업 시행자
		분 양	미 분 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계	1,711.67	969	98	-	98	1,067	2008 ~2014 경남 개발공사	
산업시설구역	674.41	625	49	-	49	674		
지원시설구역	380.53	344	37	-	37	381		
공공시설구역	453.99	-	12	-	12	12		
녹지시설구역	202.74	-	-	-	-	-		

마. 입주계획(변경없음)

(단위 : 개사, 천㎡)

구 분	입주업체수			면 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향후 계획	75	69	6	896	581	315

※ 향후 입주수요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바.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2018. 8월 현재	확충 계획		
		일정	규 모	시행기관
○도 로	국도 3호선 연접 남해고속국도 인접 대전~통영고속국도 인접			
○철 도	경전선(진주 계양역)			
○항 공	사천공항 김해국제공항			
○항 만	삼천포항(하역능력8,384천톤/년) 광양항(하역능력 75,386천톤/년) 마산항(하역능력 15,444천톤/년)			
○용 수	공업용수(4,653톤/일) 생활용수(2,664톤/일)			진주시
○전 력	산업시설 (34,922KVA) 주거및지원시설(69,409KVA)			한국전력공사
○통 신	10,588회선 (업무용 7,997/주거용 2,591)			(주)케이티
○환 경	폐수처리장(4,500톤/일)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29,480.5m ²) - 매립 · 소각 포함	민간 또는 진주시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1) 목 표

- 산업구조 고도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 업종별로 세분화된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단지활성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첨단산업 정책 적극 반영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 제고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변경)

1) 용도별 구획면적(변경)

(단위 : 천m², %)

구 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면 적	1,711.67	674.41	380.53	453.99	202.74
구성비	100.0	39.4	22.2	26.5	11.9

※ 세부시설내역(변경)

- 산업시설구역 : 674,414.2㎡
(산업시설 580,875.2 / 물류시설64,058.5 / 폐기물처리시설 29,480.5)
- 지원시설구역 : 380,533.7㎡
(공동주택 142,665.0 / 단독주택 13,002.8 / 지원시설75,615.7 / 유통시설 129,164.0 / 주유소 2,329.8 / 주차장 17,756.4 /-통신시설-33.1)
- 공공시설구역 : 453,992.5㎡
(철도 22,965.0 / 도로 316,513.1 / 보행자도로 1,259.6 / 배수지 3,795.9, 수도시설 9,386.6 / 공공공지 1,286.8 / 저류시설 21,874.1 / 하천 50,481.1, 학교 12,098.8 / 폐수처리장 14,331.5)
- 녹 지 구 역 : 202,737.2㎡
(공원 71,443.1 / 녹지 131,294.1)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건축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따라 용도별 허용가능한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 「건축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 등에 따라 용도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에 의한 허용 가능한 시설 등)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 시설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3) 용도별구획 평면도 : 별첨 2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1) 용도별 배치계획

(단위 : 개사, m²)

	구 분	업 체 수	면 적
	합 계	74	674,414.2
산업시설	소 계	69	580,875.2
	1차금속제조업 중 강관제조업(C24132), 금속가공제품(C25), 태양에너지발전업(D35)	7	21,399.7
	금속가공제품(C25), 태양에너지발전업(D35)	4	53,778.5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C26), 전기장비(C28), 태양에너지발전업(D35)	20	104,238.0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장비(C26), 의료·정밀·광학기기및시계(C27), 태양에너지발전업(D35)	5	17,375.3
	금속가공제품(C25), 기타기계및장비(C29), 태양에너지발전업(D35)	16	195,929.3
	자동차및트레일러(C30), 기타운송장비(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	10	90,135.7
	기타기계및장비(C29), 기타운송장비(C31), 태양에너지발전업(D35)	7	98,018.7
	물류시설	4	64,058.5
폐기물처리시설	1	29,480.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기타 발전업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하며, 태양에너지 발전업은 전지역에서 가능함.

2) 배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구분	변 경	
	1군업종	2군업종
BL34	C25, C29, C31, D35	1군업종의 전업종
BL35	C25, C29, D35	
BL36	C25, C29, D35	
BL37	C30, C31, D35	
BL38	C30, C31, D35	
BL40	C29, C31, D35	
BL41	C26, C28, D35	
BL42	C24, C25, D35	
BL43	C26, C28, D35	
	C25, C29, D35	
BL44	C26, C28, D35	
	C26, C27, D35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라. 입주관리계획(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

가) 산업시설구역

○ 업종별 배치계획상의 모든 업종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 다만, 기반시설(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조업 및 주거지역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업종(도장, 도금업)은 제한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다만, 관리기관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시설

○ 부동산임대업(L6811)

※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하며, 공장설립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주기업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처분신청자(입주기업체)가 추천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나)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의 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단, 구역별 허용 건축물은 입주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구역

○ 구역별 허용 가능한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을 입주대상으로 한다.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의 입주기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의2호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운송사업 자격을 갖춘 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격을 갖춘 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에 의한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자로서 공급 용도로 사용할 실수요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 구역별 허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허용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 정촌일반산업단지에 수용되어 보상받은 업체
- 진주지역 소재 업체로서 동 산업단지에 이전코자 하는 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진주시)와 입주협약(MOU 체결)을 마친 업체는 우선 분양

4) 입주제한

- 관리기관은 공해다발(도장, 도금업 등) 및 도로, 용수 등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인근업체조업 및 주거지역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공해 업종은 제한할 수 있다.

5) 토지(분할, 분양)최소 한도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시설 분할면적은 1,650㎡로 하며, 기타용지는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진주시 관련 조례에 따른다.

6) 입주절차

-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계약체결 후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산업시설,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입주 하는 자에 한하며, 이외 용지에 입주하는 자는 제외한다.
- 순위 경합 시 입주자 선정 방법
 - 필지별 분양토지에 입주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입주우선순위 업체를 우선 결정하되, 동 순위일 경우 공개(전자)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유치업종(1군) 및 연관업종(2군) 입주방법
 -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1군업종을 우선 입주허용하고, 미입주 필지에 대해서는 2군업종을 입주허용 한다.

마. 사후관리 계획(변경없음)

1) 목 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 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 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산집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2항)
 -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 주식의 50% 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2조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
-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 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집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제6항에 의거 5년 이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공단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공단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 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없음)

1) 공장설립 지원계획

○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 지원

2) 생산활동 지원계획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 인력수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추진

○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3) 근로자복지사업 계획

○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와 기업 행사에 활용토록 제공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경 남 공 보

제2599호

2023. 3. 2.(목)

5) 지원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면적(m ²)	비 고
계	422,015.9	
폐기물처리시설	29,480.5	
폐수처리장	14,331.5	
주 거 지 역	155,667.8	
주 차 장	17,756.4	
기타지원시설	204,779.7	지원 · 유통시설

가) 시설 설치자

- 생 산 지 원 시 설 : 분양받은 자
- 후생복지 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공 공 지 원 시 설 : 진주시(관리기관), 분양받은 자

나) 시설관리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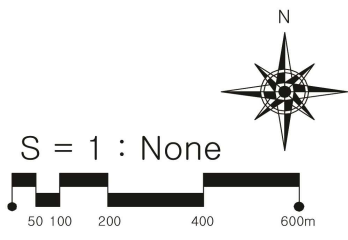
- 생 산 지 원 시 설 : 분양받은 자
- 후생복지 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공 공 지 원 시 설 : 진주시(관리기관), 분양받은 자.

○개발계획 평면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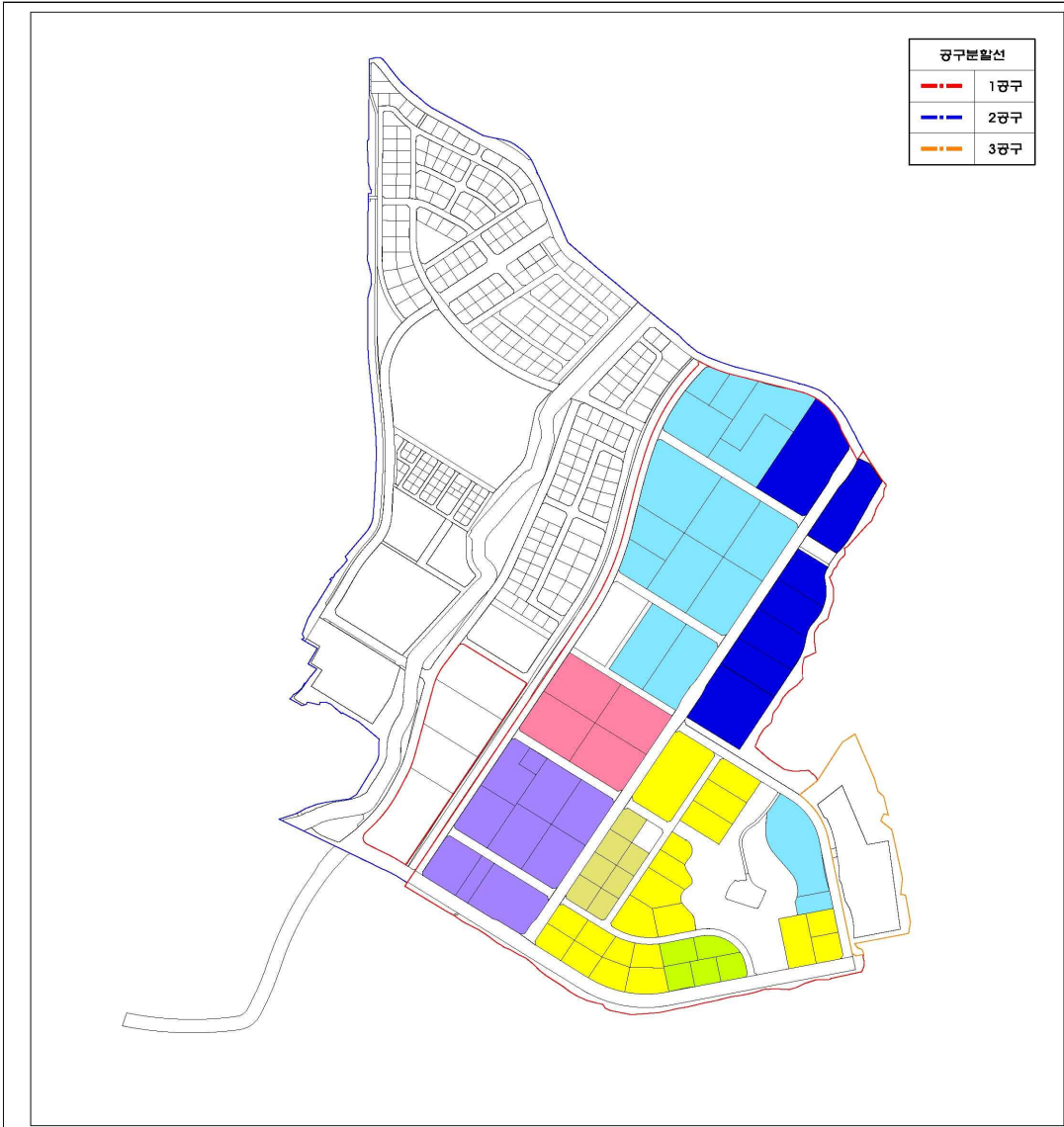


명		레	
	산업시설		철도
	지원시설		주차장
	유통시설		공원
	물류시설		녹지
	폐수처리장		저류지
	주유소		하천
	배수지		공동주택
	학교		단독주택 (이주지역지)
	도로		보행자도로
	공공공지		공구분할선
	통신시설		1공구
	수도시설		2공구
	폐기물처리시설		3공구

개발계획평면도



○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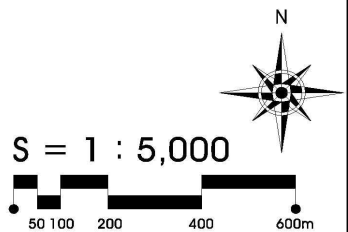
[1군 업종]

- | | |
|--|---|
| ■ 자동차(30) · 운송장비(31) | ■ 기계장비(29) · 운송장비(31) |
| ■ 금속가공(25) · 기계장비(29) | ■ 금속가공(25) |
| ■ 통신기기(26) · 전기장비(28) | ■ 1차금속(24) · 금속가공(25) |
| ■ 통신기기(26) · 정밀과학기기(27) | |

※ 전지역 :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중
기타 발전업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2군(연관업종)은 주요유치업종 중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업종

업종별배치계획도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4호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 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3조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제2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변경·실시계획 승인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가. 명 칭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 나.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 다. 면 적 : 80,976㎡ → 80,945㎡(감31㎡)
- 변경내용 : 죽림현 및 저류지 확장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변경없음)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변경없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변경)

- 가. 인구수용계획 : 해당없음
- 나. 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0,976	감) 31	80,945	100.0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소 계	35,400	증) 79	35,479	43.8		
	1	오리엔탈 휴양체험단지	17,286	-	17,286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시설 • 목욕장(스파/사우나/노천욕/샤워시설 등) • 시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 전시장, 집회장, 운동시설 • 단란주점을 제외한 휴게·일반음식점 • 제조시설(농특산물), 창고(약초 등) 및 판매시설 • 주차장
	2	천왕봉 명상요가관	1,250	-	1,25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시설, 휴양시설 •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휴게음식점, 주차장
	3	웰니스 소리 치유관	1,820	-	1,82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체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4	웰니스 메디컬센터	1,988	-	1,988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한방형 의료시설 및 관련 체험·판매·부대시설
	5	웰니스 웰스케어센터	2,116	-	2,11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교육연구시설, 목욕장(사우나/샤워실 등), 단란주점을 제외한 휴게·일반음식점
	6	웰니스 독립형 체험관	1,831	-	1,831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장기고급형 체험관)
	7	삼신스퍼릿센터	843	-	84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휴게음식점, 체험·전시 시설
	8	웰니스체험관	5,666	-	5,666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시설(장·단기형 체험관) 및 부대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목욕장/수영장/사우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9	오리엔탈 메디컬센터	1,288	-	1,28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형 치유(체험)시설 및 의료시설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산후조리원 등), 교육연구시설(생활습관의학 등), 판매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한 휴게·일반음식점
10	죽림헌	1,312	증)79	1,391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산물(약초 등) 농촌융복합체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약선차, 티테라피 등), 교육 및 연구시설, 제조시설(농특산물), 제품전시 및 판매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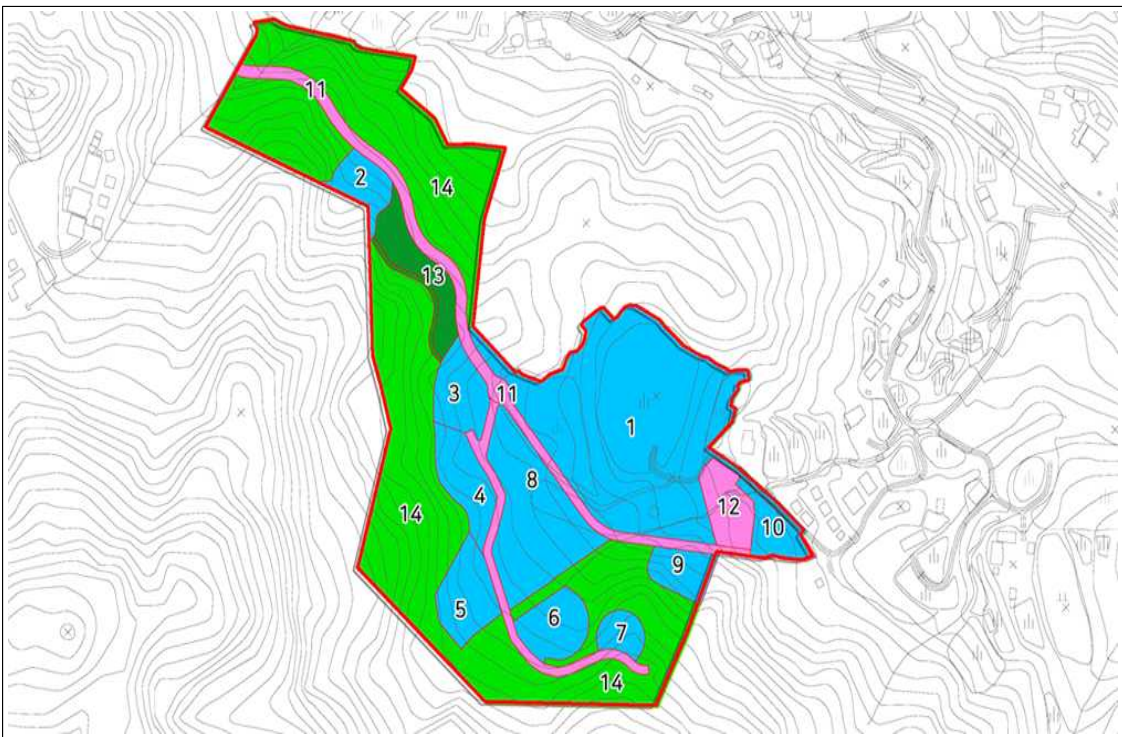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311	감)110	7,201	8.9	
	11 도로	5,692	-	5,692	7.0	• 기부채납
	12 저류지	1,619	감)110	1,509	1.9	
녹지 용지	소 계	38,265	-	38,265	47.3	
	13 공원	2,323	-	2,323	2.9	• 조망공원
	14 녹지	35,942	-	35,942	44.4	• 원형보전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6. 「지역개발지원법」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계획	민간(100%)	49,294	3,500	3,215	8,596	9,681	5,047	6,526	7,939	4,790
투자계획	합 계	49,294	3,500	3,215	8,596	9,681	5,047	6,526	7,939	4,790
	보상비	1,803	1,500	45	258					
	공사비	43,242	2,000	3,170	6,848	8,510	4,729	6,208	7,621	4,156
	용역비	2,542	-		636	318	318	318	318	634
	기 타	1,707	-		854	853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지역개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 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변경없음)

11. 편입 토지 세부 목록 : [붙임 1] 참조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 (변경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변경없음)

2 실시기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농업회사법인 청강(주) 대표 윤경순

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78-54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가. 명 칭 : 한방방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나. 목 적 : 청강원이 개발한 약초, 스파 등을 접목한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의 다변화 및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경제의 토대 마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다. 위 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라. 면 적 : 80,945m²

3. 사업시행기간 : 2021년 ~ 2027년(7년간)

4. 관련 협의사항 및 조치계획

가.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의견(조건사항) 및 조치계획

심의 의견(조건사항)	조치 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산청군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람 - 환경영향평가 원형녹지 보존 부분과 공공성 강화부분에 대해 보완 필요 - 토지이용계획 범위 재검토(원형보전하는 44.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 필요) - 현재 제시하고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의 보완필요(기부채납 시설 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녹지 일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겠으며, 공공성 강화부분에 대한 내용을 산청군과 MOU체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 시켜서 제시할 것 (기부채납, 일부시설 운영권 공공에 공유 등) - 주민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 - 수익성 검토 다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공공성 제공을 위해 부지내 일부 지역에 지역민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MOU체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지역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첨부3)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 수익은 2023년 이후 발생하며, 공사비로 일부 투입할 계획이며 2028년 준공 이후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금(세제후)의 5%를 인근지역 및 산청군 발전기금 형태의 제공을 하겠으며, MOU체결(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2043년 이후 총 투입 비용의 회수가 가능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시설이 들어가는 곳에 한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크게 축소)할 필요가 있음, 시설입지에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서 용도변경해야 할 것임 - 또는 원형보존지역을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산청군 기존 유사시설과의 경쟁으로 오히려 갈등 초래가 우려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보존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축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제 조건이 보존관리지역의 경우 20%이상 넘을 수 없으므로, 원형보존녹지 지역 일부를 당초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음 - 산청군 동의보감촌과는 생활권역이 다른 지역이며, 한방체험시설과는 차별화된 시설로서 한의학 치료가 주가 아닌 지리산의 기운을 통한 치유의 기능이 주가 되도록 설치하여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겠음 	부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역 중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형보존 협의 면적에 대해 제외 - 공공성 부분 강화하여 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녹지 일부를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으로 관리하겠으며, 공공성 강화부분에 대한 내용을 산청군과 MOU체결(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심의 의견(조건사항)	조치 계획	비고
-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원형보전 예정인 녹지부(44.4%)는 개발범위에 제한이 있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것	- 원형보존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축소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기준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제 조건이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20%이상 넘을 수 없으므로, 원형보존 녹지 지역 일부를 당초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음	부분 반영
- 공공성 실현 항목의 나열뿐만 아니라, 실현을 위한 청강과 산청군과의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수익은 2023년 이후 발생하며, 공사비로 일부 투입할 계획이며 2028년 준공 이후부터 발생하는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익금(세제후)의 5%를 인근지역 및 산청군 발전기금 형태의 제공을 하겠으며, MOU체결(안)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2043년 이후 총 투입 비용의 회수가 가능함)	반영
- 공공성 확보 방안 구체화(개발면적 부분만 용도변경, 부지 면적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기부채납(안) 등 제시)	- 공공성 제공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기부채납 시설(특산물 판매장 등)을 MOU체결(안)을 통해 제시하였음	반영

나.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별첨 1]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 [붙임 3] 참조

6.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실음 생략 (열람서류 참조)

7.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				
사업시행자	법인명	농업회사법인 청강(주)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4811-0010247
	성명	윤 경 순	전화번호	055-974-2757
	주소 또는 소재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78-54		
처분계획개요				
사업명칭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27.12.31
공급시기	2028.1.1부터		공급방법	지역개발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공급대상 토지 및 시설내역 (㎡)	용도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면적	80,945㎡		
	시설별	관광휴양시설	공공시설	녹지
	면적	35,479㎡	7,021㎡	38,265㎡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공급조건	민간참여 자부담 투자에 의한 사업으로 시행자 공급
기타 참고사항	해 당 없 음

8.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재원조달계획	민간(100%)	49,294	3,500	3,215	8,596	9,681	5,047	6,526	7,939	4,790
투자계획	합 계	49,294	3,500	3,215	8,596	9,681	5,047	6,526	7,939	4,790
	보상비	1,803	1,500	45	258					
	공사비	43,242	2,000	3,170	6,848	8,510	4,729	6,208	7,621	4,156
	용역비	2,542	-		636	318	318	318	318	634
	기 타	1,707	-		854	853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붙임 1] 참조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의제처리 사항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945	-	80,945	100.0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787	증) 26,728	55,515	68.6	
	생산관리지역	-	증) 11,610	11,610	14.3	
	보전관리지역	1,235	증) 12,585	13,820	17.1	
농림지역		50,923	감) 50,923	-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계획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8,787	1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따른 계획적 개발 유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급회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2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9번지 일원	보전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35	100%이하	
3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산160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26,728	100%이하	
			생산관리지역	11,610		
			보전관리지역	12,585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신설	28	청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80,945	-	80,945	2023.3.9.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28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80,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신설

3)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80,945	100.0		
소 계		35,479	43.8		
관광 휴양 시설 용지	1	오리엔탈 휴양체험단지	17,286	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시설 • 목욕장(스파/사우나/노천욕/샤워시설 등) • 시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 전시장, 집회장, 운동시설 • 단란주점을 제외한 휴게·일반음식점 • 제조시설(농특산물), 창고(약초 등) 및 판매시설 • 주차장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2	천왕봉 명상요가관	1,250	1.5	• 운동시설, 휴양시설 •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휴게음식점, 주차장
	3	웰니스 소리 치유관	1,820	2.2	• 복합 체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 판매시설
	4	웰니스 메디컬센터	1,988	2.5	• 양한방향 의료시설 및 관련 체험·판매·부대시설
	5	웰니스 헬스케어센터	2,116	2.6	• 운동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교육연구시설, 목욕장(사우나/샤워실 등), 단란주점을 제외한 휴게·일반음식점
	6	웰니스 독립형 체험관	1,831	2.3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장기고급형 체험관)
	7	삼신스피릿센터	843	1.1	• 교육·연구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휴게음식점, 체험·전시 시설
	8	웰니스체험관	5,666	7.0	• 관광숙박시설(장·단기형 체험관) 및 부대시설, 관광휴게시설 및 운동시설(목욕장/수영장/사우나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관광 휴양 시설 용지	9	오리엔탈 메디컬센터	1,288	1.6
10		죽림헌	1,391	1.7	• 농특산물(약초 등) 농촌융복합체험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약선차, 티테라피 등), 교육 및 연구시설, 제조시설(농특산물), 제품전시 및 판매시설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7,201	8.9	
	11	도로	5,692	7.0	• 기부채납
	12	저류지	1,509	1.9	
녹지 용지	소 계		38,265	47.3	
	13	공원	2,323	2.9	• 조망공원
	14	녹지	35,942	44.4	• 원형보전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시설(도로)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 ²)
합계	4	830	5,802	-	-	-	1	316	2,613	3	514	3,189
중로	-	-	-	-	-	-	-	-	-	-	-	-
소로	4	830	5,802	-	-	-	1	316	2,613	3	514	3,189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16	북측경계	소로3-1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223	소로2-1	죽림현 구역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33	소로2-1	소로3-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258	웰니스소리치 유관경계	시천면중산리 산171-1번지	일반 도로	-	-	

■도로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	• 노선신설 - L=316m, B=8m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1	• 노선신설 - L=223m, B=6m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2	• 노선신설 - L=33m, B=6m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3-3	• 노선신설 - L=258m, B=6m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조성에 따른 노선 신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75,143		-	75,143	
관광휴양시설용지	소계	35,479		-	35,479	
	A1	17,286	-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	17,286	오리엔탈 휴양체험단지
	A2	1,250	-	시천면 중산리 산160번지 일원	1,250	천왕봉 명상요가관
	A3	1,820	-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 일원	1,820	웰니스 소리치유관
	A4	1,988	-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 일원	1,988	웰니스 메디컬센터
	A5	2,116	-	시천면 중산리 산170-1번지 일원	2,116	웰니스 헬스케어센터
	A6	1,831	-	시천면 중산리 산171-1번지 일원	1,831	웰니스 독립체험관
	A7	843	-	시천면 중산리 산171-1번지 일원	843	삼신스피릿센터
	A8	5,666	-	시천면 중산리 산168-2번지 일원	5,666	웰니스 체험관
	A9	1,288	-	시천면 중산리 산171번지 일원	1,288	오리엔탈 메디컬센터
A10	1,391	-	시천면 중산리 산165-3번지 일원	1,391	죽림현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m ²)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509	-	-	1,509	
	B1	1,509	-	시천면 중산리 산165-3번지 일원	1,509	저류지
녹지 용지	소계	38,265	-	-	38,265	
	C1	2,323	-	시천면 중산리 산160번지 일원	2,323	공원
	C2	35,942	①	시천면 중산리 산160번지 일원	10,798	녹지
			②	시천면 중산리 산160번지 일원	4,365	녹지
③			시천면 중산리 산171-1번지 일원	20,779	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획내용	
-	A1~A10	용도	지정 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단, 토지이용계획 상에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4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마.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15.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도 : [붙임 4] 참조

※ 관계서류 및 도서는 경상남도 균형발전과(☎055-211-6145) 및 산청군 한방향노화과(☎055-970-6601)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열람기간 : 2023.3.9. ~ 3.23.)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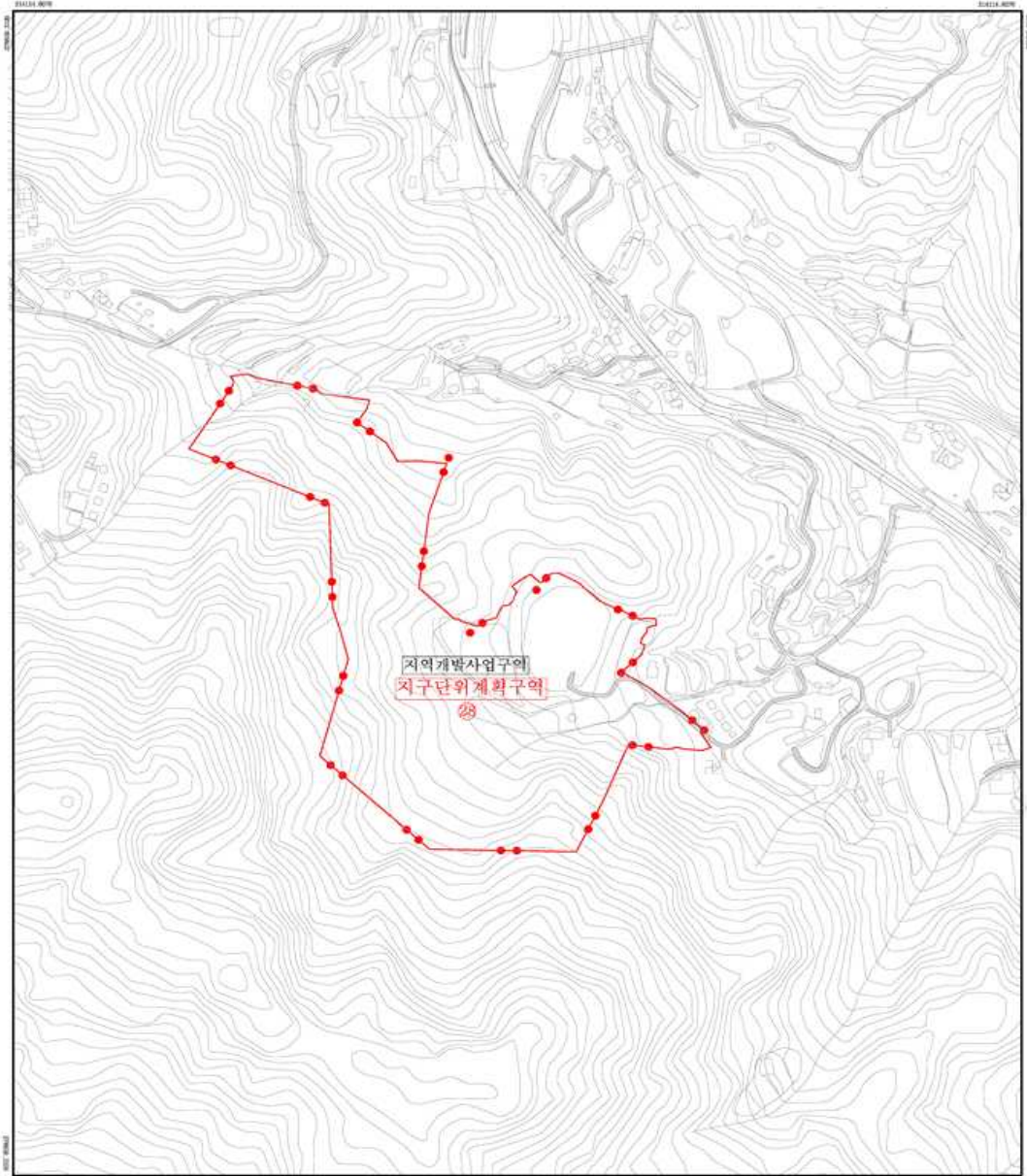
[붙임 1] 편입토지 세부 목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및 기타사항
		본번	부번		지적	편입		
합 계					182,663	80,945		
1	시천면 중산리	343	5	대	1,261	1,261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2	시천면 중산리	343	6	대	130	130	윤*순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3	시천면 중산리	344	2	도	695	678	윤*순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지분 2분의 1)
							이*숙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지분 2분의 1)
4	시천면 중산리	366		원	8,387	8,387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5	시천면 중산리	366	1	답	91	91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6	시천면 중산리	368		답	228	228	이*우	시천면 중산리
7	시천면 중산리	369		전	1,236	1,236	윤*순	시천면 지리산대로
8	시천면 중산리	370		묘	116	116	윤*순	시천면 지리산대로
9	시천면 중산리	371	1	전	1,020	1,020	이*민	시천면 지리산대로
10	시천면 중산리	371	2	전	1,020	1,020	윤*순	시천면 지리산대로
11	시천면 중산리	372	2	답	330	330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2	시천면 중산리	372	3	답	182	182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3	시천면 중산리	805		답	63	63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4	시천면 중산리	산160		임	86,537	22,132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5	시천면 중산리	산165	1	구	534	384	국 (기획재정부)	
16	시천면 중산리	산165	3	임	3,334	3,334	윤*순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7	시천면 중산리	산165	4	임	219	219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8	시천면 중산리	산165	20	임	124	124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19	시천면 중산리	산168	1	임	9,917	717	문*석	시천면 중산리
20	시천면 중산리	산168	2	임	14,876	14,876	산청군	
21	시천면 중산리	산169		임	694	694	박*백	
22	시천면 중산리	산170	1	임	9,917	9,917	산청군	
23	시천면 중산리	산171		임	6,088	6,088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24	시천면 중산리	산171	1	임	35,664	7,718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시천면 지리산대로

[붙임 2] 지역개발사업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포함) 지형도면고시도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지구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01



경상남도고시 제2023 - 호
2023 . . .

법례	
——	지역개발사업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정일자	연정군수
2023년 03월 일	
고시번호	2023년 03월 일
고시번호	경상남도고시 제2023 - 호
작성일자	(주)태우엔지니어링
작성년월일	2023년 03월 일
작성인	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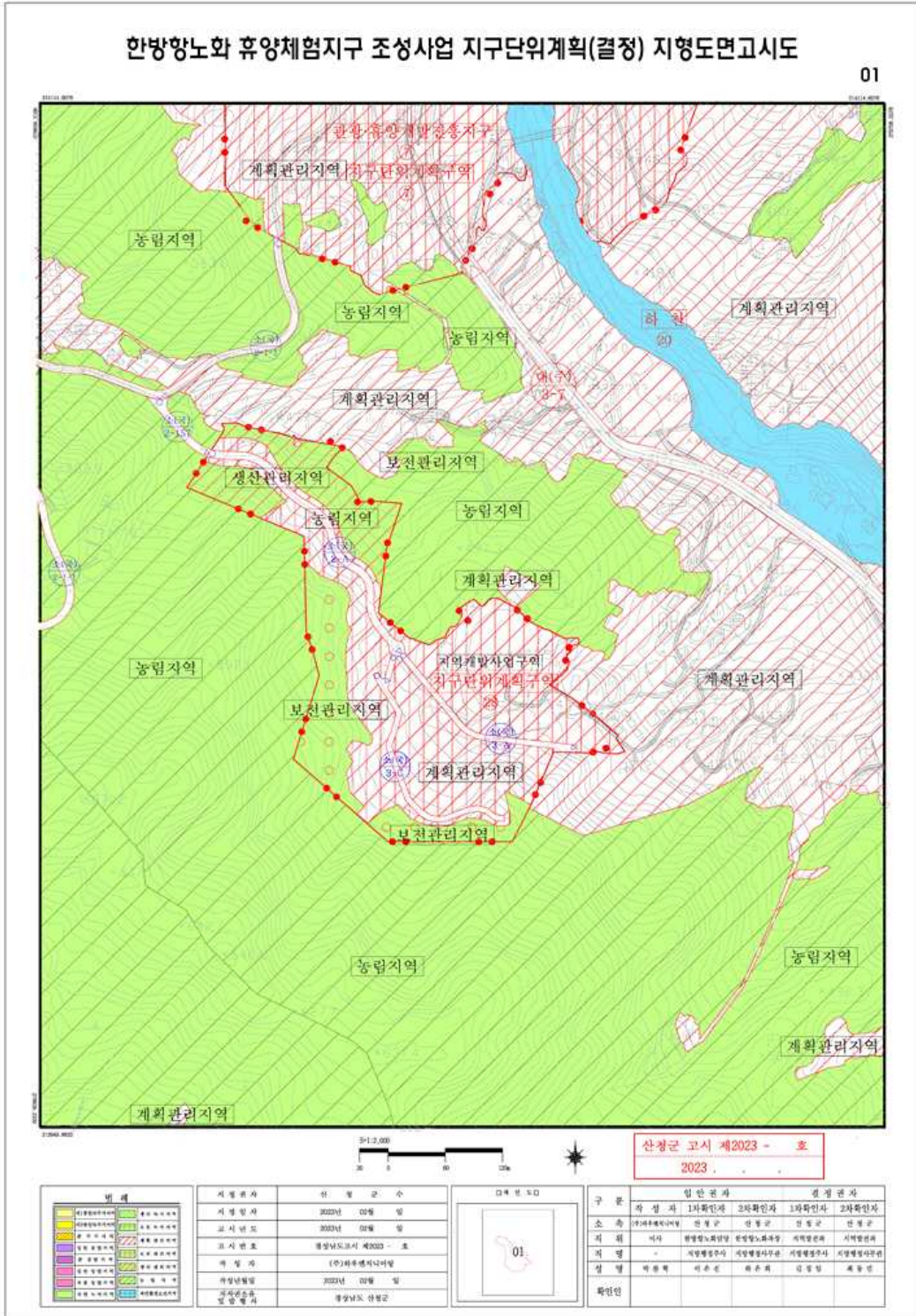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3차확인자
소속	(주)태우엔지니어링	안동군	안동군	통영남도
직명	한방향노화휴양지구 조성사업	한방향노화휴양지구	지역개발	지역개발
직명	-	지역개발	지역개발	지역개발
성명	이준진	이준진	김재형	김재형
확인인				

[붙임 3] 위치도



[붙임 4] 지구단위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도



[별첨 1]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경상남도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항노화 산업과	[2019.9.3.최초협의] - 신청 사업은 항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도와 지역특화산업으로 항노화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청군에서 지대한 관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 지리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초를 활용한 체류형 휴양 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신청서 상의 자금을 적기 투입하여 계획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이 기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반영
가야문화 유산과	[2022.1.17.재협의] -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한 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에 따른 문화재청과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 문화재청과 협의완료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문화재지표조사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협의완료 하였음	반영
환경정책과	[2019.9.3.최초협의] ■총괄 - 동 계획은 산청군 시천면 일원 한방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 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환경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거쳐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절차를 생략 하였음	반영
	- 계획지역 주변으로 단독주택 및 마을이 인접하여 있어,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전진단(건축물 균열조사 등) 및 지속적인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 적정 장비 투입 및 작업시간 조정, 방음 시설 설치등의 추가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 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환경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소음 장비 사용, 적정 장비 투입 및 작업시간 조정, 방음시설 설치 등의 추가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음	반영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자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친환경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사용하여야 함	- 해당법령에 따른 친환경 녹색제품 사용대상 사업에 해당될시 친환경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을 구매·사용하겠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자연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지내 산지(임야)지역은 공사시행 및 절·성토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생태계)훼손 및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훼손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호대책 수립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행 및 절·성토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생태계)훼손 및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기계발진 및 낮은 경사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수립된 보호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법령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권역별로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1등급 권역을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해당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인·허가등을 한 경우 20일 이내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p>▷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p> <p>▷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p> <p>▷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할 계획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지역 지형훼손 및 주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문헌 및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삼)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보호종에 대한 영향저감 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에 대하여 법적검토사항 외 추가적인 면밀한 검토(지역 환경전문가 의견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서식여부 확인)를 하여 서식지 등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훼손 및 주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사업계획을 축소,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 문헌 및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삼)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수립된 보호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중 법정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에 대하여 동식물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시행 시 주변환경 변화 및 야생동물 서식지 영향여부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수립하고,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발견시 신속한 조치 및 서식지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구간내 식생 조사결과, 귀화식물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사업과정에서 인위적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 제거·관리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정에서 귀화식물의 인위적 확산과 식생변화 예방을 위한 사전 제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환경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시행 시 사업계획지 및 주변지역의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사업시행 전·후 주변 서식지 변화, 영향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별도의 저감·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구역 북측의 관광휴양시설(항노화휴양체험관(웰니스호텔))과 도로개설 예정부지로 인하여 주변 생태축이 단절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설치 부지 이동 등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중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사업시행 전·후 주변 서식지 변화, 영향여부 등에 대하여 동식물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저감·보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 해당의견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의 관광휴양시설용지를 축소(44,951㎡→41,530㎡, 감 3,421㎡)하였으며, 도로의 경우 BLOCK-3 지역 NO-13구간의 패널식용벽이 당초 18.5m 높이로 계획하였고 도로로 인해 사업지역 북측 산지로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 하였으나, 해당구간의 도로를 피암터널로 변경하여 사면발생구간 및 생태축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음 	반영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폐기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산청군 폐기물 처리계획,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 하여야 하며, - 또한,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야 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산청군 폐기물 처리계획, 관련 법률의 처리 규정 등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 하겠음 - 훼손대상 임목에 대해서는 조경수, 원목자재, 연료목재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며 임목폐기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반영
기후대기과	<p>[2019.9.3.최초협의]</p> <p>■대기보전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확산 모델(AERMOD)을 이용한 사업영향권의 대기질(PM10, NO2)의 예측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공사 시에는 기상개황, 현장 작업여건 등에 따른 기준 농도초과, 악취에 의한 피해발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에 따른 대기확산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공사 시행에 따른 기준 농도초과, 악취에 의한 피해발생 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 계획 승인 건은 향후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에 대한 예측농도 산정이 없어 환경기준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우나, - 사업시행 시, 기상개황, 현장 작업여건(장비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농도초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향후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예측농도를 산정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 하였음 - 사업시행 시, 기상개황, 현장 작업여건(장비추가 투입, 작업시간 연장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농도초과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기후대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사업시행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민원발생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생활환경 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역 주변 정온시설(신촌마을, 나대마을, 청송사 등)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시 소음·진동·비산먼지발생에 대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인근 정온시설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시키는 방음시설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준수할 것 ▷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음·방진벽(망)설치, 진입도로 살수,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 환경피해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 - 표토굴착 등 계획지구의 토공사가 수반되므로 문헌조사, 정보시스템(지질정보검색시스템,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등) 및 현장조사 등으로 자연발생 석면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로 인한 석면노출 및 비산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역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시 소음·진동·비산먼지발생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사시 인근 정온시설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진동을 저감시키는 방음시설로 가설 방음판넬 설치 준수하겠습니다 ▷차량의 통행으로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방음·방진벽(망)설치, 진입도로 살수, 공사차량 저속운행 등 환경피해 억제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획대상지의 자연발생 석면의 분포여부를 확인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로 인한 석면노출 및 비산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조명기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목적에 맞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음·진동 등 피해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민원발생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조명기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명목적에 맞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한 조명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민원발생 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가적인 적정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반영
수질관리과	<p>[2019.9.3.최초협의]</p> <p>■수질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지역 내 지하수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관정 폐공 또는 개발·이용시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대상지에 필요한 용수는 기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할 계획으로 지하수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사시 발견되는 관정에 대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공토록 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및 수위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수질관리과	<p>[2019.9.3.최초협의]</p> <p>■수질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추진 중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아야 하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 이행하여야 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폐수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사전에 산청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추진 중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토사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지 않으며, 인근 공공수역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 이행하겠음 - 해당법령에서 규정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할 경우, 사전에 산청군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겠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수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지역(산청군 시천명 중산리 일원)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C)으로 동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청군으로부터 할당받아야 함 - 실시계획에 따른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단위유역 남강C)으로 본 개발사업 계획 시행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을 산청군으로부터 할당 받았음 -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토사,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및 유류 유출, 운영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하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점오염저감대책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빗물의 효율적 이용 도모,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설치를 권고하며, 향후 빗물관리시설 설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법령에 따라 빗물관리시설(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설치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상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공급 가능여부는 산청군 상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 시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기계발전 지하관정을 통해 공급도록 계획함 - 상수원보호구역 저축 시 산청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와 협의도록 하겠음 - 사업시행 시 해당법령에 따라 수도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겠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수질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를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겠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하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법에 의거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에 대하여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부합하도록 세부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산청군 하수도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함 <p>▷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가능 여부 및 유입농도, 유입시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하동군 하수도부서와 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오수 등 하수는 개별건축물별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산청군 하수도 부서와 협의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처리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수도 설치 는 산청군 하수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발생하는 오수는 현장사무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토록 계획하였음 - 해당법령에 따른 중수도 설치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할 계획임 	반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범정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장도 중수도 설치를 권장함 		
산림녹지과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하오니 협의의 조건 이행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협의 조건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하겠음 	반영
	<p>1.본 의견은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로서 산지전용 협의(허가)는 포함되지 않으며,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의한 별도의 산지전용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대상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승인)에 되는 것으로 보전산지 면적이 17,522㎡로 산청군 민원과 개발허가 담당자와 협의 하였으며, 구역지정 고시 후 산지전용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음 	반영
	<p>2.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음 	반영
	<p>3.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함.</p> <p>※실시계획 수립 시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변 인가·농경지·산지·축사·하천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에서 책임처리 하겠음 - 실시계획 수립 시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반영
<p>4.산림경관 보전, 자연환경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실시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p>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산림녹지과	①산지전용으로 인하여 홍수 시 하류지역의 유량상승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유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단식 산지전용으로 계획하여 당해 토사의 이동량은 목적사업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수립 할 것.	- 재해영향평가 결과 개발후 토사유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됨	반영
	②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를 실시계획 시 반영할 것.	- 배수시설 및 영구저류지 설치계획하였음	반영
	③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시 반영 할 것.	- 최소한의 절성토로 시설물 설치계획하였음	반영
	④사업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하여 이식 가능한 수종과 규격을 검토하여 사업지 내 복구·조경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최소한의 별목으로 이식이 필요한 수종과 규격에 대해서는 사업지내 복구·조경으로 활용하겠음	반영
	5.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실시계획 승인 시 반드시 재해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의한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이나, 필요 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겠음	반영
	6.사업구역 내 및 경계 5m이내의 유·무연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향후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함.	- 무연고자 협의하였음	반영
	7.반출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m ³이하가 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반출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m ³이상 일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 최소한의 절성토 계획으로 5만 ^m ³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였음	반영
	8.실시계획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특히 다음 기준을 유의하여 실시계획 수립하여야 함.	-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음	반영
	①산지의 개발로 인하여 형성되는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하되,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폭 1m 이상의 소단이 설치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 6]의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직높이 15m이하로 계획하였고, 5m마다 1m 이상의 소단을 계획하였음	반영
	②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없도록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최대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토사유출이 최소한이 되도록 설계하였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산림녹지과	<p>③산지전용면적 중 산지전용으로 발생하는 절·성토 경사면의 면적(수평투영면적)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9.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사업구역 내 소나무류의 외부이동은 금지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 지장목 별채 시 산청군 산림녹지과에 방제처리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 파쇄, 소각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외 발생하는 별채입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p>	<p>- 산지전용면적의 50%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였음.</p> <p>-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하여 적합한 절차로 이행하겠음.</p>	반영
	<p>10.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 등의 결정·고시되면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을 등을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및 산청군 민원과에 통보하여야 함.</p> <p>11.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소유별·산지구분별 내역서에 명시된 필지별·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산림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p> <p>-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산지전용 협의 건에 대해서는 신청면적이 31,841제곱미터 (보전산지 17,522㎡ 준보전산지 14,319㎡)로 산청군 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상기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 등의 결정·고시되면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을 등을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및 산청군 민원과에 통보하겠음</p> <p>- 위 내용들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음</p> <p>- 산청군 민원과 개발허가담당부서와 협의완료하였음</p>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이므로, 본 개발사업에 관한 재해영향평가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사전검토 받은 후 우리 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하여 함</p>	<p>-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부터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상남도 재난대응과와 협의하였음</p>	반영
자연재난과 (재난대응과)	<p>[2020.1.17.재협의]</p> <p>- 승인권자는 2019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인 경우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전에 재해영향평가 재협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p> <p>※재협의 대상(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p> <p>1. 개발계획 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p> <p>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p>	<p>- 금회 변경사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재협의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검토됨</p>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자연재난과 (재난대응과)	3.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의 저류용량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4.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5.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 목</th> <th style="width: 45%;">재협의 대상여부 규정</th> <th style="width: 40%;">검토결과</th> </tr> </thead> <tbody> <tr> <td>① 규모증가</td> <td>부지면적 30%이상 증가</td> <td>증감없음</td> </tr> <tr> <td>② 규모증가</td> <td>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td> <td>증감없음</td> </tr> <tr> <td>③ 재해저감 시설 변경</td> <td>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 또는 저류용량이 10%이상 변경</td> <td>영구저류지 2개소 유지 (10%이하 변경)</td> </tr> <tr> <td>④ 토지이용 변경</td> <td>토지이용 면적이 30%이상 변경</td> <td>8.8% 변경</td> </tr> <tr> <td>⑤ 불투수층 증가</td> <td>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이상 증가</td> <td>9.29% 감소</td> </tr> </tbody> </table>	항 목	재협의 대상여부 규정	검토결과	① 규모증가	부지면적 30%이상 증가	증감없음	② 규모증가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	증감없음	③ 재해저감 시설 변경	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 또는 저류용량이 10%이상 변경	영구저류지 2개소 유지 (10%이하 변경)	④ 토지이용 변경	토지이용 면적이 30%이상 변경	8.8% 변경	⑤ 불투수층 증가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이상 증가	9.29% 감소	
		항 목	재협의 대상여부 규정	검토결과																	
		① 규모증가	부지면적 30%이상 증가	증감없음																	
		② 규모증가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증가	증감없음																	
		③ 재해저감 시설 변경	영구 저류시설의 위치가 변경 또는 저류용량이 10%이상 변경	영구저류지 2개소 유지 (10%이하 변경)																	
		④ 토지이용 변경	토지이용 면적이 30%이상 변경	8.8% 변경																	
⑤ 불투수층 증가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이상 증가	9.29% 감소																			
-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완료한 사업계획 등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재협의 대상 이하) 변경 이행계획서를 착공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실과협의 의견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후 최종 변경된 사항에 대해 “재협의 대상”여부를 재검토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시 착공전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2022.11.10.보완협의] - 실시계획 승인 전 최종 수립된 「한방향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의 내용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 현재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재협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면적증가 없음, 저류용량 10%미만 변경, 토지이용 8.8%변경, 불투수층 -8.8%변경) ※2022.11	반영																			
- 변경된 내용이 없거나, 재협의 대상 이하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전에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전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반영																			
- 아울러 실시계획이 승인 이후에는 사업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착공 통보,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평가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겠음.	반영																			
[2020.1.17.재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과 협의(농지분야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구는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그 협의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으니, 산청군 농지부와 농지 전용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에 대하여 산청군 민원과 개발허가 부서와 협의완료하였음	반영																			
에너지 산업과	[2020.1.17.재협의]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분산전원 확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광휴양시설 설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휴양시설 설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도시계획과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라 농지부서(분야 및 전용 협의)와 산림부서(보전산지 해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처리 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시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및 산지와 관련하여 산청군 및 경상남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실시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재하도록 하겠음 	반영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용도지역을 기존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은 없으나, 산청군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상의 용도에 부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군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 용도에 부합되게 작성하였으며, 산청군과 협의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군 사무에 해당되므로 산청군과 별도 협의하시기 바람,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계획(변경)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함. -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사항에 저촉이 없어야하며, 저촉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최근 도심지내 지하시설물 침수문제 등 자연재해 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재해취약성분석)를 철저히 하고, 지하시설물 설치 시 침수방지 설비(차수벽 등) 설치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산청군과 협의 하였으며,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 - 계획(변경) 승인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겠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사항에 저촉없이 계획하겠으며, 저촉될 경우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이 아니나, 2021년 실시한 산청군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사업대상지의 경우 폭설에 다소 취약(2등급)하고 나머지 재해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도시계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취약하게 분석된 폭설의 경우 폭설취약 지역 및 주변지의 내 설적치장 조성, 도로변 급경사지 스노우펜스 설치 및 도로 결빙방지 조취 등을 통해 재해영향을 저감하겠으며, 사업 시행 시 기타 재해예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겠음 - 지하시설물이 있는 건축 인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음 	
건축과	<p>[2020.1.17.재가승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관광휴양시설용지에 계획된 건축물의 경우 개별 건축물 건축 시 해당 허가권자인 산청군에 허가 신청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 개별 건축물 건축 해당 산청군 건축주택과에 허가 신청하겠음 	반영
교통정책과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80,976㎡)에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지역개발사업:부지면적 10만㎡이상) - 향후,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 및 교통부서와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 등은 설치전 관할경찰서 및 교통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산청군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한방향노화시설(한방향노화과)	<p>[2019.9.3.최초협의]</p> <p>■ 산청군수 종합의견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청강원이 개발한 약초, 스파 등을 접목한 원스톱 복합치유 공간 조성 및 융복합형 한방향노화 힐링타운을 구축하여 침체된 산청의 지역경제와 서부경남의 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관광의 발달로 창출된 관광사업과 고용기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의 휴양·여건공간 등이 개선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의견없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재무과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은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산림녹지과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매각 또는 사용수익·대부를 검토할 수 있음 (※사용수익, 대부 기간:최대50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0㎡이상의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등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군 의회 의결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또한, 재원조달계획 총사업비 산출내역에 균유지의 편입 또는 임대 관련 비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요함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19-89) 별표2 영구시설물 축조기준 제6호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 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착공은 허용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0㎡이상의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등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군 의회 의결을 통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재산 재산관리관(산림녹지과)와 협의하였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 매각 또는 사용수익·대부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하겠음 - 공유재산 관련하여 행정간담회를 통해 협의 완료하였음 - 재원조달계획 내 균유지의 편입 또는 임대 관련 비용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 공유재산 매각 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착공 하지 않겠음. - 관련법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절차를 해당 공유재산 형질변경 전 군 의회 의결에 따라 진행하겠음.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민원과	<p>[2019.9.3.최초협의]</p> <p>■개발행위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는 군계획도로로, 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3만㎡이상은 8m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함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법 제5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기준 별표1의 2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규모는 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경우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군계획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도로 폭원은 중산~내대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으로 본 사업구간까지 진입여건을 확보하였고 폭원 8m 왕복2차로로 계획하였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 관련하여 [별표]실시계획 승인 관련인·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관련)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에 해당하며 의제하는 사업임.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개최 하고 지역개발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균형 	<p>반영</p> <p>부분 반영</p>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민원과	<p>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농촌생활 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농지분야협의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p> <p>[2020.1.17.재협의]</p> <p>■농지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협의)조건 : 협의한 사항 및 아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농지법」 제39조 및 제42조,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나 원상 복구 등 의법 조치를 받게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사항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협의에 따른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는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세를 납부하겠습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 개요서에 맞게 시행할 것이며, 변경 사항이 생길시 변경협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 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사항이 생길시 변경협의 후 진행하겠습니다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 시에는 일조, 통풍, 통작 방해 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하여야 하며, 피해 등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타 개별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한 허가면적 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성실 경작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하겠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허가일로부터 2년 내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 분할한 허가면적 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여 성실하게 경작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는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농지법 제32조에 열거된 시설 외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습니다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민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전용 시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설계서 제출 대상임 - 산지전용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감리완료 보고서 제출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복구설계서 제출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하며, 복구준공검사 신청시 감리완료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사법」에 의한 산림분야의 기술사무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산림조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준공검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제출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목적사업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 산지전용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을 득하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득하고 시행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가 주거지 등이 인접지에 위치하므로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할 것 -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거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토석채취 허가·신고 대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겠음 - 현 설계상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은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 제4항에 따른 들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호의 사유를 인지하고 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민원과	<p>※ 산지전용협의 조건 “별첨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등을 검토해 보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시점, 방법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등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있음 -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시점 및 방법 등을 구체화 한 후 보완 조치 <p>- 목적사업 완료 시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현 시점 산지구분(보전, 준보전)에 맞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승인 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의제 협의하고 「산지관리법」 제8조 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된 구역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같은법 6조 3항 “2. 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제7조 1항 “2.법 제8조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가. 계획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에 해당함으로 같은지침 제7조 2항에 따라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목적사업 완료 시 보전산지 해제 절차 이행하겠습니다. 	반영
	<p>[2020.1.17.재협의]</p> <p>■건축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조성 시 관련법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겠습니다 	반영
문화체육과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의 문화재 지표조사 확인 결과 금회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서는 본 조사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되므로 예정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본 조사는 육안관찰에 의한 지표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그 발견된 사실을 우리군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공문: 문화체육과-16914호(2019.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시 산청군 문화체육과의 문화재 담당자에게 신고하겠습니다 	반영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의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면적, 사업위치의 변경 없이 사업구역 중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건으로, - 신청구역 중 일부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하여 문화재 현상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문화 체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하는 것도 포함) 지표조사 대상임. 이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지표조사 확인 결과 금회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에서는 본 조사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되므로 예정된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 내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음 	반영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하는 것도 포함) 지표조사 대상이며 지표조사를 기완료하였음. 기 송부한 붙임 「산청 청강원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부지 내 문화재보존 대책 통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신청구역 중 일부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3구역(산청 청송사 소나무)입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 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우리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송부한 붙임 「산청 청강원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부지 내 문화재보존 대책 통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별 건축 허가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반영 반영
환경 위생과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최대한 설정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이 수립하겠습니다 	반영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환경 위생과	1) 생물다양성·서식지의 보전 -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으로 훼손의 최소화 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하나 기존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당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여야 함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 함하여야 함	- 기존 현지조사에서 발견된 동·식물 및 생물 다양성 및 서식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당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하겠 음 -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 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수립·시행 하겠음	반영 반영
	2)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대규모 산림이 조성되어 있고 경사지가 많아 사업시행시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사면붕괴, 토사유출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	- 사업지역내 건축물은 경사가 낮은 지역으로 최대한 계획하였으며,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면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 을 수립하였음	반영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국립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중산리 계곡 등 산청군의 주요 유원지가 집중되어 있어 본래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건물 건축 및 조경 식재 시 경관 유지에 맞도록 시설하 여야 함	-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건축물 높 이계획을 2층이하로 수립하였으며, 건물 건축 및 조경 식재 시 경관 유지에 맞도록 계획하여 본래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도 록 계획하겠음	반영
	4) 수질환경 - 공사시 발생될수 있는 토사 및 비점오염원 등의 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수 있으므로 오염방지(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주변 계곡의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오염총량협의 대상임	- 공사시 사업지역내 침사지 및 침사조를 선시 공하여 토사 및 비점오염원 등의 물질이 상 수원보호구역 및 인근 하천의 오염을 예방하 겠음 - 계획 시설물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계곡의 오염방지할 계획임 - 오염총량관련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5) 대기환경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여야 함 - 비산 및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겠음 - 비산 및 재비산먼지의 발생을최소화 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시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6) 소음진동 - 굴삭기 등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 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시행규칙 제21조1항 1 ~ 5호에 해당되는 공사일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차량의 저속운 행, 야간작업 자제 등 소음진동 발생억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최소 필요규모의 장비를 투입하도록 함 - 주변 주택지, 상업지, 관광지 등에 소음진동 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가설방음판 설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법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 당시 사전신고토록 하겠음 -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장비, 차량의 저속운 행, 야간작업 자제 등 소음진동 발생을 억제 토록 하겠음 - 공사시 최소 필요규모의 장비를 투입하겠음 - 주변 정온시설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편함 이 없도록 가설방음판 설치 등 필요조치를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p>환경 위생과</p>	<p>■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제3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39조(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등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승인기관, 사업자 등의 절차(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여름피서철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지역으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사항(공사현장 진출입 대형트럭, 비산먼지, 계곡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최소화 하고 여름철 공사시행에 특히 주의하기 바람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므로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장일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일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상에 규정된 사전공사의 금지,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사업착공 등의 통보,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등 승인기관, 사업자 등의 절차(의무)를 준수하겠음 - 조속한 공사시행으로 공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사항(공사현장 진출입 대형트럭, 비산먼지, 계곡수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공사시행에 주의토록 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시 해당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 해당법령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 본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대상에 대해 경상남도 환경정책과로 통보하겠음 - 해당법령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득하겠으며,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를 득하겠음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도시 교통과 (지역 발전과)</p>	<p>[2019.9.3.최초협의]</p> <p>■관리계획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내용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1월 4일 지정 승인(경상남도 고시 제2017-550호)된 지역개발계획(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에 대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제 협의 추진 시 ‘국토계획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계획법’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조사결과서’,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등이 생략 가능하며, 금회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 중 용도지역 변경은 결정권자인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각종 검토서를 첨부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였음 	<p>반영</p>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도시 교통과 (지역 발전과)	<p>■지구단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립계획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의 진입도로 폭원 및 녹지를 확보에 적합하며, - 현재 제시된 건축계획상 부적합한 다음 건축 계획 내용은 향후 개별 건축허가 신청 시 조정하여, 해당부서에 신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향후 대상지내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경사도 25도 이하, 입안 지역안에서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높이 250m 이하로 해야 하며, 건축물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m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 150m 이내로 해야 함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도로와 건물 사이 건축선 후퇴로 완충공간(녹지) 설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합한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시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반영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 1131호)을 준수하여 주시고, 지형도면에 등재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선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은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을 준수하여 수립하였으며, 지형도면에 등재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선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실시계획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별표 및 동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2022.11.10.보완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 주시고, 금회 의제협의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의제 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별표 및 동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 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겠음. - 의제협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의제 협의하겠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토사항 적합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도시 교통과 (지역 발전과)	<p>[2020.1.17.재협의]</p> <p>■경관성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업은 비도시지역에 80,976㎡ 규모의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임. 「경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반영
	<p>[2019.9.3.최초협의]</p> <p>■자연재해대책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 규정한 사업 - 본 사업은 개발사업 구분 상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항목에 해당되며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초과하나 개발사업 구분 산지개발 및 골재 채취항목중 산지 면적이 4,995제곱미터이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임 - 허가청인 경상남도에 협의 사항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6조의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사업으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분야 및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분야에 속하는 사업임 - 부지면적 80,976㎡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며, 경상남도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음 	반영
안전 건설과	<p>[2020.1.17.재협의]</p> <p>■건설행정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도로가 군계획시설 결정시 기부채납 절차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p>■국유재산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구간 내 국유재산(국토교통부) 포함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2019.9.3.최초협의]</p> <p>■농어촌정비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도로에 대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시 기부채납 하겠으며, 기부채납 대상인 아닌 저류지는 지구단위계획 상 기반시설에서 제외하겠음 - 사업구간 내 국유재산이 포함되지 않음 	반영
	<p>[2022.11.10.보완협의]</p> <p>■농업기반담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도로가 군계획시설 결정시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내 도로가 군계획시설 결정시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겠음. 	반영
상하수 도과	<p>[2019.9.3.최초협의]</p> <p>■상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구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지구로 지방상수도 인입 관련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시천급수구역 확장시 검토 협의 대상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시천급수구역 확장시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산림 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녹지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계획 - 한방향노화과 : 실시계획 승인(경남도) 후 사업시행자[청강(주)]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묘지 이장 등 원상복구 후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반영으로 매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하겠습니다. - 실시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절차에 따라 분묘처리,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 매각 추진 협의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산청 경찰서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장소는 산청의 지역경제와 서부경남의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활성화의료휴양체험단지(웰에이징 복합센터), 향노화 휴양체험관(웰니스호텔),룽탑케어단지(단독형, 연립형), 치유센터(웰에이징 헬스센터), 한방체험시설 등 설치를 위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 외 차량이동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이용 차량 최대 370여대 추정이나 이로 인한 정체현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추가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경찰서와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산청 소방서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 설치 : 자체 배수지에 연결된 상수관로 배관에 공설 지상소화전 설치 ▷대상물의 용도가 관리지역이므로 소화전 설치 시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할 것 - 저수조 설치 : 소방차량이 흡수관을 이용하여 수원을 흡입할 수 있는 저수조 설치 및 흡수관 배치, 저수조 설치 어려울 시 자체 배수지의 수원을 활용할 수 있게 자체배수지에 흡수관 배치 요함 ▷저수조 설치 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3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진입도로 개설시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차량이 주진입로를 통하여 각 대상물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도로 폭 및 굴곡지 회전반경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전 설치시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음 - 저수조 설치 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3의 저수조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겠음 - 사업지 진입도로는 소방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6m~8m 폭으로 계획하였으며, 소방차량 전용구역 및 전개공간은 향후 건축물 설계시 반영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산청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차량이 각 대상물 출입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차량 전용구역 확보 ▷고가사다리차의 작전반경 및 아우트리거 전개 공간(5m 이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향후 한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지역개발사업 지정 승인 등 완료 후 건축물 신축 시 건축허가등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방향노화 휴양체험지구 지역개발사업 지정 승인 등 완료 후 건축물 신축 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득하도록 하겠음 	반영
KT 산청출장소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개발지구 내 건축물 및 기타부대 시설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로서는 공급방안에 대한 협의 및 검토 대상이 아니며, 건축설계 인허가시 통신선로 공급 요청을 통해 추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건축허가 시 통신선로공급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겠음 	반영
한국전력 공사 (산청지사)	<p>[2020.1.17.재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개발사업지구 내 건축물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전력설비용량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설비용량에 따른 소요전력 확정 후 요청 시 공급방안에 대해 제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상공급선로/여유용량:산청변전소 단성DL/1,000kw (22년 1월 기준) - 여유용량은 현시점 기준이며, 부하증감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공급선로의 용량 초과 시 선로 신설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배전선로 고사 진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건축허가 시 설비용량에 따른 소요전력 확정 후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반영
산청군농업 기술센터	<p>[2019.9.3.최초협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필지(시천면중산리 366-1외7)는 초지로 이용되지 않아 초지법 협의 및 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낙동강유역 환경청	<p>[2019.9.3.최초협의]</p> <p>■총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계획은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366번지 일원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본안 작성시 아래 검토의건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제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시 검토의건을 충실히 검토·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p>낙동강유역 환경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결된 지역으로 자연공원구역과의 완충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며, 특히 사업대상지 내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가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분 지역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임. 이러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자연공원 완충기능의 저하는 물론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또한 과도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이면서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기 훼손지인 식생보전등급 V등급지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p>■입지의 타당성</p> <p>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규모 축소 <p>▷금회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연결된 지역으로 자연공원구역과의 완충기능을 하고 있는 공간이며, 특히 사업대상지 내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가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분 지역이 경사도 20도 이상의 지역임. 이러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 자연공원 완충기능의 저하는 물론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 또한 과도할 것으로 판단됨</p> <p>▷따라서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이며 경사도 20도 이상인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기 훼손지인 식생보전등급 V등급지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 완충기능의 저하 및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당초계획을 축소하여 기훼손지를 중심으로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와 경사도 20도 이상 중첩지역을 최대한 제척(10,043.2㎡→8,297.2㎡, 감1,746.0㎡) 하도록 계획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도가 높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녹지용지(원형녹지)로 최대한 존치하고 기 훼손지인 식생보전등급 V등급지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당초 부득이하게 개발되는 식생보전등급 III등급지이며 경사도 20도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계획되었던 토지이용상 관광휴양시설용지(웰니스호텔 및 룬텀 케어단지(연립형))의 면적을 축소(44,951㎡→41,530㎡, 감3,421㎡)하는 등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 	<p>부분 반영</p> <p>부분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조명·소음 등 저감방안 <p>▷공사 및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특히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 생물종의 경우 빛, 소음, 진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하여야 함</p> <p>※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2013. 3),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기법개발 연구」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야간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서에 수록하였음 - 해당 연구를 참고하여 사업대상지 및 그 주변 지역 생물종에 대해 외부 환경변화 따른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p>반영</p>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생태계 보전방안 ▷공사 시 토사로 인한 수생태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수환경 보전대책은 수생태계와 수질 보전대책이 동시에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하므로 수질 항목과 연동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사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임 - 수환경 보전을 위해 수질 항목과 연동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인근 수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토사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저감시설물 계획을 특히 수질항목과 연계하여 적정 위치에 적정 규모의 저감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시 토사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정 위치 및 규모의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계획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배수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에 대한 적정 규모, 위치, 개수 산정·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평가서 상에 제시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의 규모, 위치, 개수에 따라 설치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및 보전방안 ▷공사 및 운영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여야 함. 비상보전대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다음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공사 중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개발사업 생태계훼손사고 대응매뉴얼 구축」(KEI, 2010) 42-46쪽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및 운영 시 주요 생물종에 대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보전대책을 공사 전에 수립하고 수립된 비상보전대책에 따라 공사 중 생태계훼손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반영
	<p><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안정성 검토 ▷계획부지의 지반조건에 따라 침하, 함몰, 시설물 붕괴 등 이차적인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부지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 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 시 및 공사 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부지 내 주요 시설물, 주요 절·성토 비탈면 발생 지점에 대해 지반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사업으로 인해 지반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예측하고, 지반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 시 및 공사 후 지반의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탈면 안정성 검토 ▷주요 절·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비탈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대상 비탈면의 지반조건 및 지질구조(지층의 주향 및 경사, 엽리, 편리, 단층, 절리 등)를 고려하여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하고 비탈면 불안정 예상 시에는 절·성토 규모 축소, 비탈면보강등 현장 여건에 맞는 비탈면 안정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의건을 반영하여 주요 절·성토 구간 및 기타 인접 지역의 비탈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대상비탈면의 지반조건 및 지질구조를 고려하여 비탈면 안정해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탈면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p>▷경사지반 상에 위치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구간에서 옹벽 설치가 예상되는 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옹벽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수동 토압, 지진 시 동적토압 등 외력 산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옹벽의 사용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부등침하 또는 횡 방향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옹벽의 안정성 검토는 외적 안정성(활동, 전도, 지지력에 대한 안정)과 내적 안정성(옹벽의 파단파괴와 인발파괴에 대한 안정)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이 외에도 연속된 전체 비탈면 활동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 		
낙동강유역 환경청	<p><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p>▷사업지구는 해당 산지의 6부 능선 이상 지역을 개발하고 있어 주변의 도로와 주거지 등에서 조망에 따른 경관적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망점 2번을 제외하고는 조망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망점을 재검토하여야 함(내부조망점도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역 인근 조망점의 가시권분석 결과 지형적 차폐에 의해 대부분 조망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어 경관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내부조망점을 포함하여 조망점을 재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사업지구의 표고가 높은 곳에 계획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변으로의 가시영역을 분석하고, 그중에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개발로 인한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의 표고가 높은 곳에 계획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변으로의 가시영역을 분석하고, 그중에서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여 개발로 인한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경관 시뮬레이션은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고 경관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2차표 명시 및 지반고 표시). 조경수로 사업지구의 개발지역을 차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경수를 삭제하고 산지의 훼손과 시설물 입지에 따른 경관 영향을 예측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 시뮬레이션은 현실감과 스케일을 고려하고 경관변화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p>▷예측 결과를 토대로 표고가 높은 지역은 하향 배치하고 도로로 인한 산지 훼손을 저감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p> <p>※조망점 2번에서는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것으로 경관현황에 제시되어 있지만(241쪽), 경관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사업지구가 완전히 수목으로 인해 차폐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등 시뮬레이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p> <p>▷사업지구는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관 악영향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내 건축물의 높이를 2층이하로 계획하고, 표고가 높은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토굴형태의 지하주택으로 계획함으로써 인공건축물의 노출을 감소시켜 경관적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였음 - 또한 표고가 높은 지역에 계획된 도로의 경우 일반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로(카트도로) 개념의 도로로서 산지 훼손을 최소화 하며 도로변 식재를 통해 경관적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p>낙동강유역 환경청</p>	<p><수환경의 보전> - 침사지 설치계획 ▷침사지 설계 시 포착대상 입경, 침사지의 저감효율, 하류 하천의 부유토사 가중농도가 예측되지 않아 침사지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침사지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함 ◦ 사업대상 지역의 토양에 대한 입도분석 실시 ◦ 침사지 통과 후 유출수에 대한 부유토사 농도 저감효과 및 하류 하천 영향 예측 ◦ 침사지의 규모는 하류하천의 부유토사 농도를 고려하여 설계 ◦ 침사지의 저감효율이 낮을 경우 다단계 침사지 설치를 통해 효율 향상</p>	<p>- 사업지구는 산지가 대부분으로 시추조사 장비 진입이 가능한 2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업 승인후 별도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시설물 설치위치 등에 대해 추가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이 계획(재해영향평가 조건부 의견)되어 있으므로, 입도분석을 추가하여 입시침사지를 재 검토 하였음 - 침사지 통과 후 유출수에 대한 부유토사 농도 저감효과 및 하류 하천 영향 예측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침사지 규모를 설계하였으며 저감효율 및 토사발생량을 고려하여 TO-4침사지를 추가(다단)반영하였으며, SS-2 및 SS-3유역은 실제 개발지역이 작아 다단침사지는 계획하지 않았음</p>	반영
	<p>-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 ▷발생 오수 301.8m³/일을 건축물별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BOD 10mg/ℓ, SS 10mg/ℓ, T-P 2mg/ℓ로 처리 후 기존 구거로 방류할 계획임(277쪽) ▷하지만 사업지구 하류 하천의 수질이 Ia등급(매우 좋음)으로 매우 양호하므로(257쪽) 현재 오수처리수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BOD 항목 이외에도 난분해성 유기물질에 대한 기준인 COD(또는 TOC)와 농도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공법 관련 기술검증서를 제시하여 공법 선정 및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의 적정성 확보</p>	<p>- 발생 오수에 대해 오수처리수의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질에 대한 기준인 COD농도에 대하여 설정하겠음 - 환경부 오수처리시설 공법 관련 기술검증서를 제시하여 공법 선정 및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의 적정성 확보하겠음</p>	반영
	<p>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소음·진동> - 공사 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사업지구가 산지에 위치(27쪽)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부지정지 등을 위한 발파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발파를 시행할 경우 발파지역 주변의 정온시설을 대상으로 발파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정온시설별 환경 목표기준 설정 등)을 평가하여야 함 <온실가스> - 공사시,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고정연소보다 이동배출원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p>- 본 사업지역내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은 2층 이내의 건축물로 계획하였으며, 별도의 발파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공사시, 건설장비의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이동배출원의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산정하겠음</p>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기초부터 골재, 바닥 포장재, 마감재 등을 포함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제시하고, 산정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자재의 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2015.12)의 주요 건축자재 산정방법론을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축자재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며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종류가 누락됨이 없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용수 및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현장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용수 및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산정시 사용한 수목별 원단위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훼손수목량 산정시 흉고직경 6m, 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을 포함하고, 저장량과 흡수량 산정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행한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입분수확표를 활용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 저장량 및 흡수량 산정시 사용한 수목별 원단위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훼손수목량 산정시 흉고직경 6m, 수고 5m 이상의 수목들을 포함하고, 저장량과 흡수량 산정시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행한 임목재적·바이오매스 및 입분수확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산정시, 연료의 용도, 연료 종류의 선정 근거 등을 누락됨이 없도록 제시하고 배출활동의 종류에 맞는 산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용도_취사용, 냉난방용 등, 연료 종류_경유, 가스, 전력 등) - 온실가스 저감방안으로 투수성 포장, 빗물 이용시설(정원수, 청소용수)등 저영향개발(LID) 공법 도입,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 설치, 훼손수목 재식제 등을 검토하여야 함 <p>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계 설정 ▷사업지구의 경계가 일률적이지 않고 일부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주변 토지이용에 비효율적인 제한 요건 및 환경 양호 지역의 편입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지구 경계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식생 양호지역 및 급경사지 등은 제척하거나 보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2017년 협의)에서 사업지구는 생태적 연결성과 산림 또는 하천생태계(수변역) 훼손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산정시, 연료의 용도, 연료 종류의 선정 근거 등을 누락됨이 없도록 제시하고 배출활동의 종류에 맞는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수목중 수종이 우수한 수목을 우선 선정하여 재식제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의 구역경계 설정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식생 양호지역 및급경사지 등을 최대한 제척(10,043.2㎡→8,297.2㎡, 감1,746.0㎡)하거나 보전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음 - 또한 당초 식생 양호지역 및 급경사지 중첩지역에 계획되었던 관광휴양시설 용지(웰니스호텔 및 룬텀 케어단지(연립형))의 규모를 축소(44,951㎡→41,530㎡, 감3,421㎡)하는 등 지형 및 식생의 훼손을 감소시켜 산지 경관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 	부분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p>우려되거나 자연환경보전 및 복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며, 입지 대안검토 또는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p>		
	<p>- 원형보전 ▷사업지구 서측의 Block 3 구역(43쪽)은 국토환경성평가1등급이 대부분이며, 식생보전 III 등급이 50% 이상이며, 경사도 20° 이상의 급경사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Block 3구간으로 진입도로가 개설되면서 진입도로 북측의 표고가 낮은 지역은 14m의 옹벽이 발생하는 등 지형 훼손과 이에 따른 경관 영향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Block 3 구역은 원형으로 보전하고, 진입도로는 동측의 기존도로 혹은 농경지에 입지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	<p>- 해당지역의 지형훼손과 경관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웰니스호텔 부지를 축소(8,104㎡→7,364㎡, 감740㎡)하고, 도로의 경우 최대사면 발생구간(BLOCK-3 NO-13구간)의 패널식옹벽이 당초 18.5m 높이로 계획하였으나, 해당 구간의 도로를 피암터널로 변경하여 사면발생구간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음 - 또한 진입도로의 경우 기존도로가 주거지를 통과하고 있으며 경사가 높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지역 북측 중간~내대간 도로로 진입로를 연결함으로써 전라남도권 관광객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집입도로를 북측으로 계획하였음</p>	부분 반영
	<p>- Block 2 구역 ▷사업지구 중 Block 2구역(41쪽)은 대부분 대부분이 경사도 20° 이상의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표고가 높은 지역으로 여러 단으로 롱텀 케어단지(단독형)가 입지하면서 지형 및 식생 훼손에 따른 산지 경관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롱텀 케어단지(단독형) 2곳으로 인해 도로가 순환형으로 입지하면서 산지가 과도하게 훼손되고 있으므로, 표고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롱텀 케어단지(단독형) 2곳을 하향으로 입지를 변경하여 집단화하고, 도로는 순환형으로 하기보다는 도로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로체계 대안을 마련하여 환경적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 롱텀 케어단지(단독형)의 경우 토굴형태의 지하주택으로 계획함으로써 건축물 상부에 식재를 통해 지형 및 식생의 훼손을 감소시켜 산지 경관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였음</p>	부분 반영
	<p><인구·주거> - 이용객 추정에 근거한 계획규모 적정성 ▷계획규모는 이용객 추정치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불필요한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으로 인한 이용객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음 ▷따라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이용객을 추정하고, 추정된 이용객을 바탕으로 계획규모의 적정성을 평가·제시하여야 함 ◦ 하나의 방법론을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의 평균치 활용 ◦ 유사사례 분석 시 지역현황도 고려</p>	<p>- 시설물 계획을 재검토하여 롱텀 케어단지(단독형) 2곳을 삭제하고 당초 순환형으로 계획되었던 도로를 비순환형으로 변경하여 환경적 훼손을 최소화 하였음 - 해당의건을 반영하여 이용객을 추정하고, 추정된 이용객을 바탕으로 계획규모의 적정성을 평가·제시하였음 - 하나의 방법론을 활용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의 평균치 활용 - 유사사례 분석 시 지역현황도 고려 - 인근 지역의 관광지 이용객을 바탕으로 추정치의 현실성 진단 - 추정된 이용객 현황과 금액 제시된 계획규모 비교를 통해 규모 결정</p>	부분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낙동강유역 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지역의 관광지 이용객을 바탕으로 추정치의 현실성 진단 ◦ 추정된 이용객 현황과 금회 제시된 계획규모 비교를 통해 규모 결정 		
	<p>라.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대상지 주변 500m 이내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주요 습지 및 철새도래지 등이 포함될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광역조사에 사용되는 기존자료 및 문헌자료는 전국자연환경조사, EIASS, 겨울철 조류동시센서스의 최근 5년 이내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므로, 최근 배포된 전국자연환경조사(대성, 사리, 악양, 청암 도엽)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규정에 따라 사업지역 주변 500m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 광역조사는 최근 배포된 전국자연환경조사(대성, 사리, 악양, 청암 도엽) 자료를 포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국립제천 안전연구원	<p>[2019.9.3.최초협의]</p> <p><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행정절차도를 추가하고 「1.3.1」은 재해영향평가를 기준으로 본 사업에서 추진한 사항은 추진경위로, 추진할 사항은 추진계획으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행정절차도를 추가하였으며,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구분하였음 	반영
	<p><기초현황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기술을 지양하고, 협의를 위해 조사하고자 하는 기초현황을 지역적인 범위 및 기술적인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에 대한 내용을 지역적범위와 기술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중 배수계통도를 추가하고 <그림 2.2-1>과 <그림 2.2-2> 등에 우수흐름을 보다 상세히 제시 ※사업대상지 내외의 우수흐름 구분 및 횡배수유역에 대한 표시 필요 - 표고 및 경사분석 내용은 현 지침에 따라 「2.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로 이동하고 토양, 지질, 산사태 위험 등 기초현황조사 내용은 유역경계 범위에서 동일하게 수행 - 「2.4.2」 사면현황 조사에서는 34°를 초과하는 경사분석도를 추가하고 <그림 2.4-6> 산사태위험등급과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중 배수계통도를 추가하였으며, 우수흐름을 상세히 표기하였음 - 표고 및 경사분석을 2.2절로 이동하였음 - 토양, 지질, 산사태위험도 등 유역경계 범위로 표기하였음 - 34°를 초과 지역의 경사분석을 추가하였음 - 산사태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C등급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건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대상지의 지반상태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연약지반 및 침하 여부 등) 기술 ※ 「4장」에서 제시한 결과 이동 수록 - 재해발생 현황은 사업대상지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기술 - <표 2.7-2>는 현 지침에서 제시하는 범위의 시설을 모두 기재하고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의 배수로 등의 조사내용을 수록한 후 해당시설의 운영현황(노후화 및 작동상태 등) 제시 - 관계계획 조사는 사업대상지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고, 관련된 경우 연관성 분석 내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반관련 재해위험도 조사결과를 4장에서 2장으로 이동 수록함 - 재해발생 현황은 사업지구와 관련된 사항만 수록하였음 - 현 지침에서 제시하는 범위의 방재시설을 조사하였으며 시설의 상태 등을 수록하였음 - 관련내용만 수록하였으며, 연관성분석 내용을 추가하였음 	반영
	<p style="margin-left: 20px;"><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2-2>는 재해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근거로 내용을 수정하고 <그림 3.2-1>은 재해유형별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로 표시 ※사면재해의 경우 안정성 해석 범위와 더불어 대표단면을 선형으로 추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3.2-2>는 재해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근거로 수정함 - <그림 3.2-1>은 재해유형별 평가대상의 공간적 범위로 표시함 	반영
	<p style="margin-left: 20px;"><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4.1-1>과 <표 4.1-2>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해유형별 재해영향 유발요인과 평가방향으로 수정 - <표 4.2-17>은 토지이용별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대한 상세내용 추가 - <표 4.3-9> 토양침식 조절인자는 현 지침을 참고하여 수정하고 관련분석 재실시 - <표 4.4-3> 설계지반정수 설정에 대한 근거 제시 <p style="margin-left: 20px;"><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본 사업에서 요구되는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제시 (저감대책)사업으로 유발되는 방재측면의 재해영향을 직접 처리하는 계획 (저감방안)실시설계 중 방재측면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 - 재해저감 대책 및 방안은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내용을 토대로 재해유형, 개발 중·후의 위험요인을 종합하여 비교표로 제시 - 개발 중·후 각 지점별 위험요인 및 대책을 재해저감대책도(지도, A3 크기)에 표기하여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재해유형별 재해영향 유발요인과 평가방향으로 수정하였음 - 토지이용별 유출곡선지수 산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였음 - 토양침식 조절인자(VMI)값을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 재검토하였음 - 설계지반정수 설정 근거를 제시하였음 - 5장 도입부에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개발중·후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을 표로 제시하였음 - 개발중·후 재해저감대책을 위치를 표기하여 재해저감대책도에 제시하였음 	반영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국립재난 안전연구원	<p><내수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5.2-2> 가배수로 유속감쇠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과 위치를 본문 및 <그림 5.2-1>, <표 5.2-3>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배수로 유속감쇠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본문과 그림에 표기하였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설 배수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4장」에서 제시하고 문제점에 따른 신설 및 확장 대책을 「5장」에 검토내용으로 수록 ※<표 5.2-23>의 관로 유속에 대한 재검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설 배수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4장」에 제시하고, 「5장」에 신설 및 확장에 따른 통수능을 재검토하여 수록하였음 	반영
	<p><토사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7> 임시침사지 제원과 <표 5.2-13> 임시침사지점 저류지 제원은 현 지침에 따라 수정하고 토사조절부의 폭과 길이의 비(1:3)와 사면경사(1:2) 등 준수사항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7>, <표 5.2-13> 관련 제원은 현 지침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현장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폭과 길이의 비(1:2이상)와 사면경사(1:2)가 되도록 하였음. 다만 SS-1유역 임시침사지점 저류지는 공간이 작아 1:1.5로 계획하였으며, 사면보호 및 세굴방지를 위해 비닐 등으로 보강토록 제시함.(표고 및 횡단도 표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13> 임시침사지점 저류지의 유입 및 유출과 방류수로의 관계를 모식도(표고 등 포함)로 제시 <p><사면재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15> 사면 보호공 관련 내용은 저감방안으로 이동 수록 <p><유지관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본 사업에서 계획한 개발 중·후 저감시설 별 유지관리계획 기술 <p><부록내용 및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수정 - 프로그램 모의 입출력자료는 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여 첨부 <p><기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19.02. 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주요 검토의견을 보완 후 협의하되, 보고서 상의 오타자 수정,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에 대한 상세 근거, 개발 중·후의 위험요인 분석결과, 예상 재해에 대한 저감방안을 면밀히 분석 후 보고서에 반영 - 사업관련 요약본을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시 설명자료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5.2-15> 내용은 저감방안으로 이동 수록하였음 - 사업에서 계획한 개발 중·후 저감시설 별 유지관리계획 기술하였음 - 현 지침에 따라 평가대상자 등의 인적사항 수정하였음 - 프로그램 모의 입출력자료는 저장매체(CD 등)에 저장하였음 - 최근에 고시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19.02. 행정안전부)」에 부합되도록 보완하였으며, 재해영향 예측 및 세부평가내용을 수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사업관련 요약본 양식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활용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관련부서	검 토 의 견	조치결과 또는 계획	반영 여부
한국가스 안전공사	[2020.1.17.재협의] - 휴양체험지구 선정 구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건축물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용시설이 설치 될 것으로 보임	- 건축허가 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설치 등에 대해 협의 후 추진하겠음\	반영
	- 가스시설기준위원회에서 승인된 용기·소형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CODE FU431, FU432)을 준수하시기 바람	- 추후 사업시행 시 가스시설기준위원회에서 승인된 용기·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CODE FU431, FU432)을 준수하겠음	반영
	- 추후 완공 후, 시설을 사용하기 전 한국가스 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시설기준 적법유무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 추후 사업시행 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 검사를 신청하여 시설기준 적법유무를 확인 받겠음	반영
문화재청	[2020.1.17.재협의] - 지표조사 결과,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존대책은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청에 신고하여야 함 -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건과 관련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 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등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문화재청에 신고하겠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부지 및 인접 지역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음 -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발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반드시 반영하여 매장문화재의 사전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 경상남도 고시 제2023-116호

비관리청 항만개발공사 시행허가 고시

「항만법」 제9조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창원시 진해구청장
-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2. 항 만 명 : 진해항(속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 공사 명칭 : 속천항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 공사 장소 :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5번지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화장실 교체 1개소, 오수관로 설치 L=56m

5. 항만개발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52,330천원

7. 기타사항(귀속여부) : 비귀속, 투자비 미보전

8. 문의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56). 끝.

※ 관계도면은 경상남도 해양항만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3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등록변경(대표자 변경)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변경)	비고
40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거제시공공청사 403호	육근호	2000. 5. 16.	경제정의, 사회복지 및 사회개혁 실천 행정·의정감시 및 대안창출 등	055-637-9451	일자리 경제과	대표자 변경 (2023. 2. 28.)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35호

비관리청 향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승인) 공고

「향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향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공사의 명칭 : 속천항 전광판 설치사업

2. 공사시행사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창원시장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진해항(속천항)
- 공사의종류 : 건축, 전기 등

4. 공사 목적 및 개요

- 공사목적 : 항만이용자 및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사항 등 홍보 및 안내
(국가 비귀속 / 투자비 미보전)
- 공사 개요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11번지 일원
 - 사 업 비 : 금500,000천원
 - 공사내용 : 전광판 1식, 전기관 매설(전기인입) 55m 등

5. 공사기간

- 당초 : 2022.12. 9. ~ 2023. 3. 8.(착수일로부터 60일간)
- 변경 : 2022.12. 9. ~ 2023. 4.21.(중45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42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410번지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해당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유적명 (발굴허가번호)	유물명 및 수량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기관	보 관 처
김해 안하리 (1410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국비) (2022-1610)	병구연부편 등 18점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410	2022.11.15.-2023.2.1	(재)한국문화재 재단	(재)한국문화재 재단

- 제 출 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 055-211-4575~6/팩스 055-211-4559/담당자 이메일 : ksh7777@korea.kr)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현황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055)	주관과	등록구분 (신규, 변경)	회원수
228	(사)한국여성농업인 창원시연합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58, 4층	황순영	2002-02-14	여성농업인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265-5165	농업정책과	대표자변경 (2023.03.03.)	270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52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향 게시
4. **공고기간** : 2023. 3. 9.(목) ~ 2023. 3. 23.(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3. 4. 12.(수)까지
6. **과태료납부방법** :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등
 ※ 농협은행 289-01-007146(경남도세외수입)

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

연번	대상자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차량	체납액(원) (*23.3.3.기준)	압류예정 재산	반송사유
1	이*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북로1*번 나길 14, *01호	2022. 6. 22. 17:05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산리, 국도 79호선 상	폭 1.10미터 초과	부산99사75*6 인천85바70*4	1,054,000	자동차, 금융	폐문부재
2	박*진	충청북도 충주시 대림*길 4-1, *층	2022. 8. 23. 10:53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축하중 1.09톤 초과	충북80아66*3	521,000	자동차, 금융	폐문부재
3	유*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네고지*길 2	2022. 5. 26. 03:09분경	경상남도 창원군 부곡면 수다리, 지방도 1008호선 상	폭 1.8미터 초과	충북91아10*8	1,042,000	금융	주소불명

8. 안내사항

- 가. 상기 체납 과태료는 **2023. 3. 3.(금) 기준** 금액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2023. 4. 12.(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금융재산 등)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9. 과태료는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61호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공 고 명 :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9. ~ 2023. 3. 2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위 치	내용	점유면적	무단점유자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1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	약 700㎡	미상

4.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영장(별첨)

5. 공고 및 게시장소 : 공보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

6. 공고내용

- 2023년 3월 1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영장 통지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도 스스로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케 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과(☎055-211-3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023-561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2023년 1월 16일 제2023-72호 및 2023년 2월 15일 제2023-351호로 우리 도 유지 내 불법경작 및 무단점유물에 대해 2023년 3월 1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도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3. 3. 27. 09:00~ 2023. 3. 31. 18:00	경상남도청 회계과	재 산 활용 담당	강영란	300만원정도

2023년 3월 9일

경 상 남 도 지 사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신고 수리(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신고 수리(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공사의 명칭 : 속천항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2. 공사시행사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창원시 진해구청장
- 주 소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진해항(속천항)
- 공사의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 목적 및 개요

- 공사목적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를 통한 이용객 불편 해소
(국가 비귀속 / 투자비 미보전)
- 공사 개요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대죽동 45번지 일원
 - 사 업 비 : 금52,330천원
 - 공사내용 : 화장실 교체 1개소, 오수관로 설치 L=56m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055-211-39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3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4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일본상륙행렬도판공병」의 지정 해제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동 문화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해제예고** : 경상남도 공보
2. **예고내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일본상륙행렬도판공병」 지정 해제 예고(조서 별지 참조)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의견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5. **연 락 처**
 - 경상남도 문화유산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전화 055-211-4575~4576 팩스 055-211-4559)
 - 밀양시 문화예술과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전화 055-359-5638 팩스 055-359-5737)
6. **기타 사항**
 - 의견제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의견, 신청자의 주소 및 연락처, 성명과 당해 문화재의 명칭 및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 붙임** 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조서 1부
 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사유 1부

1.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조서

종별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보관장소)	비고
유형문화재	밀양 표충사 사명대사 일본상륙행렬도팔곡병	1점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1338	지정 해제 예고

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해제 예고 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소장 <사명대사 일본상륙행렬도팔곡병>은 임진왜란 이후 사명당이 강화사(講和使)로 일본에 상륙하여 행렬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전해지면서 1990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진행된 연구에 의해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모방한 1972년 작품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대한 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청문대상 및 내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1	고려수지요법봉사회	박수지	김해시 가락로 49번길 1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사랑방봉사회	박옥자	창원시 북면 마산리 1248	"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연번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3	서로돕기협의회	정학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17길26	"	"
4	대한민국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경남지부	윤봉조	창녕군 창녕읍 술장리 143-4	"	"
5	경상남도6.25전몰군경유자녀회	차중문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48, 508호	"	"
6	사단법인3.1동지회 김해시지부	김병오	김해시 구산동 1050-5 보훈회관	"	"
7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경남지부	정정일	사천시 선구동 18-130	"	"

2. 청문장소 : 경남도청 청문상담실(본관 3층, 법무담당관실 옆)

3. 청문일시 : 2023. 3. 27.(월) 14:00

4. 유의사항

- 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

- 가.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나. 전 화 : 055-211-4863
- 다. E-mail : kimrh@korea.kr

붙임 의견제출서 1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 신규등록현황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 고
905	행촌서예 진흥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52, 3층	허경무	2023.3.3.	가. 서예 공모전 및 휘호대회 나. 서예 서체 교육 및 초대전, 교류전 개최 다. 문화와 관련 자료발간 및 학술 연구 라.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055-672-0221	문화예술과	신규 등록	

알 림

● 창원시 고시 제2023-41호

**창원도시관리계획(석교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5-128호(2005.05.02.)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0-341호 (2020.12.10.)로 실시계획 고시 되었으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어 당초 실시계획 고시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실시계획을 재작성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귀산동 노외주차장 164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1. 실시계획 작성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61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창원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164)사업
 - 명 칭 : 귀산동 노외주차장 164 조성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626㎡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성산구 경제교통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 붙임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성산구 귀산동	611-4	답	149	149	창원시					
2	성산구 귀산동	612	답	71	15	창원시					
3	성산구 귀산동	612-3	답	456	450	창원시					
4	성산구 귀산동	650	구	144	8	국토교통부					
5	성산구 귀산동	650-4	구	4	4	창원시					
합 계		5필지		824	626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106	석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성산구 귀산동 610 일원	46,384	-	46,384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46,384	-	46,38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46,384	-	46,384	100.0	

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 **변경**

(1) 도시기반시설 총괄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계	7,535	증) 16	7,551	100.0	100.0	
도 로	6,925	-	6,925	91.9	91.7	
주 차 장	610	증) 16	626	8.1	8.3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2) 도로 : **변경없음**

○ 도로 계획 총괄조서

구 분	노선수	연 장(m)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	1,016	-	1,016	6,925	-	6,925	
소로2류	1	418	-	418	3,318	-	3,318	
소로3류	2	598	-	598	3,607	-	3,60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340	8	국지 도로	418	성산구 귀산동 597-26	성산구 귀산동 627-3	일반 도로	창원시고시 제2013-267호 (2013.11.01.)	구역외 773m ²
기정	소로	3	124	6	국지 도로	242	성산구 소로1-89	성산구 소로2-340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5-128호 (2005.05.02)	
기정	소로	3	123	6	국지 도로	356	성산구 소로2-340	성산구 소로2-340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5-128호 (2005.05.02)	

(3) 주차장 : **변경**

○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64	노외주차장	창원시 귀산동 611번지 일원	610	중) 16	626	경상남도고시 제2005-128호 (2005.05.02)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4	노외주차장	○ 면적 : 610m ² → 626m ² (중 16m²)	○ 주차구역 확장 및 현황도로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가능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제13호의 운동시설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최고 4층 이하	

3. 관계도서 :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45) 비치]

● **창원시 고시 제2023-42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2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진해시 고시 제1992-223호(1992.10.22.)로 최초 결정, 창원시 고시 제2020-126호(2020.06.04.)로 실시 계획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63호(2021.03.15.)호로 변경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2호선)사업의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작성된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 진입도로(소로3-252호선)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소사동 48-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2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소사동 김달진 문학관 진입도로(소로3-252호선)개설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면 적 : 기정 702㎡, 변경 705.4㎡
 - 규 모 : 기정 L=110m, B=6m, 변경 L=111m, B=6m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진해구 안전건설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 5. 사업기간 :** 2020. 6. 4.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변경) :** 불임참고
- 7. 관계도서 :**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비치)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8. 변경사유 : 도로선형 변경 및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변경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소사동	48-10	도	33.6	15	창원시					
		48-15	도	14.7	14.7	창원시					
2		48-5	대	412.0	18	김*홍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2** , 1**호				
		48-14	대	27.7	27.7	김*홍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2** , 1**호	용동농업 협동조합	진해구 마천동 95-34	근저당권	
3		48-4	도	76.0	76	조*주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2*				79/2079
	창원시								2000/2079		
		48-12	도	60.2	60.2	창원시					
4		48	대	1,523.6	16	창원시					
		48	대	1,523.6	0	창원시					
5		49-2	대	150.1	28	김*철	부산 사상구 엄궁동 2**-1*				
		49-3	대	56.3	56.3	창원시					
6		207-23	도	5,520.0	176	국(건설부)					
		207-32	도	20	20	국(건설부)					
		207-34	도	191	191	국(건설부)					
7		48-2	대	115.8	56	김*철	부산 사상구 엄궁동 2**-1*				
		48-11	대	30	30	창원시					
8		148-17	답	238.0	56	조*식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				
		148-45	답	42.4	42.4	창원시					
9		148-18	대	912.3	45	조*식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				
		148-46	대	55.1	55.1	창원시					
10		148-16	대	352.3	17	조*권	소사동 1**-1*				
		148-16	대	352.3	0	조*권	소사동 1**-1*				
11		148-19	전	278.0	52	조*권	소사동 1**-1*				
		148-47	전	63.1	63.1	창원시					
12		148-20	대	266.5	3	김*동	소사동 1**				
		148-48	대	6.5	6.5	김*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가계길 21-3*				1/4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숙	경남 통영시 산양읍 척포길 156-*				1/4	
						김*도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52, 50*동 120*호 (월영동, 현*아파트)				1/4	
						김*한	경남 통영시 데매4길 45, *동 60*호(도남동, 세*아파트)				1/4	
13		148-9	대	536.7	41	김*재	진주시 금산면 덕의길 1*, 10*동 3**호(진주푸르지오)					1/8
						김*홍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 4**호(내동, 내동삼기아파트)					1/8
						주*입	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6** 호성동진흥더블파크3단지 아파트 3**~10**					1/8
						주*슬	김해시 장유면 능동로 1**, 4**동 1**호 (석봉마을 부영아파트)					1/8
						주*입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김5*번길 3*(도계동)					1/8
						주*연	창원시 진해구 석동 4**~1*					1/8
						주*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 성내동삼성아파트 2**~2**					1/8
						주*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번길 5*, 7**동 7**호 (천천동, 비단마을베스타운)					1/8
							148-42	대	32.2	32.2	창원시	
14	148-4	답	1,829.8	62	서*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5**번길 2*, 1**호(태백동, 성화빌라)					1/2	
					이*녕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5**번길 2*, 1**호(태백동, 성화빌라)					1/2	
	148-40	답	63.9	63.9	창원시							
15	148-11	답	60.0	29	나*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 3**동 6**호 (우동 대우마리나)						
	148-43	답	27.4	27.4	창원시							
16	148-30	답	282.0	3	나*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 3**동 6**호 (우동 대우마리나)						
	148-49	답	5.3	5.3	창원시							
17	59-56	답	21.0	2	국 (기획재정부)							
	59-56	답	21.0	0	국 (기획재정부)							
18	148-2	도	372.1	7	국 (기획재정부)							
	148-39	도	9.6	9.6	국 (기획재정부)							
합 계				12,979.8	702							
합 계				705.4	705.4							

● **창원시 고시 제2023-43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6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2-97호(2022.05.13.)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6호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36호선)사업
- 사업의 명칭 : 웅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A=36,670㎡
- 규 모 : L=740m, B=27.5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개발지원과)
- 주 소 : 창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 불임

7. 관계도서: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45) 비치]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	진해구 채덕동	328-3	도	383.0	53.0	국	해양수산부				
2	"	328-2	도	69.0	14.0	국	해양수산부				
3	"	329-24	도	164.0	42.0	국	해양수산부				
4	"	329-4	도	476.0	402.0	국	국토교통부				
5	"	323-1	도	3.0	2.0	국	해양수산부				
6	"	329-20	도	92.0	51.0	국	해양수산부				
7	"	329-21	도	96.0	54.0	국	해양수산부				
8	"	329-22	도	9.0	1.0	국	해양수산부				
9	"	322-4	도	34.0	20.0	국	해양수산부				
10	"	322-2	도	129.0	111.0	국	해양수산부				
11	"	322-8	도	40.0	40.0	국	해양수산부				
12	"	322-5	도	114.0	11.0	국	해양수산부				
13	"	322-10	도	24.0	11.0	국	해양수산부				
14	"	329-25	도	372.0	24.0	국	국토교통부				
15	"	316-11	도	343.0	108.0	국	해양수산부				
16	"	329-37	도	158.0	158.0	국	해양수산부				
17	"	334-1	전	97.0	21.0	국	해양수산부				
18	"	334	도	210.0	208.0	국	해양수산부				
19	"	829-9	도	295.0	295.0	국	국토교통부				
20	"	316-10	도	52.0	6.0	국	해양수산부				
21	"	312-5	도	39.0	39.0	국	국토교통부				
22	"	316-7	도	473.0	159.0	국	해양수산부				
23	"	335-2	도	202.0	168.0	국	해양수산부				
24	"	336-1	도	109.0	109.0	국	해양수산부				
25	"	312-1	도	248.0	248.0	국	해양수산부				
26	"	312-3	도	259.0	95.0	국	해양수산부				
27	"	311-4	도	280.0	39.0	국	해양수산부				
28	"	311-5	도	142.0	142.0	국	해양수산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29	"	311-2	도	344.0	305.0	국	해양수산부				
30	"	310-2	도	2.0	2.0	국	해양수산부				
31	"	829-10	도	99.0	99.0	국	국토교통부				
32	"	310-4	도	232.0	232.0	국	해양수산부				
33	"	309-1	도	73.0	73.0	국	해양수산부				
34	"	309-2	도	40.0	40.0	국	해양수산부				
35	"	308-3	전	86.0	86.0	국	국토교통부				
36	"	308-4	도	175.0	175.0	국	국토교통부				
37	"	307-2	도	198.0	198.0	국	해양수산부				
38	"	307-4	도	300.0	200.0	국	해양수산부				
39	"	283-4	전	29.0	29.0	국	해양수산부				
40	"	308-2	도	66.0	66.0	국	해양수산부				
41	"	307-1	전	1,075.0	120.0	강*관	진해시 제덕동 ***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 **번안길*(제덕동)	근저당권	
42	"	307-5	도	90.0	90.0	국	해양수산부				
43	"	307-3	묘	412.0	382.0	강*옥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 비사벌아파트 ***-****				
						강*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민동 ***-** 엑스포아파트***-***				
						강*관	진해시 제덕동***-*				
44	"	306	묘	291.0	13.0	이*화	성내리 ***				
45	"	283-3	전	45.0	45.0	국	해양수산부				
46	"	285	전	1,017.0	598.0	김*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 ***동***호 (자은동,더#아파트)				
						김*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 ***동***호 (자은동,더샵아파트)				
						김*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번길 ***호 (대연동,동원듀크)				
						김*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홍길 **-** ***호(반포동)				
47	"	285-1	도	170.0	170.0	국	해양수산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48	"	287	묘	782.0	42.0	강*찬	성내리 ***				
49	"	286-1	전	195.0	46.0	김*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 ***동***호 (자은동, 대#아파트)				
						김*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 ***동***호 (자은동, 대#아파트)				
						김*민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번길 ***호 (대연동, 동원듀크)				
						김*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홍길 **-** ***호(반포동)				
50	"	272-4	도	24.0	24.0	국	해양수산부				
51	"	272-1	답	314.0	48.0	이*복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로 ***, **동 ***호(남문동, 남문시티 프라디움*차이파트)	웅천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압류	
52	"	275-1	도	3.0	3.0	국	국토교통부				
53	"	246-1	도	587.0	434.0	국	해양수산부				
54	"	246-9	도	215.0	215.0	국	해양수산부				
55	"	246-8	도	7.0	7.0	국	해양수산부				
56	"	246-7	답	254.0	254.0	국	해양수산부				
57	"	273-1	도	138.0	23.0	국	해양수산부				
58	"	246-4	답	89.0	89.0	국	해양수산부				
59	"	247-4	도	815.0	666.0	국	해양수산부				
60	"	247-1	답	151.0	151.0	국	해양수산부				
61	"	247-2	답	119.0	119.0	박*경	경남김해시변화*로 **, ***동***호(삼문동, 젤미마을부영아파트)	장유농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번길* (무계동)(삼문지점)	근저당권	
62	"	272-5	도	307.0	78.0	국	해양수산부				
63	"	248	도	132.0	121.0	국	해양수산부				
64	"	222-3	도	109.0	109.0	국	해양수산부				
65	"	217-2	전	174.0	77.0	국	해양수산부				
66	"	222-1	전	139.0	139.0	국	해양수산부				
67	"	217-3	전	386.0	293.0	국	해양수산부				
68	"	217-4	도	759.0	729.0	국	해양수산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69	"	217-1	전	116.0	116.0	국	해양수산부				
70	"	253-2	전	201.0	47.0	국	해양수산부				
71	"	253-1	도	100.0	100.0	국	해양수산부				
72	"	216-3	도	2.0	2.0	국	해양수산부				
73	"	218-2	도	23.0	23.0	국	해양수산부				
74	"	216-1	전	334.0	74.0	공	경상남도				
75	"	215	도	6.0	6.0	국	해양수산부				
76	"	215-1	묘	70.0	70.0	국	해양수산부				
77	"	214-2	도	978.0	2.0	국	해양수산부				
78	"	216-2	도	223.0	223.0	국	해양수산부				
79	"	216-4	도	671.0	671.0	국	해양수산부				
80	"	214-1	도	533.0	220.0	국	해양수산부				
81	"	207	전	2,548.0	1,001.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82	"	204-1	도	311.0	311.0	국	해양수산부				
83	"	206-2	묘	516.0	159.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84	"	205	도	99.0	99.0	국	해양수산부				
85	"	147-3	전	644.0	286.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86	"	146-2	도	249.0	238.0	국	해양수산부				
87	"	146-1	도	44.0	44.0	국	해양수산부				
88	"	829-41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89	"	146	전	259.0	7.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90	"	145-1	도	16.0	16.0	국	해양수산부				
91	"	145	전	407.0	9.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92	"	829-42	도	263.0	9.0	국	국토교통부				
93	"	151-1	묘	20.0	20.0	국	해양수산부				
94	"	152-1	도	29.0	29.0	국	해양수산부				
95	"	152-4	전	122.0	116.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96	"	152	전	99.0	99.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97	"	153-3	전	1,054.0	162.0	공	경상남도				
98	"	152-3	전	6.0	6.0	공	창원시				
99	"	153	전	75.0	75.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100	"	153-2	전	41.0	41.0	공	창원시				
101	"	154	답	454.0	22.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102	"	155-3	답	280.0	280.0	공	창원시				
103	"	154-1	답	419.0	71.0	공	창원시				
104	"	155-5	답	114.0	60.0	공	창원시				
105	"	155-4	답	21.0	17.0	공	경상남도				
106	"	156-3	답	667.0	78.0	공	경상남도				
107	"	156	답	1,089.0	264.0	입*인	서울시강남구언주로 ***, ***동***호 (개포동,현대아파트)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동***호 (개포동,현대아파트)				
						입*인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번길 **-* (서대신동*가)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길 **, ***동***호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08	"	158	답	572.0	481.0	김*란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 ***동* ***호(자은동, 자은중흥에스-클라스)				
109	"	329-18	도	95.0	30.0	국	해양수산부				
110	"	329-9	도	32.0	24.0	국	해양수산부				
111	"	404-2	묘	241.0	217.0	서*수	경남김해시삼계동 ***-* 분성마을현대아이아파트 ***동***호				
112	"	346-1	묘	59.0	59.0	강*욱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 국제마미아파트 ***호	㈜부일상호 신용금고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	근저당권	
113	"	348-2	임	311.0	4.0	국	기획재정부				
114	"	347-1	임	582.0	367.0	홍*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화로**번길 **-(경화동)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15	"	829-31	도	41.0	41.0	국	국토교통부				
116	"	322-9	도	11.0	4.0	국	해양수산부				
117	"	329-13	전	78.0	67.0	공	경상남도				
118	"	333-1	임	21.0	21.0	경상남도 개발공사	경남 창원시 용호동 *-*				
119	"	347-2	임	258.0	258.0	김*욱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				
120	"	329-38	도	91.0	62.0	국	해양수산부				
121	"	331	전	9.0	9.0	서*홍	경상남도 진해시 제덕동 ***-***				
						서*홍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번길 *(용원동)				
122	"	333	임	62.0	62.0	주*현	강원도 동해시 청운*길 **동****호 (동회동, 대동아파트)				
123	"	329-23	도	14.0	14.0	국	해양수산부				
124	"	346	대	827.0	745.0	서*교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 **번길 *(봉곡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웅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반곡동,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로**번길*(성내동)	압류 근저당권	
125	"	329-36	도	350.0	350.0	국	국토교통부				
126	"	349	임	562.0	209.0	배*애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번길 ***-(아동)				
127	"	329-6	도	63.0	63.0	국	국토교통부				
128	"	829-19	도	301.0	301.0	국	국토교통부				
129	"	329-7	도	34.0	34.0	국	해양수산부				
130	"	316-6	도	37.0	37.0	국	해양수산부				
131	"	345-2	대	66.0	66.0	유*여	경남 김해시 호계로 ***번길 ***-(서상동)				
132	"	345-3	대	284.0	276.0	유*여	경남 김해시 호계로 ***번길 ***-(서상동)				
133	"	344-3	대	248.0	105.0	강*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 ***동****호 (풍호동, 한림리츠빌아파트)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구*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동***호 (가음동, 창원센텀푸르지오)					
						문*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 (자은동)					
						박*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경화동)	경남동부신 융협동조합	경남창원시진해구동진로** *번길*(덕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백*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번길 ****호 (이동, 대창빌라)					
						송*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신*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 (자은동)					
						이*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번길 *,**호(이동, 대창빌라)					
						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이*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임*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동 ***호(자은동,더샵아파트)					
						장*지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길 **,***동 ***호(고현동, 고려*차아파트)					
						전*정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함의로 *,***호(기공아파트)					
						정*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번길 **,*호(이동)					
						정*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명동)					
						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최*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경화동)					
						하*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홍*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동***호 (가음동, 창원센텀푸르지오)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34	"	344-1	대	268.0	267.0	유*여	경남 김해시 호계로 ***번길 **-(서상동)						
135	"	337	전	4,003.0	500.0	강*정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 ** ***동***호 (풍호동, 한림리츠빌아파트)						
						구*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동***호 (가음동, 창원센텀푸르지오)						
						문*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박*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경화동)	경남동부신 용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번길*(덕산동)	근저당권, 지상권			
						백*흠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번길 ****호(이동,대창빌라)						
						송*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신*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 (자은동)						
						이*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 *번길 ****호(이동,대창빌라)						
						이*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이*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임*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번길 ***동 ***호(자은동,더샵아파트)						
						장*지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길 **, ***동***호 (고현동,고려*차아파트)						
						전*정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함의로 ****호 (기공아파트)						
						정*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번길 **,****호(이동)						
						정*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명동)						
진*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최*숙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번길 **-(경화동)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하*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번길 ***(자은동)					
						홍*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로 **, ***동 ***호 (가음동, 창원센텀푸르지오)					
136	"	829-20	도	248.0	248.0	국	국토교통부					
137	"	338	답	357.0	296.0	김*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동***호 (제덕동,우암빌라)					
						이*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 *동 ***호(제덕동,우암빌라)					
138	"	336-3	도	79.0	79.0	국	해양수산부					
139	"	339	답	645.0	108.0	김*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 *동 ***호(제덕동,우암빌라)					
						이*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동 ***호(제덕동,우암빌라)					
140	"	311-1	답	7.0	7.0	국	해양수산부					
141	"	310-1	답	16.0	16.0	국	해양수산부					
142	"	340-4	잡	1,831.0	785.0	강*관	제덕동 ***-* 우암빌라 *동***호					
143	"	340-1	답	18.0	18.0	국	해양수산부					
144	"	308-1	전	17.0	17.0	국	해양수산부					
145	"	340-3	대	760.0	473.0	강*관	제덕동 ***-* 우암빌라 *동***호					
146	"	829-16	도	222.0	222.0	국	국토교통부					
147	"	282	전	49.0	49.0	이*수	이동 ***-*					
148	"	283-1	전	506.0	506.0	이*수	이동 ***-*					
149	"	283-8	도	178.0	178.0	국	해양수산부					
150	"	283-2	도	198.0	198.0	국	해양수산부					
151	"	283-5	도	286.0	275.0	국	국토교통부					
152	"	280-5	도	48.0	48.0	국	해양수산부					
153	"	284	도	159.0	159.0	국	해양수산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54	"	246-2	도	6.0	6.0	공	창원시				
155	"	279	묘	169.0	53.0	김*열	부산 소하면 부민동				
156	"	280-2	도	251.0	251.0	국	해양수산부				
157	"	246-6	도	953.0	953.0	국	해양수산부				
158	"	280-4	도	126.0	126.0	국	해양수산부				
159	"	278-1	전	417.0	377.0	최*호	마산시 양덕동 ***-*, 서안양덕타운 ****호				
160	"	278-4	도	417.0	417.0	국	해양수산부				
161	"	277	전	108.0	7.0	최*호	경남 마산시 양덕동 ***-* 서안양덕타운 ****호				
162	"	278-3	대	111.0	111.0	최*호	마산시양덕동 ***-*, 서안양덕타운 ****호				
163	"	276	전	539.0	129.0	최*호	마산시양덕동 ***-*, 서안양덕타운 ****호				
164	"	275-4	도	312.0	312.0	국	해양수산부				
165	"	275-3	답	1,711.0	1,170.0	이*구	제덕동 ****-*				
166	"	245-4	도	87.0	87.0	국	해양수산부				
167	"	245-5	도	27.0	27.0	국	해양수산부				
168	"	246-5	답	17.0	17.0	국	해양수산부				
169	"	243	대	278.0	4.0	이상주	****-*				
170	"	246-3	대	967.0	949.0	정*택	제덕동 ***-* 우암빌라1-***	웅천농업협 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이*수	제덕동 ***-*				
						김*옥	제덕동 ***-* 우암빌라1-***	(주)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석전동)(진해지점)	근저당권	
						이*호	제덕동 ***-* 우암빌라1-***	진해수산업 협동조합	진해시여좌동 ***-*	근저당권	
						김*자	제덕동 ***-* 우암빌라1-***	진해수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 (대중동) (중부지점)	근저당권	
						박*미	제덕동 ***-* 우암빌라1-***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박*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번길 **	창원시축산 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번길** (중동)(진해지점)	근저당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강*관	제덕동 ***- 우암빌라2-***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정*희	제덕동 ***- 우암빌라2-***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정*자	제덕동 ***- 우암빌라2-***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임*기	제덕동 ***- 우암빌라2-***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박*현	제덕동 ***- 우암빌라2-***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남문지점)	근저당권	
						천*우	진해시 용원동 ****현대A ***-****				
						천*우	진해시 용원동 ****현대A ***-****				
						윤*순	제덕동 ***- 우암빌라3-***				
						김*실	제덕동 ***- 우암빌라3-***				
						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남2길 **-*(산호동)	창원시축산 업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번길**(중동) (산호지점)		
						민*호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김*현	제덕동 ***- 우암빌라4-***	웅천농업 협동조합	창원시 진해구 웅천중**번길* (성내동)(죽곡지점)	근저당권	
171	"	245-3	답	925.0	769.0	이*구	제덕동 ***-*				
172	"	245-2	도	349.0	346.0	공	창원시				
173	"	223-2	도	539.0	39.0	공	창원시				
174	"	223-1	대	99.0	1.0	한*연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길 **,***(논현동)				
175	"	222	전	1,133.0	1,052.0	이*구	제덕동 ***-*				
176	"	221	대	119.0	17.0	이*구	제덕동 ***-*				
177	"	220-1	대	207.0	47.0	이*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번길 **-*(제덕동)				
178	"	218	전	529.0	424.0	박*희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 ***동***호 (명륜동, 명륜쌍용예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179	"	216-5	도	439.0	439.0	국	해양수산부				
180	"	216	전	27.0	27.0	국	해양수산부				
181	"	206-3	도	60.0	60.0	국	해양수산부				
182	"	203-2	도	421.0	313.0	국	해양수산부				
183	"	203-4	대	1,186.0	26.0	문*식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로*로 ***,***동 ***호(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차)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을지로 *가)(동래지점)	근저당권	
184	"	204	도	816.0	816.0	국	해양수산부				
185	"	203-6	도	2.0	2.0	문*식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로*로 ***,***동 ***호(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차)				
186	"	203-3	도	113.0	104.0	국	해양수산부				
187	"	147-2	도	112.0	112.0	국	해양수산부				
188	"	147	전	84.0	84.0	공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청				
189	"	148	전	360.0	3.0	김*옥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동***호 (제덕동, 우암빌라)				
						이*영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덕로*** 번길 **동***호 (제덕동, 우암빌라)				
190	"	148-1	도	430.0	412.0	국	해양수산부				
191	"	829-13	도	128.0	123.0	국	국토교통부				
192	"	151	도	545.0	545.0	국	해양수산부				
193	"	150-1	도	263.0	240.0	국	해양수산부				
194	"	150	대	1,277.0	77.0	권*철	청안동 *** 풍림아파트 상가동 ***호				
195	"	152-2	도	194.0	194.0	국	해양수산부				
196	"	155-2	답	22.0	4.0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길 **, 에이동***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동***호 (개포동, 현대아파트)				
						임*인	부산광역시 서구 서약로 ***번길 *-(서대신동*가)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동***호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97	"	159	답	174.0	1.0	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에이동***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동***호 (개포동, 현대아파트)				
						입*인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번길 **-* (서대신동*가)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동***호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98	"	155-1	도	332.0	332.0	국	해양수산부				
199	"	153-1	도	27.0	27.0	국	해양수산부				
200	"	159-1	도	357.0	341.0	국	해양수산부				
201	"	160-3	도	198.0	181.0	국	해양수산부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에이동***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동***호 (개포동, 현대아파트)				
						입*인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번길 **-* (서대신동*가)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동***호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202	"	155	답	497.0	495.0						
203	"	159-3	도	154.0	154.0	국	해양수산부				
204	"	160-4	답	6.0	6.0	송*경	경남창원시진해구안골로 ***동***호 (용원동, 코아루아파트)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길 **, 에이동***호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동***호 (개포동, 현대아파트)				
						입*인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번길 **-* (서대신동*가)				
						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길 **, ***동***호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205	"	159-2	답	416.0	416.0						
206	"	161-6	답	573.0	427.0	국	국토교통부				
207	"	161-5	답	85.0	85.0	국	해양수산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 리	
208	"	158-3	답	315.0	247.0	국	국토교통부				
합 계				63,648	36,670						

● 창원시 고시 제2023-44호

창원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창원시 진해구 현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69,510,000.0	-	969,510,000.0	100.0	-	
소 계	61,427,968.7	-	61,427,968.7	6.3	-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8,042,556.0	-	8,042,556.0	0.8	-
	제2종전용주거지역	3,356,033.6	-	3,356,033.6	0.3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12,032.5	-	14,112,032.5	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24,735,426.7	-	24,735,426.7	2.6	-
	제3종일반주거지역	8,236,474.9	-	8,236,474.9	0.8	-
	준주거지역	2,945,445.0	-	2,945,445.0	0.3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업 지역	소 계	10,467,426.0	-	10,467,426.0	1.1	-
	중심상업지역	1,218,627.0	-	1,218,627.0	0.1	-
	일반상업지역	8,128,886.0	-	8,128,886.0	0.8	-
	근린상업지역	263,347.0	-	263,347.0	0.0	-
	유통상업지역	856,566.0	-	856,566.0	0.1	-
공업 지역	소 계	46,780,689.6	-	46,780,689.6	4.8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38,454,385.7	-	38,454,385.7	4.0	-
	준공업지역	8,326,303.9	-	8,326,303.9	0.9	-
녹지 지역	소 계	356,633,685.4	9,840	356,643,525.4	36.8	-
	보전녹지지역	14,666,149.0	-	14,666,149.0	1.5	-
	생산녹지지역	4,901,895.0	-	4,901,895.0	0.5	-
	자연녹지지역	337,065,641.4	9,840	337,075,481.4	34.8	-
관리 지역	소 계	96,734,820.7	-	96,734,820.7	10.0	-
	보전관리지역	32,116,971.0	-	32,116,971.0	3.3	-
	생산관리지역	21,959,112.7	-	21,959,112.7	2.3	-
	계획관리지역	42,658,737.0	-	42,658,737.0	4.4	-
농 립 지 역		172,034,278.3	-	172,034,278.3	17.7	-
자연환경보전지역		105,407,918.0	-	105,407,918.0	10.9	-
미 지 정		120,023,213.3	감) 9,840	120,013,373.3	12.4	-

※ 기 정 : 창원시 고시 제2022-152호, 창원시 고시 제2022-176호, 창원시 고시 제2022-18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55호, 창원시 고시 제2022-256호, 창원시 고시 제2023-20호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세부조사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연녹지지역	-	9,840	9,840	100.0	
미지정	9,840	감) 9,840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창원시 진해구 현동 72-3번지 전면해상 일원 (진해기지사령부 내)	미지정	자연녹지지역	9,840	100% 이하	진해기지사령부 내 군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

2. 관련도면 : 실음생략(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고시 제2023-45호**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부산항건설사무소 고시 제2023-1호(2023.2.14.)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변경)된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0	항만	무역항	창원시 경상남도 진해구 안골동 옥망산 일원	-	522,103	522,103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 제2023-1호(2023.2.14.)	

나.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0	항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 신설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옥망산 일원 - 면적 : 522,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신항 북·권'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 신설

2. 지형도면 : 실음생략(창원시 도시계획과에 비치)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도시계획과(☎055-225-41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공고 제2023-458호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78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창원시 고시 제2020-379호(2020.12.31.)로 최초 결정되고, 창원시 고시 제2021-190호(2021.07.27.)로 실시계획 고시, 창원시 고시 제2021-315호(2021.12.02.)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78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창 원 시 장

1. 공사완료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78호선)사업

- 명 칭 : 북면 감계리 도시계획도로(소로3-478호선)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114.3㎡

- 규 모 : L=28.5m, B=4.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 주 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용호동)

마. 사업기간 : 2021. 07. 29. ~ 2022. 12. 31. (*공사완료일 : 2021.11.30.)

2.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055-225-4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 고시 제2023-47호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12호(1979.11.22.)로 시설 결정된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진 주 시 장

1. 진주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학교	대학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가좌동 900번지 일원	1,037,236	-	1,037,236	1979.11.22. (경고 제212호)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조서(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037,236.00	-	1,037,236	100.00		
교사 시설 용지	소계	661,883.00	증) 3,245.00	665,128	64.13	
	교육기본시설	368,907.70	증) 0.30	368,908	35.57	
	지원시설	118,714.26	감) 0.26	118,714	11.45	
	연구시설	26,267.06	증) 699.94	26,967	2.60	
	부속시설	147,993.98	증) 2,545.02	150,539	14.51	
운동시설용지	60,562.00	감) 2,545.00	58,017	5.59		
도로용지	90,854.00	-	90,854	8.76		
광장용지	17,437.00	-	17,437	1.68		
하천용지	43,346.00	-	43,346	4.18		
녹지용지	163,154.00	감) 700.00	162,454	15.66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토지이용계획 세부조사

- 교사시설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계			661,883.00	증) 3,245.00	665,128	
교육기본시설	101	인문사회1호관	10,744.31	감) 0.31	10,744	
	102	인문사회2호관	3,868.16	감) 0.16	3,868	
	151	사회과학관	4,237.17	감) 0.17	4,237	
	103	인문사회4호관	3,354.67	증) 0.33	3,355	
	201	경영학관	7,313.15	감) 0.15	7,313	
	251	법학관	4,438.31	감) 0.31	4,438	
	451	농생1호관	17,974.60	증) 0.40	17,975	
	452	농생2호관	8,762.13	감) 0.13	8,762	
	453	농생3호관	4,952.88	증) 0.12	4,953	
	454	농생4호관	5,146.06	감) 0.06	5,146	
	455	농생5호관	5,258.94	증) 0.06	5,259	
	456	농생6호관	8,456.20	감) 0.20	8,456	
	457	농생7호관	1,775.09	감) 0.09	1,775	
	458	농생8호관	5,481.02	감) 0.02	5,481	
	301	교육1호관	7,776.79	증) 0.21	7,777	
	29	국제어학원	9,014.97	증) 0.03	9,015	
	351	과학1호관	9,404.25	감) 0.25	9,404	
	352	과학2호관	7,592.29	감) 0.29	7,592	
	354	과학4호관	7,762.70	증) 0.30	7,763	
	302	교육2호관	3,606.98	증) 0.02	3,607	
	24	교양학관	33,251.85	증) 0.15	33,252	
	353	과학3호관	4,150.52	증) 0.48	4,151	
	401	공학1호관	11,043.89	증) 0.11	11,044	
	402	공학2호관	6,303.63	증) 0.37	6,304	
	403	공학3호관	5,488.64	증) 0.36	5,489	
	404	공학4호관	5,807.70	증) 0.30	5,808	
	405	공학5호관	9,241.45	감) 0.45	9,241	
	406	공학6호관	11,909.48	감) 0.48	11,909	
	409	공학7호관	8,258.11	감) 0.11	8,258	
	304	예술관	14,457.26	감) 0.26	14,457	
501	수의1호관	6,003.93	증) 0.07	6,004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252	대경학술관	8,787.06	감) 0.06	8,787	
	303	교육문화센터	5,366.55	증) 0.45	5,367	
	34	예절교육원	22,227.98	증) 0.02	22,228	
	1	대학본부	12,515.52	증) 0.48	12,516	
	2	중앙도서관	7,422.43	감) 0.43	7,422	
	4	학술정보관	7,025.56	증) 0.44	7,026	
	3	학생회관	9,722.07	감) 0.07	9,722	
	30	컴퓨터과학관	7,549.24	감) 0.24	7,549	
	35	GNU컨벤션센터	9,967.42	감) 0.42	9,967	
	12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11,083.82	증) 0.18	11,084	
	43	대운동장	-	-	-	
	6	개방형스포츠컴플렉스	11,559.17	감) 0.17	11,559	
	152	무용실습동	2,843.76	증) 0.24	2,844	
		소계		368,907.7	증) 0.30	368,908
지원시설	61	생활관관리동	4,597.33	감) 0.33	4,597	
	62	생활관1동	2,471.74	증) 0.26	2,472	
	63	생활관2동	2,387.62	증) 0.38	2,388	
	64	생활관3동	3,757.87	증) 0.13	3,758	
	65	생활관4동	2,218.49	감) 0.49	2,218	
	66	생활관5동	2,910.98	증) 0.02	2,911	
	67	생활관6,7동	8,280.47	감) 0.47	8,280	
	32	학군단	3,698.38	감) 0.38	3,698	
	41	수위실	368.67	증) 0.33	369	
	31	남명학관	7,417.52	감) 1.52	7,416	
	25	창업보육센터(1)	1,870.52	증) 0.48	1,871	
	25-1	창업보육센터(2)	885.56	증) 0.44	886	
	26	창업보육센터(3)	1,376.08	감) 0.08	1,376	
	26-1	GNU Start-up Ground	6,930.53	증) 0.47	6,931	
	68	게스트하우스	4,703.67	증) 0.33	4,704	
	42	야외공연장	7,093.77	증) 0.23	7,094	
	71,72	생활관8,9동	10,670.44	감) 0.44	10,670	
	75	생활관12동(행복주택)	2,624.14	감) 0.14	2,624	
	410	공대제2부속공장	5,588.94	증) 0.06	5,589	
	33	골프연습장	3,424.42	감) 0.42	3,424	
70	LG개척관(개척고서관)	1,681.70	증) 0.30	1,682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69	영어캠프강의동	4,432.08	감) 0.08	4,432	
	5	체육관	9,793.97	증) 0.03	9,794	
	407	공대부속공장	8,133.99	증) 0.01	8,134	
	73	생활관10동	8,243.76	증) 0.24	8,244	
	74	생활관11동	3,151.59	증) 0.41	3,152	
	소계		118,714.26	감) 0.26	118,714	
연구시설	27	공동실험실습관	8,037.55	증) 0.45	8,038	
	459	농업과학관	2,793.44	감) 0.44	2,793	
	28	BNITR&D및산학협력센터	6,981.95	증) 1.05	6,983	
	가19	복합재료연구실연구동	712.10	감) 0.10	712	
	가10	공대가설실험실1	1,541.46	감) 1,541.46	-	
	가11	공대가설실험실2	957.38	감) 957.38	-	
	가15	공대가설실험실4	835.49	감) 835.49	-	
	가16	공용중장비실험실	924.38	감) 0.38	924	
	408	공동실험실	2,488.47	감) 0.47	2,488	
	411	공동터널설비	994.84	증) 0.16	995	
	521	ICT융합센터	-	증) 4,034.00	4,034	금회신축
소계		26,267.06	증) 699.94	26,967		
부속시설	81	부설중학교	13,883.08	감) 0.08	13,883	명칭변경
	81-1	부설중학교 창고	24.61	증) 0.39	25	명칭변경
	82	부설고등학교	8,937.75	증) 0.25	8,938	명칭변경
	82-1	부설고등학교 창고	59.07	감) 0.07	59	명칭변경
	82-2	부설고등학교 목공실	96.70	증) 0.30	97	명칭변경
	83	부설중고 체육관	6,321.96	증) 0.04	6,322	명칭변경
	83-1	부설고등학교급식소및다목적강당	-	증) 2,545.00	2,545	금회신축
	84	부설중고 생활관	1,665.92	증) 0.08	1,666	명칭변경
	54	기사대기실	44.30	감) 0.30	44	
	가2	농기구보관창고	1,886.36	감) 0.36	1,886	
	58	목공실	252.36	감) 0.36	252	
	가6	가설식당(1)	2,401.84	증) 0.16	2,402	
	52	옥외화장실(1)	833.73	증) 0.27	834	
	10	대학극장	4,287.16	감) 0.16	4,287	
	502	동물병원	4,845.38	감) 0.38	4,845	
	505	동물병원2 (수의대)	3,302.57	증) 0.43	3,303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부속시설	503	실험동물실습관	1,978.88	증) 0.12	1,979	
	506	실험용고양이 사육장	1,529.69	증) 0.31	1,530	
	507	관리사 및 입원처치실	1,327.04	감) 0.04	1,327	
	508	조류훈련 및 방사장	3,750.31	감) 0.31	3,750	
	509	조류장	858.07	감) 0.07	858	
	510	수달방사장	2,020.91	증) 0.09	2,021	
	511	포유류방사장	1,508.41	감) 0.41	1,508	
	512	대동물보정시설	1,645.50	증) 0.50	1,646	
	518	고양이사육장	111.90	증) 0.10	112	
	519	창고 1	48.00	-	48	
	520	창고 2	48.00	-	48	
	468	각관경질단동 온실	5,505.84	증) 0.16	5,506	
	469	각관경질단동 온실(생태식물원)	3,152.26	감) 0.26	3,152	
	가27	자연대온실	357.40	감) 0.40	357	
	470	VENLO형온실	651.63	증) 0.37	652	
	466	각관경 질2연동온실1	5,763.98	증) 0.02	5,764	
	467	각관경 질2연동온실2	11,100.24	증) 0.76	11,101	
	355	지진관측소	870.17	감) 0.17	870	
	460	기상관측소	3,948.44	감) 0.44	3,948	
	44	파워플랜트	17,410.10	감) 0.10	17,410	
	45	오수처리장	214.12	감) 0.12	214	
	46	가압펌프장	1,599.00	-	1,599	
	464	소독기보관창고	1,258.58	증) 0.42	1,259	
	462	종자보관실	683.16	감) 0.16	683	
	55	관용차량창고	2,193.95	증) 0.05	2,194	
	60	태양광전기실	116.67	증) 0.33	117	
	21	GNU어린이집(가좌캠퍼스)	6,395.96	증) 0.04	6,396	
	461	S.R.C온실	2,382.44	감) 0.44	2,382	
	가4	농대온실	5,535.18	감) 0.18	5,535	
	463	감자저장고	144.58	증) 0.42	145	
	465	향온실	351.00	-	351	
	47	폐기물적치장	172.28	감) 0.28	172	
48	실험폐동물소각장	118.14	감) 0.14	118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부속시설	49	테니스장(샤워, 탈의장)	79.73	증) 0.27	80	
	56	테니스장본부석	29.53	증) 0.47	30	
	57	테니스장화장실	23.92	증) 0.08	24	
	513	쓰레기처리장(기숙사)	49.22	감) 0.22	49	
	514	514동 쓰레기분리장	49.22	감) 0.22	49	
	515	폐기물저장소2	122.05	감) 0.05	122	
	516	위험물저장소	122.05	감) 0.05	122	
	517	폐기물저장소3	145.31	감) 0.31	145	
	463-1	생명환경분석센터창고	1,164.19	감) 0.19	1,164	
	471	LMO작물재배용온실	10,332.34	감) 0.34	10,332	
	304-1	야외조각장	808.80	증) 0.20	809	
	50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1	553.00	-	553	
	51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2	920.00	-	920	
	소계			147,993.98	증) 2,545.02	150,539

- 운동시설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운동시설	1	대운동장	35,115.89	증) 0.11	35,116	
	2	운동장	7,892.83	증) 0.17	7,893	
	3	운동장	1,914.43	감) 0.43	1,914	
	4	테니스장	4,841.78	증) 0.22	4,842	
	5	운동장	4,433.38	감) 0.38	4,433	
	6	운동장	6,363.68	감) 2,544.68	3,819	
	계			60,562.00	감) 2,545.00	58,017

- 도로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도로시설	1	도로	15,475.03	감) 2.03	15,473	
	2	도로	12,950.89	증) 0.11	12,951	
	3	도로	11,576.05	감) 0.05	11,576	
	4	도로	711.11	감) 0.11	711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	도로	665.39	감) 0.39	665	
	6	도로	2,085.34	감) 0.34	2,085	
	7	도로	365.73	증) 0.27	366	
	8	도로	7,835.91	증) 0.09	7,836	
	9	도로	2,440.76	증) 0.24	2,441	
	10	도로	1,460.86	증) 0.14	1,461	
	11	도로	3,064.64	증) 0.36	3,065	
	12	도로	2,668.11	감) 0.11	2,668	
	13	도로	1,080.75	증) 0.25	1,081	
	14	도로	3,398.67	증) 0.33	3,399	
	15	도로	3,220.87	증) 0.13	3,221	
	16	도로	3,709.72	증) 0.28	3,710	
	17	도로	4,929.81	증) 0.19	4,930	
	18	도로	1,318.98	증) 0.02	1,319	
	19	도로	752.73	증) 0.27	753	
	20	도로	527.76	증) 0.24	528	
	21	도로	2,048.85	증) 0.15	2,049	
	22	도로	5,878.71	증) 0.29	5,879	
	23	도로	2,687.31	감) 0.31	2,687	
		계	90,854.00	-	90,854	

- 광장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광장시설	1	광장	8,917.71	감) 0.71	8,917	
	2	광장	4,841.72	증) 0.28	4,842	
	3	광장	1,241.65	증) 0.35	1,242	
	4	광장	2,435.91	증) 0.09	2,436	
			계	17,437.00	-	17,437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하천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하천시설	1	하천	43,346.00	-	43,346	가좌천
	계		43,346.00	-	43,346	

- 녹지용지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1	녹지	153,939.00	감) 700.00	153,239	
	2	녹지	159.04	감) 0.04	159	
	3	녹지	5,777.22	감) 0.22	5,777	
	4	녹지	3,278.74	증) 0.26	3,279	
	계		163,154.00	감) 700.00	162,454	

○ 시설 조서(총괄)

구분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38,458.96	증) 1,928.52	140,387.48	427,103.58	증) 10,531.62	437,635.20	
교육기본시설	77,953.84	-	77,953.84	255,897.07	-	255,897.07	
지원시설	29,298.58	-	29,298.58	98,873.33	-	98,873.33	
연구시설	8,252.27	증) 736.14	8,988.41	31,928.52	증) 8,459.63	40,388.15	
부속시설	22,846.27	증) 1,192.38	24,038.65	39,747.61	증) 2,071.99	41,819.60	
편익시설	108.00	-	108.00	657.05	-	657.05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시설 세부조사

(단위:㎡)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총 계					138,458.96	427,103.58	140,387.48	437,635.20			
1.교육기본시설					77,953.84	255,897.07	77,953.84	255,897.07			
인문사회관	인문사회1호관	1	4	1	4	2,984.75	11,362.74	2,984.75	11,362.74	101	인문사회1호관
										102	인문사회2호관
	인문사회3호관	1	4	1	4	1,274.94	4,646.38	1,274.94	4,646.38	151	사회과학관
	인문사회4호관	1	4	1	4	1,300.00	4,000.00	1,300.00	4,000.00	103	인문사회4호관
	법학관 경영학관	1	5	1	5	2,279.54	8,732.31	2,279.54	8,732.31	201	경영학관
										251	법학관
	소계					7,839.23	28,741.43	7,839.23	28,741.43		
농학관		1	3	1	3	7,338.45	24,947.21	7,338.45	24,947.21	451	농생1호관
										452	농생2호관
										453	농생3호관
										454	농생4호관
농기계학관	농생5호관	0	3	0	3	913.60	2,777.30	913.60	2,777.30	455	농생5호관
	농생6호관	1	3	1	3	1,164.20	3,664.80	1,173.81	3,693.63	456	농생6호관 (농기계학관강의동)
	농생7호관	0	1	0	1	810.10	810.10	810.10	810.10	457	농생7호관 (농기계학관공작동)
	농생8호관	0	2	0	2	1,169.60	2,693.00	1,169.60	2,693.00	458	농생8호관 (농기계학관실습동)
소계					4,057.50	9,945.20	4,067.11	9,974.03			
교육관	교육1호관	1	4	1	4	1,368.69	5,463.86	1,368.69	5,463.86	301	교육1호관
	국제어학원	1	4	1	4	1,443.03	4,441.95	1,443.03	4,441.95	7	국제어학원
	소계					2,811.72	9,905.81	2,811.72	9,905.81		
과학관	과학1호관	1	4	1	4	2,017.10	9,257.42	2,017.10	9,257.42	351	과학1호관
	과학2호관	1	4	1	4	2,506.82	10,341.44	2,506.82	10,341.44	352	과학2호관
	소계					4,523.92	19,598.86	4,523.92	19,598.86		
과학4호관	1	5	1	5	1,572.68	7,306.43	1,572.68	7,306.43	354	과학4호관 (자연과학대4호관)	
교육2호관	0	1	0	1	712.99	710.35	712.99	710.35	302	교육2호관 (사범대학강의실)	
교양학관	1	3	1	3	6,277.89	11,703.39	6,277.89	11,703.39	17	교양학관	
과학3호관	1	5	1	5	989.91	4,002.75	989.91	4,002.75	353	과학3호관 (생활과학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공 학 관	공학1호관	1	3	1	3	1,180.71	3,972.32	1,180.71	3,972.32	401	공학1호관
	공학2호관	1	4	1	4	1,215.42	4,904.58	1,215.42	4,904.58	402	공학2호관
	공학3호관	1	4	1	4	1,189.59	4,824.47	1,189.59	4,824.47	403	공학3호관
	공학4호관	1	5	1	5	1,310.54	6,271.13	1,310.54	6,271.13	404	공학4호관
	공학5호관	1	5	1	5	1,456.27	7,559.57	1,456.27	7,559.57	405	공학5호관
	공학6호관	1	5	1	5	3,104.65	9,057.04	3,104.65	9,057.04	406	공학6호관
	공학7호관	1	8	1	8	2,331.72	9,091.64	2,331.72	9,091.64	409	공학7호관
	소계					11,788.90	45,680.75	11,788.90	45,680.75		
예술관	1	4	1	4	1,990.57	4,898.99	1,990.57	4,898.99	304	예술관	
수의학관	1	5	1	5	1,056.19	4,825.13	1,056.19	4,825.13	501	수의1호관	
대경학술관	0	3	0	3	961.58	2,212.42	961.58	2,212.42	252	대경학술관	
교육문화센터	1	8	1	8	1,973.91	9,897.26	1,973.91	9,897.26	303	교육문화센터	
예절교육원	0	1	0	1	418.50	418.50	418.50	418.50	34	예절교육원	
대학본부	1	5	1	5	1,258.65	5,990.41	1,258.65	5,990.41	1	대학본부	
중앙도서관	1	7	1	7	3,173.94	15,472.85	3,173.94	15,472.85	2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	1	3	1	3	1,839.41	6,244.22	1,839.41	6,244.22	4	학술정보관	
학생회관	1	6	1	6	2,974.54	10,216.39	2,974.54	10,216.39	3	학생회관	
컴퓨터과학관	1	7	1	7	1,006.83	3,205.02	1,006.83	3,205.02	8	컴퓨터과학관 (제2학생회관)	
GNU컨벤션센터	1	5	1	5	5,474.39	11,981.91	5,474.39	11,981.91	35	GNU컨벤션센터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1	5	1	5	3,050.30	8,963.87	3,050.30	8,963.87	12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대운동장	0	2	0	2	930.12	1,140.85	930.12	1,140.85	43	대운동장	
개방형스포츠컴플렉스	1	3	1	3	3,672.11	7,608.24	3,672.11	7,608.24	6	개방형스포츠컴플렉스	
무용실습동	0	1	0	1	250.00	250.00	250.00	250.00	152	무용실습동	
2.지원시설					29,298.58	98,873.33	29,298.58	98,873.33			
학 생 기 숙 사	생활관관리동	1	2	1	2	1,424.16	3,345.51	1,424.16	3,345.51	61	생활관관리동
	생활관 1,2동	0	4	0	4	746.20	4,137.22	746.20	4,137.22	62	생활관1동
										63	생활관2동
	생활관 3동	0	4	0	4	668.50	2,481.72	668.50	2,481.72	64	생활관3동
	생활관 4동	0	4	0	4	599.00	2,354.60	599.00	2,354.60	65	생활관4동
	생활관 5동	1	8	1	8	565.41	4,421.07	565.41	4,421.07	66	생활관5동
	생활관 6,7동	1	13	1	13	2,624.40	9,990.28	2,624.40	9,990.28	67	생활관6,7동
소계					6,627.67	26,730.40	6,627.67	26,730.40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학군단	0	2	0	2	543.12	911.85	543.12	911.85	32	학군단
	1	2	1	2	487.51	1,010.28	487.51	1,010.28		학군단1
수위실	0	1	0	1	67.71	67.71	67.71	67.71	41	수위실
남명학관	1	3	1	3	1,525.16	2,867.45	1,525.16	2,867.45	31	남명학관
창업보육센터(1)	0	2	0	2	1,254.21	1,964.45	1,254.21	1,964.45	25	창업보육센터(1)
창업보육센터(2)	0	2	0	2	505.20	1,006.40	505.20	1,006.40	25-1	창업보육센터(2)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0	2	0	2	517.14	1,033.56	517.14	1,033.56	26	창업보육센터(3)
GNU start up ground	0	2	0	2	292.08	380.27	292.08	380.27	26-1	GNU start up ground
게스트하우스	0	5	0	5	339.10	1,487.10	339.10	1,487.10	68	게스트하우스
야외공연장	0	2	0	2	1,214.87	1,015.92	1,214.87	1,015.92	42	야외공연장
생활관 8, 9동	1	16	1	16	2,215.11	20,991.07	2,215.11	20,991.07	71,72	생활관8, 9동
생활관12동(행복주택)	1	13	1	13	441.67	4,865.39	441.67	4,865.39	75	생활관12동(행복주택)
공대제2부속공장	1	1	1	1	2,300.00	2,300.00	2,300.00	2,300.00	410	공대제2부속공장
골프연습장	1	1	1	1	2,850.00	2,850.00	2,850.00	2,850.00	33	골프연습장
LG개척관	0	9	0	9	342.30	3,145.60	342.30	3,145.60	70	LG개척관(개척고시관)
영어캠프강의동	0	7	0	7	624.44	3,651.38	624.44	3,651.38	69	영어캠프강의동
체육관	0	2	0	2	2,851.94	3,773.69	2,851.94	3,773.69	5	체육관
공대부속공장	1	2	1	2	2,667.14	4,030.14	2,667.14	4,030.14	407	공대부속공장
생활관10동	1	15	1	15	1,133.59	8,847.37	1,133.59	8,847.37	73	생활관10동
생활관11동	1	15	1	15	498.62	5,943.30	498.62	5,943.30	74	생활관11동
3.연구시설					8,243.12	31,901.07	8,988.41	40,388.15		
공동실험실습관	1	6	1	6	2,088.37	12,385.53	2,088.37	12,385.53	27	공동실험실습관
농업과학관	0	3	0	3	876.25	2,497.19	876.25	2,497.19	459	농업과학관
BNITR&D 및 산학협력센터 (구테크노파크)	1	8	1	8	3,062.04	14,773.19	3,062.04	14,773.19	28	BNITR&D 및 산학협력센터
복합재료연구실 연구동	0	1	0	1	208.84	208.84	208.84	208.84	가19	복합재료연구실 연구동
공대가설실험실-1	0	1	0	0	292.73	292.73	-	-	가10	공대가설실험실1
공대가설실험실-2	0	1	0	0	548.86	548.86	-	-	가11	공대가설실험실2
공대가설실험실-4	0	1	0	0	101.97	101.97	-	-	가15	공대가설실험실4
공용중장비실	0	1	0	1	274.40	274.40	274.40	274.40	가16	공용중장비실험실
풍동실험실	0	2	0	2	408.81	455.81	408.81	455.81	408	풍동실험실
풍동터널설비	0	1	0	1	390.00	390.00	390.00	390.00	411	풍동터널설비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ICT융합센터	0	0	0	10	-	-	1,679.7	9,403.19	521	ICT융합센터
4.부속시설					22,846.27	39,747.61	24,038.65	41,819.60		
부설중학교	1	3	1	3	2,196.84	5,846.85	2,196.84	5,846.85	81	부설중학교
부설중학교 창고	0	1	0	1	67.50	67.50	67.50	67.50	81-1	부설중학교 창고
부설고등학교	1	3	1	3	2,201.49	6,070.82	2,201.49	6,070.82	82	부설고등학교
부설고등학교 창고	0	1	0	1	60.00	60.00	60.00	60.00	82-1	부설고등학교 창고
부설고등학교 목공실	0	1	0	1	79.40	79.40	79.40	79.40	82-2	부설고등학교 목공실
부설중고 생활관	1	2	1	2	458.85	912.42	458.85	912.42	84	부설중고 생활관
부설중고 체육관	1	3	1	3	1,162.50	3,109.25	1,162.50	3,109.25	83	부설중고 체육관
부설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0	0	0	2	-	-	1,192.38	2,071.99	83-1	부설고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기사대기실	0	1	0	1	42.00	42.00	42.00	42.00	54	기사대기실
농기구보관창고	0	1	0	1	589.10	479.85	589.10	479.85	가2	농기구보관창고
목공소	0	1	0	1	231.68	231.68	231.68	231.68	58	목공실
가설식당(1)	0	1	0	1	489.90	419.89	489.90	419.89	가6	가설식당(1)
옥외화장실(1)	0	1	0	1	54.00	54.00	54.00	54.00	52	옥외화장실(1)
대학극장	1	3	1	3	3,000.00	7,000.00	3,000.00	7,000.00	10	대학극장
동물병원	1	1	1	1	530.76	619.32	530.76	619.32	502	동물병원
동물병원2 (수의대)	0	4	0	4	1,410.37	4,173.30	1,410.37	4,173.30	505	동물병원2 (수의대)
실험동물실습장	0	1	0	1	418.48	376.63	418.48	376.63	503	실험동물실습장
실험용고양이사육장	0	2	0	2	123.75	215.71	123.75	215.71	506	실험용고양이 사육장
관리사 및 입원처치실					305.50	305.50	305.50	305.50	507	관리사 및 입원처치실
조류훈련 및 방사장	0	1	0	1	200.00	200.00	200.00	200.00	508	조류훈련 및 방사장
조류장	0	1	0	1	34.65	34.65	34.65	34.65	509	조류장
수달방사장	0	1	0	1	34.65	34.65	34.65	34.65	510	수달방사장
포유류방사장	0	1	0	1	15.00	15.00	15.00	15.00	511	포유류방사장
대동물보정시설	0	1	0	1	128.00	128.00	128.00	128.00	512	대동물보정시설
고양이사육장	0	2	0	2	111.90	223.80	111.90	223.80	518	고양이사육장
창고 1	0	1	0	1	48.00	48.00	48.00	48.00	519	창고 1
창고 2	0	1	0	1	48.00	48.00	48.00	48.00	520	창고 2
각환경절단동 온실	0	1	0	1	168.00	168.00	168.00	168.00	468	각환경절단동 온실
	0	1	0	1	496.00	496.00	496.00	496.00	469	생태식물원
	소계				664.00	664.00	664.00	664.00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자연대 온실	0	1	0	1	90.00	90.00	90.00	90.00	가27	자연대온실
VENLO형 온실	0	1	0	1	280.70	280.70	280.70	280.70	470	VENLO형 온실
각관경질2연동온실1	0	1	0	1	420.00	420.00	420.00	420.00	466	각관경질2연동온실1
각관경질2연동온실2	0	1	0	1	480.00	480.00	480.00	480.00	467	각관경질2연동온실2
지진관측소	0	1	0	1	39.00	39.00	39.00	39.00	355	지진관측소
기상관측소	0	1	0	1	50.00	50.00	50.00	50.00	460	기상관측소
파워플랜트	1	2	1	2	1,251.00	1,419.30	1,251.00	1,419.30	44	파워플랜트
오수처리장	0	1	0	1	181.17	181.17	181.17	181.17	45	오수처리장
가압펌프장	0	1	0	1	150.21	150.21	150.21	150.21	46	가압펌프장
소독기보관창고	0	1	0	1	60.00	60.00	60.00	60.00	464	소독기보관창고
종자보관실	0	1	0	1	56.71	56.71	56.71	56.71	462	종자보관실
관용차량 차고	0	1	0	1	581.40	581.40	581.40	581.40	55	관용차량차고
태양광전기실	0	1	0	1	88.16	88.16	88.16	88.16	60	태양광전기실
GNU어린이집 (가좌캠퍼스)	0	1	0	1	1,495.50	1,485.00	1,495.50	1,485.00	21	GNU어린이집(가좌캠퍼스)
S.R.C온실	0	1	0	1	138.88	138.88	138.88	138.88	461	S.R.C온실
농대온실	0	1	0	1	846.00	846.00	846.00	846.00	가4	농대온실
감자저장고	0	1	0	1	28.00	28.00	28.00	28.00	463	감자저장고
향온실	0	1	0	1	40.00	40.00	40.00	40.00	465	향온실
폐기물적치장	0	1	0	1	145.00	145.00	145.00	145.00	47	폐기물적치장
실험폐동물소각장	0	1	0	1	108.00	108.00	108.00	108.00	48	실험폐동물소각장
테니스장 (샤워, 탈의장)	0	1	0	1	48.36	48.36	48.36	48.36	49	테니스장(샤워, 탈의장)
테니스장본부석	0	1	0	1	24.00	24.00	24.00	24.00	56	테니스장본부석
테니스장화장실	0	1	0	1	21.15	19.44	21.15	19.44	57	테니스장화장실
쓰레기처리장(기숙사)	0	1	0	1	40.00	40.00	40.00	40.00	513	쓰레기처리장(기숙사)
514동 쓰레기분리장	0	1	0	1	40.00	40.00	40.00	40.00	514	514동 쓰레기분리장
폐기물저장소2	0	1	0	1	99.18	99.18	99.18	99.18	515	폐기물저장소2
위험물저장소	0	1	0	1	99.18	99.18	99.18	99.18	516	위험물저장소
폐기물 저장소3	0	1	0	1	110.70	110.70	110.70	110.70	517	폐기물 저장소3
생명환경분석센터창고	0	1	0	1	60.00	60.00	60.00	60.00	463-1	생명환경분석센터창고
LMO 작물재배용 온실	0	1	0	1	269.95	269.95	269.95	269.95	471	LMO 작물재배용 온실
야외조각장	0	1	0	1	206.71	206.71	206.71	206.71	304-1	야외조각장
수의대학창고	1	1	1	1	30.34	30.34	30.34	30.34	가7	수의대학창고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건물명	층수				면적				건물번호 및 명칭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지하	지상	지하	지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번호	건물명칭
야생동물재활관리사	1	1	1	1	96.00	96.00	96.00	96.00	518	야생동물재활관리사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1	0	1	0	1	176.00	176.00	176.00	176.00	50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1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2	0	1	0	1	288.65	280.00	288.65	280.00	51	공대실험기자재보관창고2
5.편익시설					108.00	657.05	108.00	657.05		
휴게음식점(커피숍)1					-	9.20	-	9.20	2	도서관
휴게음식점(커피숍)2					-	43.16	-	43.16	3	학생회관
휴게음식점(커피숍)3					-	14.10	-	14.10	303	교육문화센터
휴게음식점(커피숍)4					-	9.69	-	9.69	61	생활관관리동
휴게음식점(커피숍)5					-	70.01	-	70.01	가6	가설식당(1)
카페테리아					-	122.27	-	122.27	6	개방형스포츠컴플렉스
매점/용품점					-	48.55	-	48.55	6	개방형스포츠컴플렉스
휴게음식점(커피숍)6					-	213.91	-	213.91	12	고문헌도서관 및 박물관
세탁소					108.00	108.00	108.00	108.00	61	세탁소
스터디카페					-	13.60	-	13.60	404	공학4호관
휴게음식점(커피숍)7					-	4.56	-	4.56	30	컴퓨터과학관

○ 공작물조서 [변경없음]

건물명	연면적 (㎡)	옥상면적 (㎡)	태양광 설치 면적(㎡)		비고
			모듈설치면적	웬스설치면적	
공학1호관	3,980.00	1,180	322	537	
공학2호관	4,960.00	1,203	354	566	
공학4호관	6,334.73	1,296	419	638	
공학5호관	7,590.03	1,446	427	780	
교육1호관	9,560.00	1,269	414	670	사범대학교육1호관
제2학생회관	10,000.00	1,006	210	362	컴퓨터과학관
교육2호관	8,708.00	1,443	206	435	국제어학원
교 양 학 관	10,223.00	5,457	1,356	2,435	
예 술 관	13,010.00	1,990	412	681	
농생2호관	21,022.00	1,908	855	1,244	농학관
인문사회1호관	12,050.00	1,816	396	658	
인문사회3호관	7,817.00	1,269	419	644	사회과학관
계	115,254.76	21,283	5,790	9,650	

※ 관계도면은 진주시청 도시계획과(☎055-749-8868)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진주시 공고 제2023-578호**

**진주도시계획시설(소로문산2-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1. 진주시 문산읍 일원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문산2-11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47-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소로 문산 2-11호선(서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금회시행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로	소로	문산2	11	8	416	8	156	경고 제417호 (2012.10.4.)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9.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서 서면제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791) 및 도시계획과(☎055-749-88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17필지		6,013	1,047					
1	문산읍 소문리	147-20	도	2179	116	진주시				
2	문산읍 소문리	153-15	대	544	43	한○일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3	문산읍 소문리	153-79	대	217	66	임○우	경상남도 진주시 호탄길27번길			
4	문산읍 소문리	153-16	대	364	110	강○욱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5	문산읍 소문리	153-80	대	168	113	최○문	진양군 문산읍 소문리			
6	문산읍 소문리	153-5	대	20	7			김○상○		토지대장 상 소유자
7	문산읍 소문리	2375-8	도	277	18	국 (농림수산부)				
8	문산읍 소문리	148-47	대	221	120	김○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진주○마○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돛골로	근저당권
9	문산읍 소문리	148-32	대	393	101	조○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0	문산읍 소문리	148-33	대	225	128	이○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씨○이○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근저당권
								민○수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근저당권
11	문산읍 소문리	148-31	대	499	16	○한○수교○ 로회○양○회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엘○마○금고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근저당권
12	문산읍 소문리	148-67	대	62	30	김○식 (12/356)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김○순 (344/356)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산○마○금고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문산읍 소문리	148-22	도	79	65	진주시				
14	문산읍 소문리	148-50	대	407	23	노○수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5	문산읍 소문리	148-57	대	203	45	우○준 (1/2)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우○준 (1/2)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 43번길	○산○업○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근저당권, 지상권
16	문산읍 소문리	148-92	대	53	45	유○자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17	문산읍 소문리	148-12	대	102	1	김○식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길43번길	○민○마○금고	경상남도 진주시 축석로	근저당권

● **진주시 공고 제2023-650호**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1. 진주시 장재동 일원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2호선)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진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 : 진주시 장재동 161-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진주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하촌교차로~하촌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결정규모					금회시행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도로	중로	1	22	11~20	6,992	20	1,000	

※ 중로1-22호선 : 지역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비탈면 포함)

※ 대로3-11호선 : 지역여건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중로1-22호선 중복부 삭제)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진주시장
- 주소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착수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불임(변경:적서)

7.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진주시청 도시계획과

9.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에서 서면제출

1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도로과(☎055-749-8228) 및 도시계획과(☎055-749-8867)로 문의 바랍니다.

【불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 계		97필지		41,034	41,117					
1	장제동	161-14	임	260	254	진주시				
2	장제동	산44-1	임	82,595	273	○참○공○중 진양군 명석면 관지리				
3	장제동	378-8	도	792	455	진주시				
4	장제동	387-19	도	290	43	진주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장재동	161-13	도	3,602	2,843	진주시				
6	장재동	340-1	구	1,132	1,055	국 (국토교통부)				
7	장재동	363-4	도	245	123	진주시				
8	장재동	363-2	도	179	130	조○동	진주시 장재동			
9	장재동	363-1	도	496	446	미등기		이○철		토지대장상 소유자
10	장재동	산44-4	도	531	27	진주시				
11	장재동	387-2	답	2,341	14	김○곤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동	○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근저당권
12	장재동	387-1	답	2,298	30	정○권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			
13	장재동	339-13	도	8,540	7,525	진주시				
14	장재동	339-7	답	829	3	안○호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15	장재동	339-6	답	1,599	15	최○임	진주시 칠암동			
16	장재동	320-5	도	53	18	강○환	진주시 하촌동			
17	장재동	320-4	도	228	194	국 (국토교통부)				
18	장재동	340	구	2,365	1,365	국 (국토교통부)				
19	장재동	319-2	도	228	228	미등기		서○암		토지대장상 소유자
								서○조		
								서○덕		
								서○수		
20	장재동	산58-1	도	61	5	미등기		박○인		토지대장상 소유자
21	장재동	319-4	도	76	76	미등기		서○암		토지대장상 소유자
								서○조		
								서○덕		
								서○수		
22	장재동	339-28	도	6	6	이○순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남로			
23	장재동	314-1	도	221	221	김○진 (1/4)	진주시 장대동			
						김○근 (1/4)	진주시 장대동			
						김○균 (1/4)	진주시 장대동			
						김○석 (1/4)	진주시 장대동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4	장재동	339-12	답	1,433	24	이○순	경상남도 진주시 초진남로			
25	장재동	309-7	도	3,587	2,651	진주시				
26	장재동	산57-1	도	206	62	진주시				
27	장재동	313-4	도	132	132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8	장재동	313-2	도	364	364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29	장재동	313-5	도	118	118	진주시		○도○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30	장재동	311-2	도	10	10	강○철	진주시 장재동			
31	장재동	310-4	도	20	20	강○성 (1/2)	진주시 하촌동			
						강○중 (1/2)	진주시 하촌동			
32	장재동	309	도	40	40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33	장재동	309-2	도	235	235	서○원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34	장재동	310-2	도	99	99	미등기		김○진	대안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김○근	대안동	
								김○균	대안동	
								김○석	대안동	
35	장재동	310-3	도	145	145	강○성 (1/2)	진주시 하촌동			
						강○중 (1/2)	진주시 하촌동			
36	하촌동	13-3	답	1,660	41	송○인	경상남도 진주시 진산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근저당권
37	하촌동	13-4	도	302	302	진주시				
38	장재동	309-9	도	1,598	595	국 (국토교통부)				
39	장재동	309-6	도	132	132	진주시				
40	장재동	309-4	도	370	370	국 (국토교통부)				
41	장재동	309-1	전	106	106	진주시				
42	하촌동	13-2	답	2,418	61	강○태	진주시 하대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근저당권
43	하촌동	산15-4	도	1,980	703	진주시				
44	하촌동	17-3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45	하촌동	17-4	도	119	119	진주시				
46	하촌동	17-1	도	116	116	국 (국토교통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7	하촌동	17-2	전	1,342	1,289	진주시				
48	하촌동	산15-3	도	90	90	강○규 (1/2)	진주시 상봉서동			
						강○규 (1/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9	하촌동	14	구	2,512	2,380	국 (국토교통부)				
50	하촌동	882-2	도	3	3	국 (국토교통부)				
51	하촌동	883	구	119	119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하촌동	15-1	전	840	840	강○규	진주시 옥봉동			
53	하촌동	15-3	도	489	489	진주시				
54	하촌동	15-2	도	60	60	미등기		강○욱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55	하촌동	12	답	1,089	43	김○은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로			
56	하촌동	12-1	답	45	45	진주시				
57	하촌동	11-4	답	78	78	진주시				
58	하촌동	11-3	답	81	81	진주시				
59	하촌동	11-1	답	2,207	7	박○순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60	하촌동	산15-1	구	1,223	384	국 (국토교통부)				
61	하촌동	896-3	구	63	63	국 (국토교통부)				
62	하촌동	37-2	도	136	50	강○상 (6/9)	진주시 수정동			
						강○순 (1/9)	진주시 신안동			
						강○자 (1/9)	진주시 남성동			
						강○달 (1/9)	부산시 서구 괴정동			
63	하촌동	35-4	도	484	196	진주시				
64	하촌동	37-4	답	2,414	2,373	진주시				
65	하촌동	38-4	전	1,662	1,662	진주시				
66	하촌동	36-9	답	81	68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근저당권
67	하촌동	38-1	전	179	179	진주시				
68	하촌동	896-2	구	869	310	국 (국토교통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9	하촌동	41-2	전	265	113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근저당권
70	하촌동	9-1	답	2,006	65	빈○열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로	김○수 외4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교동	가압류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근저당권
71	하촌동	9-3	답	212	212	진주시				
72	하촌동	93-3	답	301	301	진주시				
73	하촌동	40-1	답	795	735	강○진	진주시 하촌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가압류
74	하촌동	98-1	답	721	721	진주시				
75	하촌동	97-1	답	1,087	1,087	진주시				
76	하촌동	41-1	도	38	16	진주시				
77	하촌동	42-1	도	33	33	미등기		강○육	봉곡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78	하촌동	40-3	도	12	12	진주시				
79	하촌동	42-2	도	284	80	미등기		강○육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80	하촌동	888	도	426	273	국 (국토교통부)				
81	하촌동	54-1	도	121	10	강○조	부산 부산진구 부암2동			
82	하촌동	55-4	도	131	106	진주시		○도○사 주식회사	서울 중구 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83	하촌동	55-1	도	182	182	구○숙	진주시 하촌동			
84	하촌동	87-1	답	50	50	진주시				
85	하촌동	87-2	도	175	175	진주시				
86	하촌동	89-3	도	17	17	강○중	진주시 하촌동			
87	하촌동	88-2	도	93	26	김○이	진주시 옥봉동			
88	하촌동	87-3	도	281	281	강○진	진주시 하촌동	○부○업 협동조합	진주시 상대동	가압류
89	하촌동	88-1	답	1,451	26	정○일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근저당권, 지상권
						박○숙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정○일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박○숙 (1/4)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90	하촌동	88-3	답	701	701	진주시				
91	하촌동	55-2	도	3,928	1,636	진주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성 명 [지 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2	하촌동	85	답	1,541	7	정○일 (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주○부○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	근저당권, 지상권
						박○숙 (1/2)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로			
93	하촌동	85-1	답	929	929	진주시				
94	하촌동	84-4	답	481	481	하○주 (895/1227)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이○자 (332/1227)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5	하촌동	82-2	도	298	110	미등기		구○조		토지대장상 소유자
96	장계동	387-9	답	297	26	진주시				
97	하촌동	16	도	83	83	미등기		강○육	수정동	토지대장상 소유자

● **통영시 고시 제2023-36호**

통영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86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통영시 무전동 28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1-86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통 영 시 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통영시 무전동 28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추모공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소로1-86호선)

3.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기 정: 8,305㎡
 - 변 경: **8,273㎡**
- 연장 및 폭원: L=570m, B=12m

4. 금회 변경사항

- 기 포장된 구간 사업면적에서 제척, 구조물 계획변경(전석쌓기 → 전석쌓기, L형옹벽, 계비옹벽) 등

5.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성 명: 통영시장(노인장애인과)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6. 사업기간

- 기 정: 2019. 6. 11.~2021. 12. 8.
- 변 경: 2019. 6. 11.~**2023. 3. 31.**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붙임

서류열람 및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4) 및 노인장애인과(055-650-4242)에 문의 바람

● 통영시 고시 제2023-37호

통영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화장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통영시 정량동 12-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화장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통 영 시 장

□.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통영시 정량동 1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화장장) 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화장장) 사업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면적: 17,184㎡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성 명: 통영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
- 주 소: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5. 사업기간

- 기 정: 2019. 2. 28. ~ 2022. 12. 31.
- 변 경: 2019. 2. 28. ~ 2023. 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변경없음): 붙임

□. 서류열람 및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도시과(055-650-5634) 및 노인장애인과(055-650-4242)에 문의 바람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서

번호	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합	계	-	-	17,184	17,184		
1	정량동	12-4	임야	367	367	통영시	
2	정량동	26-1	전	12	12	통영시	
3	정량동	27-1	전	854	854	통영시	
4	정량동	28	묘지	10	10	통영시	
5	정량동	29-3	답	440	440	통영시	
6	정량동	29-4	전	588	588	통영시	
7	정량동	48-4	전	730	730	통영시	
8	정량동	49	묘지	251	251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9	정량동	50-2	잡종지	1	1	통영시	
10	정량동	50-4	전	572	572	통영시	
11	정량동	50-5	묘지	16	16	통영시	
12	정량동	50-6	전	1,546	1,546	통영시	
13	정량동	50-8	묘지	17	17	통영시	
14	정량동	51-3	전	50	50	통영시	
15	정량동	51-5	임야	2,433	2,433	통영시	
16	정량동	51-6	전	179	179	통영시	
17	정량동	51-8	묘지	19	19	통영시	
18	정량동	51-9	임야	21	21	통영시	
19	정량동	51-10	임야	1,350	1,350	통영시	
20	정량동	51-11	잡종지	180	180	통영시	
21	정량동	52-7	대	2	2	통영시	
22	정량동	54	전	195	195	통영시	
23	정량동	55	전	1,471	1,471	통영시	
24	정량동	56-1	답	359	359	통영시	
25	정량동	57	전	879	879	통영시	
26	정량동	58-2	묘지	397	397	통영시	
27	정량동	65-4	전	348	348	통영시	
28	정량동	65-5	전	26	26	통영시	
29	정량동	65-6	전	648	648	통영시	
30	정량동	115-48	임야	446	446	통영시	
31	정량동	115-49	임야	59	59	통영시	
32	정량동	115-50	임야	156	156	통영시	
33	정량동	115-51	전	855	855	통영시	
34	정량동	115-52	전	431	431	통영시	
35	정량동	115-53	임야	143	143	통영시	
36	정량동	115-54	임야	843	843	통영시	
37	정량동	1344-4	구거	290	290	통영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증감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합계	기정	39필지			24,082	8,305	감)32	8,273						
	변경	40필지			20,191									
1	무전동	279	38	도	145	125	-	125	통영시					기정
2	무전동	279	63	도	112	107	감)17	90	통영시					기정 (면적변경)
3	무전동	279	55	도	134	51	-	51	통영시					기정
4	무전동	279	13	도	7	7	-	7	통영시					기정
5	무전동	279	12	도	139	139	-	139	통영시					기정
6	무전동	279	51	묘	95	35	-	35	통영시					기정
7	무전동	279	24	도	46	18	-	18	통영시					기정
8	무전동	279	49	임	38	38	-	38	통영시					기정
9	무전동	279	3	임	157	157	-	157	통영시					기정
10	무전동	279	60	전	101	101	감)3	98	통영시					기정 (소유자변경)
11	무전동	279	8	도	731	320	-	320	국토교통부					기정
12	무전동	279	17	잡	1,489	1,129	증)2	1,131	통영시					기정 (면적변경)
13	무전동	279	14	도	30	30	-	30	통영시					기정 (소유자변경)
14	무전동	279	5	임	3	3	-	3	통영시					기정 (소유자변경)
15	무전동	279	42	잡	353	219	-	219	통영시					기정
16	무전동	279	62	전	9	9	-	9	통영시					기정 (소유자변경)
17	무전동	279	44	전	67	67	감)7	60	통영시					기정 (면적변경)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증감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8	무전동	279	59	임	10	10	-	10	통영시					기정 (소유자 변경)
19	무전동	963	8	도	5,369	55	-	55	국토교통부					기정
20	무전동	292	2	대	202	1	-	1	통영시					기정
21	무전동	292	7	전	643	602	감)8	594	통영시					기정 (면적 변경)
22	무전동	287	16	전	998	528	감)1	527	통영시					기정 (면적 변경)
23	무전동	287	12	전	760	188	-	188	통영시					기정
24	무전동	287	13	전	271	120	-	120	통영시					기정
25	무전동	290		전	715	715	-	715	통영시					200-1로 분할
	무전동	290	1	전	92	-	-	-	조근봉	항남동 239-2	주식회사 국민은행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근저당 지상권	200 에서 분할
26	무전동	287	21	전	35	35	-	35	통영시					기정
27	무전동	287	20	전	191	191	-	191	통영시					기정
28	무전동	287	2	도	1,253	76	-	76	통영시					기정
29	정량동	115	47	전	408	408	-	408	통영시					기정
30	정량동	115	13	도	337	261	증)1	262	국토교통 부					기정 (면적 변경)
31	정량동	115	25	전	83	27	-	27	통영시					기정
32	정량동	115	45	전	154	154	-	154	통영시					기정
33	정량동	115	24	대	155	155	-	155	통영시					기정
34	정량동	115	46	전	352	352	-	352	통영시					기정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본번	부번		지적	편입	증감	변경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5	정량동	115	43	전	126	126	-	126	통영시					기정
36	정량동	115	42	입	1,830	80	증)3	83	통영시					115-54,55로 분할
	정량동	115	54	입	843	-	-	-	통영시					115-42 에서 분할
37	정량동	115	55	입	1		증)1	1	통영시					115-42 에서 분할
38	정량동	115	21	전	605	339	감)4	335	통영시					115-51,52로 분할
	정량동	115	51	전	855	-	-	-	통영시					115-21 에서 분할
	정량동	115	52	전	431	-	-	-	통영시					115-21 에서 분할
39	정량동	115	14	도	2,036	1,326	증)1	1,367	국토교통부					기정 (면적변경)
40	정량동	115	5	입	1	1	-	1	통영시					기정

● **사천시 고시 제2023-34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유원지③:실안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7-377(2007.10.04.)호로 최초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22-58 (2022.03.24.)호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유원지③:실안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사 천 시 장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1. 도시관리계획(유원지③:실안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별첨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열람가능)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도시과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시과(☎055-831-316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도시관리계획(유원지③:실안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변경 (변경없음)

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실안2 유원지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22,475	-	22,475	경상남도고시 제2007-377호 (2007.10.04)	

2.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부지총괄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2,475	-	22,475	
기정	관리시설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2,956	-	2,956	
기정	휴양시설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12,523	-	12,523	
기정	편익시설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1,589	-	1,589	
기정	기타시설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267	-	267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녹 지	실안동 산62-1번지 일원	5,140	-	5,140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나. 시설총괄표 (변경)

시설명	면적(m ²)	시설규모(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당초	변경	
합 계	22,475	3,200.84	3,886.06	4,586.06	건폐율 : 30%이하 용적률 : 80%이하
관리시설	2,956	-	-	-	
휴양시설	12,523	2,900.00	3,400.00	4,100.00	
편익시설	1,589	300.84	486.06	486.06	
기타시설	267	-	-	-	
녹지	5,140	-	-	-	

다. 일반시설별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시설결정면적(m ²)	면 적 (m ²)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기정	계		-	22,475	3,200.84	3,886.06	-	건폐율 : 14.25% 용적률 : 17.30%
변경	계		-	22,475	3,200.84	4,586.06	-	건폐율 : 14.25% 용적률 : 20.41%
관리 시설	기정 1	도로	산62-8 일원	1,839	-	-	-	
	기정 2	주차장1	산64-6 일원	1,117	-	-	-	
휴양 시설	기정 3	생활숙박시설	산62-1 일원	9,054	2,600이하	3,100이하	2층이하	건폐율 : 28.72% 용적률 : 34.24%
	변경 3	생활숙박시설	산62-1 일원	9,054	2,600이하	3,800이하	2층이하	건폐율 : 28.72% 용적률 : 41.97%
	기정 4	야영장	산64-6 일원	3,469	300이하	300이하	1층이하	건폐율 : 8.65% 용적률 : 8.65%
편익 시설	기정 5	근린생활시설	산62-1일원	1,589	300.840	486.060	2층이하	건폐율 : 18.93% 용적률 : 30.59%
기타 시설 및 녹지	기정 6	기타시설	산62-1 일원	267	-	-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7	녹 지	산62-1 일원	5,140	-	-	-	

※ 변경사유 : 생활숙박시설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연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

라. 단지내기반시설(도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태	주 요 경과지	비고
기정	1	10	단지내 도로	181	도시계획도로 소로1-14	생활숙박시설 3	일반 도로	-	

마. 단지내기반시설(주차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사 용 형 태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단지내 주차장	산62-1 일원	1,117	-	1,117	주차장	

바. 단지내기반시설(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m ²)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산62-1 일원	5,140	-	5,140	

● **밀양시 고시 제2023-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4-1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410호(1977. 8. 2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4-1호선과 밀양시 고시 제 2020-373호(2020. 12. 3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2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9일

밀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 위치: 밀양시 가곡동 471-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4-1호선, 중로1-1-23호선)사업
- 명 칭: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다. 사업면적 및 규모: 회전교차로 설치 A=3,918m²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 성 명: 밀양시장(건설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055-359-5293) 및 건설과(☎ 055-359-524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합 계				8,821	2,932						
1	가곡동	470-12	도	116	1	국	국토교통부				
2	"	470-32	대	31	26	공	밀양시				
3	"	470-17	대	228	40	공	밀양시				
4	"	470-20	대	26	7	공	밀양시				
5	"	470-2	도	1,127	397	국	국토교통부				
6	"	819-10	도	2,657	312	국	국토교통부				
7	"	471-1	도	747	703	국	국토교통부				
8	"	470-21	도	304	54	국	국토교통부				
9	"	470-7	도	89	22	국	기획재정부				
10	"	470-27	잡	552	57	공	밀양시				
11	"	474-1	도	532	5	국	국토교통부				
12	"	474-2	도	10	3	국	국토교통부				
13	"	474-19	도	20	8	공	밀양시				
14	"	471-7	도	147	124	공	밀양시				
15	"	472-7	도	58	55	국	경찰청				
16	"	472-1	대	166	6	국	경찰청				
17	"	472-12	답	56	12	국	경찰청				
18	"	472	대	734	11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정호순	부산 동구	(주)부산은행	근저당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19	"	472-8	도	1	1	공	밀양시				
20	"	471-2	도	873	741	국	국토교통부				
21	"	471-5	도	243	243	공	밀양시				
22	"	471-9	도	104	104	공	밀양시				
23	"	470-9	도	899	837	공	밀양시				
24	"	473-2	도	755	10	공	밀양시				
25	"	471-8	도	77	67	공	밀양시				
26	"	471-10	도	95	67	공	밀양시				
27	"	471-6	답	131	2.5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손동우				1/2
					2.5	부산 사상구 주감로	손동준				1/2

● **밀양시 고시 제2023-64호**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무안죽구장 정비사업)

밀양시 고시 제2000-32호(2000. 10. 17.)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밀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 위치: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917번지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무안죽구장 정비사업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다. 사업면적 및 규모: 족구장 조성 2개소 A=1,300㎡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 성 명: 밀양시장(체육진흥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합 계				20,783	1,300						
1	무안면 무안리	917	체	20,783	1,300		밀양시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93) 및 체육진흥과(☎055-359-5779)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 고시 제2023-6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5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339호(1991. 9. 1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5호선과 경상남도 고시 제2009-568호(2009. 11. 19.)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6호선, 건설부 고시 제322호(1974. 9. 2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3호선, 건설부 고시 제272호(1974. 8. 14.)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3호선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9일

밀 양 시 장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 위치: 밀양시 용평동 458-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5호선, 대로1-1-6호선, 대로2-1-3호선, 중로2-1-3호선)사업
- 명 칭: 동문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다. 사업면적 및 규모: 회전교차로 설치 A=3,402㎡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 성 명: 밀양시장(건설과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 055-359-5293) 및 건설과(☎ 055-359-524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자조사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내용	
합 계				23,112	3,402						
1	용평동	458-13	도	16	1	공	밀양시				
2	"	458-10	도	14	11	공	밀양시				
3	"	458-15	답	13	13	박기주	부산 동래구 안락동		동래세무서	압류	
4	"	474	도	14,319	140	공	밀양시				
5	"	458-9	도	641	499	공	밀양시				
6	"	1000	도	423	68	국	국토부				
7	"	1001	구	1,150	211	국	국토부				
8	"	465-2	도	126	126	공	밀양시				
9	"	466-1	도	818	498	공	밀양시				
10	"	464-2	도	489	489	김두만	밀양시 내일동				
11	"	999	구	2,331	35	국	국토부				
12	"	458-22	도	90	14	공	밀양시				
13	"	458-18	도	1,044	790	공	밀양시				
14	"	458-21	답	178	141	공	밀양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소유권외의 권리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15	"	462-3	답	83	63	공	밀양시				
16	"	462-4	답	911	24	공	밀양시				
17	"	464-5	도	466	279	공	밀양시				

● 밀양시 공고 제2023-62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공사완료 공고

밀양시 고시 제2017-178호(2017. 11. 2.)로 결정되고, 밀양시 고시 제2022-56호(2022. 3. 10.)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밀 양 시 장

1. 공사완료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1040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 명 칭: 생물자원증식연구센터 유리온실 및 창업공간 조성공사
- 다. 사업면적 및 규모: A=592.06㎡ (첨단온실 증축 A=339.06㎡, 근린생활시설 증축 A=253.0㎡)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 성 명: 밀양시장(농업기술센터장)
- 마. 사업기간: 2022. 3. 10. ~ 2022. 7. 22.

2.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도시재생과(☎055-359-52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산시 고시 제2023-75호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양산시 고시 제2018-3호(2018. 1. 4)에 의거 재생사업지구 승인 고시되고, 제2020-89호(2020. 3. 19), 제2021-276호(2021.09.09.), 제2021-326호(2021.10.29.)에 의거 재생사업지구계획(변경 및 정정)이 승인 고시된 양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제39조의10 규정에 따라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 미래산업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양 산 시 장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 · 위치 ·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동, 어곡동 일원
- 면 적
 - 기정 : 1,846,898㎡

2.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목적(변경없음)

1) 기본방향

-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 성장유망산업의 전략적 도입을 통해 첨단업종으로의 전환 도모
 - 기존 주력 핵심업종과 유망 유치업종의 전략적 집적화 도모
 - 전통제조업은 관련업종 집단화와 계열화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도시공간구조에 부합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적정 이용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배치로 부족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정 규모의 개발 및 복합화 유도
 -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산업환경 조성

2) 목 적

- 산업단지 기능의 고도화 · 집적화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물리적 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개선

3. 재생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양산시장

4. 재생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6년 ~ 2027년
- 시행방법 : 재정비방식(공공기반시설 확충 : 수용 또는 사용방식)

5.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의제하려는 산업단지의 종류 : 일반산업단지

6. 산업재배치 및 업종첨단화계획(변경)

가. 기본방향(변경)

- 전통제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육성
 - 도시의 공간적 확산으로 인한 입지여건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하고 미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의 거점공간으로 전환을 유도
 - 기존 우세업종과 신성장산업을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유치업종 선정
- 기존 산업공간을 산업, 상업, 문화, 물류 및 친환경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
 - 양산일반산업단지는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용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장용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녹지, 단지내 도로, 산업·종사자 지원기능이 매우 열악함
 - 재생계획하에 산업, 상업, 문화, 물류 및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도시 개념으로 재생 추진

나. 산업재배치계획 및 업종첨단화계획(변경)

1) 업종재배치계획(변경없음)

- 장기적 계획 하에 단계적 · 점진적으로 업종재배치 유도
- 신규로 이전해오는 도시첨단산업 및 지식산업센터는 지구에 관계없이 전면 허용
- 주변지역의 환경적 영향, 기존 입주업종, 가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 업종배치
- 입주제한업종 외 업종은 해당부지 내에서 해당업종 중분류 범위내에서 업종변경 및 건축을 허용하고, 입주제한업종은 유예기간을 설정, 건축신고 총량범위 내 건축제한
 - 다만,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 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는 사업방식에 따른 재생방향에 따라 구역을 구분하고,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업종재배치 계획 수립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2) 특화업종(변경)

구 분	주요내용	산업분류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주력산업 고도화지구1)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제조업 집적화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변경 (주력산업 고도화지구2)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통제조업 집적화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지구	기정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1)	기존산업과 첨단산업, 웰니스·항노화 산업과 융복합하여 신성장업종으로 발전 유도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변경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2)	기존산업과 첨단산업, 웰니스·항노화 산업과 융복합하여 신성장업종으로 발전 유도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주요내용	산업분류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미래형 서비스 산업지구	기정 (미래형서비스 산업지구1)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종합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변경 (미래형서비스 산업지구2)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종합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 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에 위험 물품보관업 H52104는 제외

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해당 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여야 함
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의 경우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 에서 허용

3) 기존공장 유치업종(변경)

구 분	산업분류
양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유치업종 및 현재 운영 중인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 분	산업분류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첨단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4) 입주제한업종(변경없음)

구 분	입주제한업종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업종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염색업 등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약취발생업종	•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사제품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 중 약취물질 배출업종	•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운반업 및 폐수처리업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업체
기타업종 중 약취 및 특정유해 물질 배출 예상업종	•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기타 다량의 약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5)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93,500	감)2,091	1,391,409	100.0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846,565	증)2,963	849,528	61.1	녹지, 도로환원으로 증가
주력산업 고도화지구1	846,565	감)15,988	830,577	59.7	주력산업1→주력산업2
주력산업 고도화지구2	-	증)18,951	18,951	1.4	야쿠르트 부지(현황 반영)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	446,775	감)455	446,320	32.1	녹지개설로 인한 감소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1	446,775	감)55,795	390,980	28.1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2	-	증)55,340	55,340	4.0	진흥철강(수요 발생), 롯데물류(현황 반영) 부지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100,160	감)4,599	95,561	6.8	녹지, 도로개설로 인한 감소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1	100,160	감)31,645	68,515	4.9	미래형1→미래형2, 주력산업2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2	-	증)27,046	27,046	1.9	콘티넨탈(수요 발생) 부지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46,898	-	1,846,898	100.0	
산업시설용지	1,393,500	감) 2,091	1,391,409	75.3	
지원시설용지	16,513	-	16,513	0.9	
공공시설용지	428,755	증) 2,091	430,846	23.4	
주 차 장	9,842	감) 116	9,726	0.5	1%이상 특계 확보 주차장 폐지(368), 변경(369), 신설(A,B)
변 전 소	19,874	-	19,874	1.1	
폐 수 처 리 장	20,511	-	20,511	1.1	
공 원	50,851	-	50,851	2.8	3.8%이상 ~ 10%미만
녹 지	45,292	증) 7,763	53,055	2.9	녹지 4개소 신설, 2개소 감소, 1개소 증가
공 공 공 지	6,781	감) 5,898	883	0.1	공공공지315 폐지
하 천	74,551	-	74,551	4.0	
도 로	197,390	증) 342	197,732	10.7	5.1% 이상 소로1류 2개노선 변경, 소로2,3류 2개노선 신설
수도공급설비	(13)	-	(13)	-	도로중복결정
저 류 시 설	3,663	-	3,663	0.2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주)}	8,130	-	8,130	0.4	

※ 기정 :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양산시고시 제2021-276호, 2021.09.09.)

※ 주) 구조고도화사업지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별도사업예정지구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도 로(변경)

■ 도로총괄표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7	11,078	197,390	22	6,626	95,275	1	502	2,946	4	3,950	96,513
	변경	29	11,463	197,732	22	6,529	88,885	2	881	6,018	5	4,053	97,101
대로		2	3,572	92,661	-	-	-	-	-	-	2	3,572	92,661
중로		4	2,312	51,325	3	2,122	48,623	-	-	-	1	190	2,702
소로	기정	21	5,194	50,748	19	4,504	46,652	1	502	2,946	1	188	1,150
	변경	23	5,579	51,090	19	4,407	40,262	2	881	6,018	2	291	1,738
가각부				2,656	-	-	-	-	-	-	-	-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②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9,842	감) 116	9,726		
기정	366	주차장	어곡동 138-8 일원	2,040	-	2,040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기정	367	주차장	어곡동 166-1 일원	2,057	-	2,057	"	
폐지	368	주차장	유산동 212-14 일원	2,517	감)2,517	-	"	
변경	369	주차장	교동 62 일원	3,228	감)369	2,859	"	
신설	A	주차장	유산동 144-21 일원	-	증)1,792	1,792	-	
신설	B	주차장	유산동 128-16 일원	-	증)978	978	-	

2) 공간시설(변경)

① 녹 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45,292	증)7,763	53,055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52-8 일원	5,413	감) 68	5,345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52 일원	3,041	-	3,041	"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84 일원	7,344	-	7,344	"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91 일원	920	-	920	"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273-18일원	7,606	-	7,606	"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234-7 일원	11,283	-	11,283	"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196-58 일원	1,126	-	1,126	"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212-1 일원	5,478	-	5,478	"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교동 112-1 일원	1,610	증)1,232	2,842	"	
변경	10	녹지	완충녹지	교동 110 일원	1,471	감)166	1,305	"	
신설	11	녹지	완충녹지	교동 60-3 일원	-	증)2,551	2,551	-	
신설	12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212-14 일원	-	증)2,988	2,988	-	
신설	13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152-1 일원	-	증)411	411	-	
신설	14	녹지	완충녹지	유산동 148-1 일원	-	증)815	815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② 공 원(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산 공원	근린 공원	유산동 산214-1 일원	50,851	-	50,851	경고109호 ('86.5.20)	

③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781	감)5,898	883	-	
기정	314	공공공지	어곡동 175 일원	883	-	883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폐지	315	공공공지	유산동 128-5 일원	5,898	감)5,898	-	"	

3)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1	가압장	유산동 195-53	13	-	13	양산시고시 37호 ('10.3.24)	

②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21	전기공급 설비	유산동 137-62	19,874	-	19,874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③ 수질오염방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교동 90 일원	20,511	-	20,511	건고25호 ('78.3.15)	

④ 하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6	하천	지방하천 (유산천)	하천1 (어곡동)	묘지공원 88	-	6,427 (1,425)	8~65	248,187 (74,551)	양고 79호 ('11. 8. 4)	() : 구역내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⑤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유수지	지류시설	유산동 190-1 일원	-	증)3,663	3,663	양고 276호 (21.9.9)	

4)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① 우수처리계획

■ 기본방향

- 상위계획인 『하수도 설계기준(2022.1)』 및 『양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2015.4)』에 의거 배제계획 수립
- 개발구역외 유입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배제계획
- 기존 우수관망의 배수체계를 고려한 배제 계획
- 수관거는 집수유역 면적, 기존시설 및 지하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유로의 방향과 매설위치를 등 결정
- 유로연장을 최단거리로 계획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배제계획 수립
-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수립

■ 우수배제 계획

- 신설도로의 위치 및 계획고 기준으로 설계에 적용
- 기존 배수체계를 최대한 유지하여 배수구역을 구분하여 적용
- 배수구역은 3개소로 구분하였으며, 지구내 2.72ha, 지구외 1.39ha로 계획함
- 유출량산정은 합리식을 이용하여 산정함

$$- Q = \frac{1}{360} \times C \times I \times A$$

여기서, Q : 계획우수 유출량(m³/sec)
 C : 유출계수
 I : 강우강도(mm/hr)
 A : 유역면적(ha)

유역명		유역면적			총수량	비고
		외부유역	내부유역	계		
A	기정	1.27 ha	1.18 ha	2.45 ha	0.36 m ³ /s	
	변경	1.39 ha	1.08 ha	2.47 ha	0.73 m ³ /s	
B	기정	-	3.30 ha	3.30 ha	0.92 m ³ /s	
	변경	-	0.80 ha	0.80 ha	0.30 m ³ /s	
C	기정	-	0.22 ha	0.22 ha	0.06 m ³ /s	
	변경	-	0.84 ha	0.84 ha	0.14 m ³ /s	
계	기정	1.27 ha	4.70 ha	5.97 ha		
	변경	1.39 ha	2.72 ha	4.11 ha		

■ 완충저류시설 계획

◦ 사고유출수 저류기능과 비점오염원 저류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양산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용량은 11,300m³로 산정됨

$$\begin{aligned}
 \text{완충저류시설 용량} &= \text{사고유출수조 용량} && + \text{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 \\
 &= 550\text{m}^3 && + 10,740\text{m}^3 \\
 &= 11,290\text{m}^3 \approx 11,300\text{m}^3
 \end{aligned}$$

(1) 사고유출수조 용량

- 사고유출수량은 사고원수량과 소방용수량의 합

$$\begin{aligned}
 \text{사고유출수량} &= \text{사고원수량} && + \text{소방용수량} \\
 &= 120\text{m}^3 && + 430\text{m}^3 \\
 &= 550\text{m}^3
 \end{aligned}$$

가) 사고원수량

-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화학물질(사용업)허가증의 유독물저장탱크 용량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최대용량은 고려강선(주) 양산공장 106m³으로 조사되어 최대용량에 110% 이상으로 하여 사고원수량 120m³로 산정하였음

나) 소방용수량

- 양산일반산업단지 내 건축연면적 상위 6개업체 사업장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소방용수량 최대량은 넥센타이어(주)의 430m³로 산정

(2)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 용량 검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시설)의 용량산정 기준에 따라 누적유출고 5mm를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저류형) 용량은 10,740m³로 산정됨

- 비점오염저감시설 용량(저류형)

$$\begin{aligned}
 &= (\text{지정고시면적} + \text{추가면적} - \text{산지면적} - \text{제외구역}) \times \text{누가유출고}(5\text{mm}) \\
 &= (1,846,898 + 470,807 - 88,485 - 81,728) \times 0.05 \\
 &= 10,738\text{m}^3 \\
 &\approx 10,740\text{m}^3
 \end{aligned}$$

②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발생량 추정

-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배출원단위는 「제5차(2016~2017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2017. 12, 환경부」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적용함
-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처리방법별 처리량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도], 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처리현황을 적용하였음
- 폐기물 발생량추정 결과 생활폐기물 4,515kg/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52,119kg/일, 지정폐기물 50,408kg/일로 총 폐기물 306,994kg/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재활용율을 고려한 최종 처리대상량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22,395톤/년, 지정폐기물 3,445톤/년으로 추정됨

< 생활계 폐기물 발생원단위 >

구 분	발생원단위(g/인·일)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종량제	재활용
생산·제조	83.2	54.2	178.2	6.6	48.7
지원시설	52.6	18.8	47.5	3.4	12.1

자료 : 제5차(2016~2017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2017. 12, 환경부

<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

구 분	계획인구 (인)	생활폐기물 발생량(kg/일)								
		가연성				불연성			계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	소계	종량제	재활용	소계		
산업 시설	기정	12,065	1,004	653	2,150	3,807	79	587	666	4,473
	변경	12,064	1,004	653	2,150	3,807	79	587	666	4,473
지원 시설	기정	309	16	6	15	37	1	4	5	42
	변경	309	16	6	15	37	1	4	5	42
계	기정	12,374	1,020	659	2,165	3,844	80	591	671	4,515
	변경	12,374	1,020	659	2,165	3,844	80	591	671	4,515

주) 1. 계획인구는 상근인구수를 적용하였고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과 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구수
 2. 산업시설은 비가정부문(생산·제조)를, 지원시설은 비가정부문(업무시설)을 적용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사업장폐기물 발생원단위 >

구 분		발생원단위(kg/인·일)		
		사업장배출시설계		지정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C10	식품 제조업	16.680	3.450	0.096
C11	음료 제조업	10.308	14.367	0.083
C13	섬유제품 제조업	4.892	3.717	4.116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48	1.355	42.369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6.004	51.078	0.970
C2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680	5.187	2.038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86	0.421	1.854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905	1.435	0.154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698	49.284	2.048
C24	1차 금속 제조업	1.794	84.049	2.89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34	7.327	1.242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811	1.521	0.538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7.485	3.215	0.127
C28	전기장비 제조업	1.074	0.400	0.32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833	4.817	0.213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847	1.817	0.130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종합 관리업	-	-	-
J63	정보서비스업	-	-	0.001
M70	연구개발업	0.404	0.098	0.013
M71	전문서비스업	50.085	23.707	2.194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8.685	3.147	0.197
M73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523	-	0.024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36.268	0.124	6.554
평균	주력산업고도화지구	11.146	15.535	3.823
	융복합클러스터지구	5.010	3.845	5.175
	미래형서비스지구	27.995	3.868	1.283

주) 주력산업고도화지구는 C10, 11, 13, 14, 17, 20, 22~30업종의 평균, 융복합 R&D클러스터지구는 C10, 11, 13, 14, 20, 21, 26~29업종의 평균, 미래형서비스지구는 J62, 63, M 70~73, N75업종의 평균을 적용함.

자료 : 제5차(2016~2017년)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2017. 12, 환경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량 >

업 종		종사자 (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kg/일)			지정 폐기물 (kg/일)
			가연성	불연성	계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7,522	83,842	116,851	200,693	28,755
	변경	7,548	84,132	117,255	201,387	28,854
융복합 클러스터지구	기정	4,053	20,304	15,583	35,887	20,976
	변경	4,049	20,284	15,568	35,852	20,955
미래형 서비스지구	기정	490	13,718	1,895	15,613	629
	변경	467	13,074	1,806	14,880	599
계	기정	12,065	117,864	134,329	252,193	50,360
	변경	12,064	117,490	134,629	252,119	50,408

< 총 폐기물 발생량 >

구 분		생활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 정 폐기물	계
		가연성	불연성	소계	가연성	불연성	소계		
산업시설	기정	3,807	666	4,473	117,864	134,329	252,193	50,360	307,026
	변경	3,807	666	4,473	117,490	134,629	252,119	50,360	306,952
지원시설	기정	37	5	42	-	-	-	-	42
	변경	37	5	42	-	-	-	-	42
계	기정	3,844	671	4,515	117,864	134,329	252,193	50,360	307,068
	변경	3,844	671	4,515	117,490	134,629	252,119	50,360	306,994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폐기물 발생량 >

구 분		가연성	불연성	계	처리율(%)
소 각	기정	1,165	203	1,368	30.3
	변경	1,119	195	1,314	29.1
매 립	기정	400	70	470	10.4
	변경	127	22	149	3.3
재활용	기정	2,279	398	2,677	59.3
	변경	2,598	453	3,052	37.6
계	기정	3,844	671	4,515	100.0
	변경	3,844	671	4,515	100.0

자료 : 기정)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변경)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도], 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폐기물 발생량 >

구 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 폐기물	계	처리율(%)		
	가연성	불연성	소계			배출시설계	지정	
소각	기정	12,965	14,776	27,741	12,540	40,281	11.0	24.9
	변경	14,216	16,290	30,506	8,612	39,118	12.1	17.1
매립	기정	27,816	31,702	59,518	3,777	63,295	23.6	7.5
	변경	14,686	16,829	31,515	1,360	32,875	12.5	2.7
재활용	기정	77,083	87,851	164,934	31,525	196,459	65.4	62.6
	변경	82,713	94,779	177,492	38,878	216,370	70.4	77.2
기타	기정	-	-	-	2,518	2,518	-	5.0
	변경	5,875	6,731	12,606	1,511	14,117	5.0	3.0
계	기정	117,864	134,329	252,193	50,360	302,553	100.0	100.0
	변경	117,490	134,629	252,119	50,361	302,480	100.0	100.0

자료 : 1. 기정)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부·한국환경공단
 변경)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20년도], 2021,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7년도], 2018,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처리계획

- 산업단지 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 또는 증설하려는 자. 이 경우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양은 제외한다”이며, 본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면적이 1,846,898㎡이고 연간 처리대상 폐기물량이 25,840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됨
- 그러나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양산일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개발의 특성상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렵고 기존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경우 적정 위탁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처리되었던 방법인 사업장배출시 설계 및 지정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③ 에너지공급계획

(가) 열수요 예측

■ 산업시설용지 열수요

- 산업시설용지의 연간 열부하는 1,379,140Gcal/년이며, 이중 간접열은 산업시설용지의 약 59.3%인 818,115Gcal/년로 예측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산업시설용지 열수요 >

구분		부지면적 (㎡)	연료원단위 (Gcal/㎡·년)	열사용비율(%)		열수요(Gcal/년)		
				직접열	간접열	직접열	간접열	계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846,565	804	53.5	46.5	366,131	317,773	683,904
	변경	849,528				365,416	317,605	683,021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	기정	446,775	1,560	28.1	71.9	195,896	500,933	696,829
	변경	446,320				195,609	500,510	696,119
합계	기정	1,293,340	-	-	-	562,027	818,706	1,380,733
	변경	1,295,848	-	-	-	561,025	818,115	1,379,140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 06)

- 업종별 가동율과 부하율을 감안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열수요를 토대로한 업종별 간접열 최대부하 합계는 146.4Gcal/h이며, 동시부하율을 고려한 최대열부하는 117.1Gcal/h로 예측됨

< 산업시설용지 최대부하 >

구분		간접열수요 (Gcal/년)	가동률 (%)	가동시간 (hr)	평균부하 (Gcal/h)	부하율 (%)	최대부하 (Gcal/h)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지구	기정	317,773	83.0	7,272	43.7	70.1	62.3
	변경	317,605		7,272	43.7		62.3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500,933	84.6	7,410	67.6	80.3	84.2
	변경	500,510		7,410	67.6		84.1
계	기정	818,706	-	-	111.3	-	146.5
	변경	818,115	-	-	111.3	-	146.4
총 최대열부하	기정	146.5Gcal/h × 0.8(동시부하율) = 117.2Gcal/h					
	변경	146.4Gcal/h × 0.8(동시부하율) = 117.1Gcal/h					

주) 1. 가동률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에너지관리공단(2002. 09)

2. 가동시간 = 가동률 × 8,760hr/년

3. 평균부하 = 간접열 ÷ 가동시간

4. 최대부하 = 평균부하 ÷ 부하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기타시설용지 열수요 예측

◦ 기타시설용지의 연간 열수요량(난방+급탕)은 13,578Gcal/년이며, 최대열부하는 20,894Mcal/h로 예측됨

< 기타시설용지 열수요 >

구 분		연간 열 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Mcal/hr)		
		난방	급탕	계	난방	급탕	계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기정	7,842	3,209	11,051	15,265	2,061	17,326
	변경	7,482	3,062	10,544	14,564	1,966	16,530
지원시설용지	-	1,264	605	1,869	2,461	388	2,849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	623	298	921	1,212	191	1,403
폐수처리장	-	204	40	244	100	12	112
합계	기정	9,933	4,152	14,085	19,038	2,652	21,690
	변경	9,573	4,005	13,578	18,337	2,557	20,894
최대열부하	기정	-			19,015	2,652	21,614
	변경	-					

주) 동시사용률을 고려한 최대 열부하 : 21,614Mcal/h

■ 취사용 열수요 예측

◦ 취사용 열수요량은 1,239Gcal/년으로 예측됨

< 기타시설용지 취사용 연료 예측 >

구 분		연면적 (㎡)	원단위 (Mcal/㎡.년)	열수요량 (Gcal/년)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기정	350,560	2.84	996
	변경	344,464		950
지원시설용지	-	66,052	2.84	188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	32,520	2.84	92
폐수처리장	-	2,051	4.20	9
합계	기정	451,183	-	1,285
	변경	435,087	-	1,239

주) 1. 취사용 연료의 적용원단위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운영규정, 한국에너지공단(2015. 06)

2. 산업용지의 취사용 열수요는 산업시설 열원단위에 포함되었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연료 공급계획

◦ 사업지구의 도시가스 공급은 (주)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직접열 수요량 >

구분		열수요량 (Gcal/년)	석유환산톤 toe/년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366,131	36,615
	변경	365,416	36,542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기정	195,896	19,589
	변경	195,609	19,561
산업시설용지 계	기정	562,027	56,204
	변경	561,025	56,103
취사용	기정	1,285	129
	변경	1,238	124
합계	기정	563,312	56,333
	변경	562,550	56,226

< 간접열 수요량 >

구분		열수요량 (Gcal/년)	석유환산톤 toe/년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317,773	31,779
	변경	317,605	31,761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기정	500,933	50,094
	변경	500,510	50,051
산업시설용지 계	기정	818,706	81,873
	변경	818,115	81,812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기정	11,051	1,381
	변경	10,544	1,318
지원시설용지	-	1,869	234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	921	115
폐수처리장	-	244	31
합계	기정	832,791	83,634
	변경	818,359	81,843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39호)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공급기준을 분석한 결과 연료사용량 및 열밀도 항목이 도입기준에 적합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개별열원방식으로 적용

<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검토 >

항목		요건	사업지구	비고
연료사용량(toe)	기정	연간 5만 toe 이상	8.4만 toe	적합
	변경		8.2만 toe	적합
열밀도 (Gcal/k㎡.h)	기정	60 Gcal/k㎡·h 이상	75.2 Gcal/k㎡.h	적합
	변경		73.3 Gcal/k㎡.h	적합

자료: 기정 「제4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641호(2014. 12)

변경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139호(2020. 02)

④ 전력공급계획

가) 변압기 설비용량 및 최대부하

- 사업지구 전력 최대 부하는 105,683kW로 예측됨
- 산업시설용지 : 최대 부하는 78,248kW로 예측됨

< 산업시설 업종별 최대부하 >

구분		부지면적 (㎡)	전력사용량 (MWh)	평균부하 (kW)	부하율 (%)	최대부하 (kW)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846,565	431,073	49,209	70.3	70,002
	변경	849,528	430,711	49,168		69,943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기정	446,775	211,262	24,117	67.5	35,717
	변경	446,320	211,109	24,099		35,692
합계	기정	1,293,340	642,335	73,326	-	105,719
	변경	1,295,848	641,820	73,267		105,638
산업시설 합성최대부하	기정	105,719(kW) ÷ 1.35(부하율) = 78,310(kW)				
	변경	105,638(kW) ÷ 1.35(부하율) = 78,248(kW)				
산업시설 합성설비용량	기정	78,310(kW) ÷ 0.9(역율) × 1.2(여유율) = 104,413(kVA)				
	변경	78,248(kW) ÷ 0.9(역율) × 1.2(여유율) = 104,330(kVA)				

자료: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 06)

주) 1. 평균부하(kW) = 전력사용량(MWh/년) × 1000 ÷ 8760(h/년)

2. 최대부하(kW) = 평균부하(kW) ÷ 전력부하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기타시설용지 : 최대 부하는 20,914kW로 예측됨

< 기타시설용지 수요부하 >

구 분		규모 (㎡)	연면적 (㎡)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기정	100,160	350,560	140	49,078	50	24,539
	변경	95,561	334,464		46,825		23,412
지원시설용지	-	16,513	66,052	140	9,247	50	4,624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	8,130	32,520	140	4,553	50	2,277
폐수처리장(관리동)	-	20,511	2,051	100	205	50	103
폐수처리장(시설)	-	-	13,000㎡/일	102	1,326	50	663
주차장	기정	9,842	-	1.25	12	100	12
	변경	9,726			12		12
공원	-	50,851	-	0.25	13	100	13
도로	기정	197,390	-	1.25+100VA /SET(신호등)	267	100	267
	변경	197,732			267		267
합계	기정	403,397	464,183	-	64,701	-	32,498
	변경	399,024	448,087		62,448		31,371
기타시설 합성설비용량	기정	$32,498(\text{kVA}) \div 1.35(\text{부등률}) = 24,073(\text{kVA})$					
	변경	$31,371(\text{kVA}) \div 1.35(\text{부등률}) = 23,238(\text{kVA})$					
기타시설 합성최대부하	기정	$24,073(\text{kVA}) \times 0.9(\text{역률}) = 21,666(\text{kW})$					
	변경	$23,238(\text{kVA}) \times 0.9(\text{역률}) = 20,914(\text{kW})$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 06)

주) 1. 주차장, 공원, 도로는 부지면적 기준

2. 도로의 전력부하는 가로등 1.25(VA/㎡) + 100(VA/개)를 단위부하로 적용하여 산출

나) 전력사용량 예측

◆ 본 사업지구의 전력사용량은 산업시설이 641,820MWh/년, 기타시설이 81,774 MWh/년,
총 723,564MWh/년으로 예측됨

< 산업시설용지 전력사용량 >

구분		부지면적 (㎡)	전력원단위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주력산업 고도화지구	기정	846,565	507	431,073
	변경	849,528		430,744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기정	446,775	473	211,262
	변경	446,320		211,109
합 계	기정	1,293,340	-	642,335
	변경	1,295,848		641,820

자료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업무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015. 06)

< 기타시설용지 전력사용량 >

건물용도		부지면적 (㎡)	연면적 (㎡)	단위부하 (kWh/㎡·년)	전력사용량 (MWh/년)
미래형산업 서비스지구	기정	100,160	350,560	178.4	62,540
	변경	95,561	334,464		59,668
지원시설용지	-	16,513	66,052	178.4	11,784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	8,130	32,520	178.4	5,802
폐수처리장(관리동)	-	20,511	2,051	154.4	317
폐수처리장(시설)	-	-	-	-	3,136
주차장	기정	9,842	-	-	39
	변경	9,726			39
공 원	-	50,851	-	-	40
도 로	기정	197,390	-	-	957
	변경	197,732			959
합 계	기정	403,397	451,183	-	84,615
	변경	399,024	435,087		81,774

자료 :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다) 전력공급계획

- 사업지구의 전력공급은 한국전력공사 양산지사와 협의하여 사업지구 내 위치한 양산변전소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 수립

⑤ 통신공급계획

■ 기본방향

- 향후 정보화 추세를 감안하여 원활한 통신소통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및 자료전송에 대비하고 생산
 - 지원시설의 단지내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통신용량 확보

■ 현 황

- 통신선로는 KT양산지사에서 공급되고 있음

■ 통신수요량 추정 및 공급계획

- 대상지의 통신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 계획된 산업단지의 통신수요원단위를 비교하여 적정 원단위를 도출
- 통신수요에 대한 원단위는 산업시설 0.025회선/10㎡, 지원시설 0.03회선/10㎡으로 적용하여 계획
- 상기 기준에 의거 산정한 결과 산업시설 3,479회선, 지원시설 198회선, 공공시설 및 여유량은 1,103회선 총 4,780회선으로 추정
- 통신공급은 KT양산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통신수요량 추정 >

구 분		규모(㎡, 세대)	원단위	수요량(회선)	비 고
계	기정	-	-	4,797	
	변경	-	-	4,780	
산업시설	기정	1,393,500㎡	0.025회선/10㎡	3,492	
	변경	1,391,409㎡		3,479	
지원시설	-	66,052㎡	0.03회선/10㎡	198	연면적
공공시설 및 여유량	기정	-	산업·지원시설 수요량의 30%	1,107	
	변경	-		1,103	

8.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연차별 투자액		누적 투자액		비고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합계	기정	484	100.0	484	100.0	
	변경	450	100.0	450	100.0	
1단계 (2016~2019)	기정	118	24.4	118	24.4	설계비/보상비
	변경	118	26.2	118	26.2	
2단계 (2020~2023)	기정	300	62.0	418	86.4	보상비/공사비
	변경	266	59.1	376	85.3	
3단계 (2024~2027)	기정	66	13.6	484	100.0	공사비/ 민간자력개발
	변경	66	14.7	442	100.0	

9.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84,550,229.0	-	484,550,229.0	100.0	
주거지역	28,753,208.2	-	28,753,208.2	5.9	
제1종전용주거지역	54,500.0	-	54,500.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6,315.5	-	8,276,315.5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76,957.9	-	13,176,957.9	2.7
제3종일반주거지역	5,696,628.4	-	5,696,628.4	1.2
준주거지역	1,548,806.4	-	1,548,806.4	0.3
상업지역	2,915,759.0	-	2,915,759.0	0.6
중심상업지역	252,928.2	-	252,928.2	0.1
일반상업지역	2,560,614.8	-	2,560,614.8	0.5
근린상업지역	29,671.0	-	29,671.0	0.0
유통상업지역	72,545.0	-	72,545.0	0.0
공업지역	14,754,373.7	-	14,754,373.7	3.0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2,504,996.6	-	12,504,996.6	2.6
준공업지역	2,249,377.1	-	2,249,377.1	0.5
녹지지역	266,552,105.1	-	266,552,105.1	55.0
보전녹지지역	67,179,147.0	-	67,179,147.0	13.9
생산녹지지역	3,290,719.0	-	3,290,719.0	0.7
자연녹지지역	196,082,239.1	-	196,082,239.1	40.5
관리지역	19,332,854.0	-	19,332,854.0	4.0
계획관리지역	1,408,022.0	-	1,408,022.0	0.3
생산관리지역	6,899,377.0	-	6,899,377.0	1.4
보전관리지역	11,025,455.0	-	11,025,455.0	2.3
농림지역	92,159,355.0	-	92,159,355.0	19.0
자연환경보전지역	60,082,574.0	-	60,082,574.0	12.4

※ 기정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고시(양산시 고시 제2020-89호, 2020.03.19)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46,898	-	1,846,898	100.0	
공업 지역	소 계	1,785,915	-	1,785,915	96.7
	일반공업지역	1,777,785	-	1,777,785	96.3
	준공업지역	8,130	-	8,130	0.4
녹지 지역	소 계	60,983	-	60,983	3.3
	자연녹지지역	60,983	-	60,983	3.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7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산시 유산동, 어곡동 일원	1,846,898	-	1,846,898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도 로(변경)

□ 도로 총괄 조서(변경)

구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7	11,078	197,390	22	6,626	95,275	1	502	2,946	4	3,950	96,513
	변경	29	11,463	197,732	22	6,529	88,885	2	881	6,018	5	4,053	97,101
대로		2	3,572	92,661	-	-	-	-	-	-	2	3,572	92,661
중로		4	2,312	51,325	3	2,122	48,623	-	-	-	1	190	2,702
소로	기정	21	5,194	50,748	19	4,504	46,652	1	502	2,946	1	188	1,150
	변경	23	5,579	51,090	19	4,407	40,262	2	881	6,018	2	291	1,738
가각부				2,656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양산) 기정	대로	3	1	25	주간선 도로	17,845 (3,365)	대로 1-9	201호 광장	일반 도로		건고 103호 (70.3.6)		
(양산) 기정	대로	3	2	25~28	주간선 도로	846 (207)	17호 광장	대로 3-1	일반 도로		건고 103호 (70.3.6)		
(양산) 기정	중로	1	2	20~34	주간선 도로	8,357 (487)	원동면 화제리 3093	유산동 159-8	일반 도로		건고 103호 (70.3.6)		
(양산) 기정	중로	1	4	20~26	주간선 도로	8,052 (1,418)	대로 3-1	(원동)소로1-8	일반 도로		건고 103호 (70.3.6)		
(양산) 기정	중로	1	78	22.5	보조간선 도로	217	대로 3-1	북정동 263-1	일반도로		양고 16호 (18.01.18)		
(양산)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395	중로1-4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 변경	소로	1	10	10	국지 도로	114	대로3-1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가각확보 →길이,폭원 변경없음	
(양산)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628 (292)	중로1-2	소로1-72 유산동 산35-18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 기정	소로	1	17	10	국지 도로	1,085 (601)	중로1-4	중로1-4	일반 도로		경고 10호 (78.1.16)	구역내 : 601m	
(양산)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245	중로1-4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양산)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244	중로1-23	소로1-20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40	중로1-4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225	유산동 공업지역내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4	10	국지 도로	95	중로1-4 유산동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5	10	국지 도로	831 (251)	중로1-2	유산동 산24입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6	10	국지 도로	96	소로1-27 유산동	폐수종말 처리시설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7	10	국지 도로	230	대로3-1 유산동	소로 1-30 교동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8	10	국지 도로	80	대로 3-1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29	10	국지 도로	285	중로1-4	소로2-138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기정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458	소로1-27	소로1-11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양산)변경	소로	1	30	10	국지 도로	267	교동 9-27일원	소로1-11	일반 도로		경고 386호 (76.12.18)	노선 축소
(양산)변경	소로	1	49	10	집산 도로	217	대로3-1 유산동	소로1-302	일반 도로		경고 109호 (86.5.20)	가각폐지 →같이,폭원 변경없음
(양산)기정	소로	1	108	10	국지 도로	801 (169)	소로1-302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105호 (95.5.16)	
(양산)기정	소로	1	148	10	국지 도로	50 (5)	중로1-23	중로1-17	일반 도로		양고 4호 (2000.1.19)	
(양산)기정	소로	1	302	10	집산 도로	362	소로1-49	소로 1-27	일반 도로		양고 16호 (2018.1.18.)	
(양산)변경	소로	1	302	10	집산 도로	360	소로1-49	소로 1-27	일반 도로		양고 16호 (2018.1.18.)	선형변경
(양산)기정	소로	2	138	8	국지 도로	502	소로1-303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104호 (86.5.20)	
(양산)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379	대로3-1	근린공원3 경계부	일반 도로		-	노선신설
(양산)기정	소로	3	55	6	국지 도로	188	소로2-138	유산동 공업지역내	일반 도로		경고 95호 (92.3.30)	
(양산)신설	소로	3	A	5.5	국지 도로	103	소로2-A	소로1-10	일반 도로		-	노선신설
(상북)기정	중로	3	420	12 ~15	국지 도로	190	대로 3-1	상북면 소토리 1224-2	일반 도로		양고 89호 (20.3.19)	

※ ()는 구역내 연장임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양산) 소로1-10	(양산) 소로1-10	· 가각확보 : B=10m, L=114m(변경없음)	· 소로(특)3-A호선 신축에 따른 가각확보
(양산) 소로1-30	(양산) 소로1-30	· 노선 축소 : B=10m, L=458m → 267m	·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구간 폐지
(양산) 소로1-49	(양산) 소로1-49	· 가각폐지 : B=10m, L=217m(변경없음)	· 소로1-302호선 노선조정에 따른 가각폐지
(양산) 소로1-302	(양산) 소로1-302	· 선형변경 : B=10m, L=362m → 360m	·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선 조정
-	(양산) 소로2-A	· 노선신설 : B=8m, L=379m	· 유산근린공원(근린공원3)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공공공지315의 일부를 도로로 변경
-	(양산) 소로3-A	· 노선신설 : B=5.5m, L=103m	· 소로2-A의 신설에 따라 연결도로 신설

나) 주차장(변경)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66	주차장	어곡동 138-8 일원	2,040	-	2,040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기정	367	주차장	어곡동 166-1 일원	2,057	-	2,057	"	
폐지	368	주차장	유산동 212-14 일원	2,517	감) 2,517	-	"	
변경	369	주차장	교동 62 일원	3,228	감) 369	2,859	"	
신설	A	주차장	유산동 144-21 일원	-	증) 1,792	1,792	-	
신설	B	주차장	유산동 128-16 일원	-	증) 978	97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68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2,517㎡	·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 폐지
369	주차장	· 주차장 변경 · 면적 : 3,228㎡ → 2,859㎡ (감 369㎡)	· 소로1-302호선 노선조정에 따라 주차장 선형 변경
A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1,792㎡	· 주차장 368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B	주차장	· 주차장 신설 · 면적 : 978㎡	· 주차장 368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다) 공 원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유산 공원	근린 공원	유산동 산24-1 일원	50,851	-	50,851	경고109호 (‘86.5.20)	-

라) 공공공지(변경)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4	공공공지	어곡동 175 일원	883	-	883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폐지	315	공공공지	유산동 128-5 일원	5,898	감)5,898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315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5,898m ²	· 유산근린공원(근린공원3)의 접근성 향상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로 및 주차장으로 변경

마) 수 도

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11	가압장	유산동 195-53	13	-	13	양산시고시 37호 (‘10.3.24)	

바)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21	전기공급 설비	유산동 137-62	19,874	-	19,874	양산시고시 제2020-89호 (‘20.03.19)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사) 하천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면 적(㎡)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6	하천	지방하천 (유산천)	하천1 (어곡동)	묘지공원 88	-	6,427 (1,425)	8~65	248,187 (74,551)	양고 79호 ('11. 8. 4)	() : 구역내

아)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방지 시설	폐수중말처리 시설	교동 90 일원	20,511	-	20,511	건고25호 ('78.3.15)	-

자)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7	유수지	저류시설	유산동 190-1번지 일원	3,663	-	3,663	양고 276호 ('21.9.9)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93,500	감)2,091	1,391,409		-	1,393,500	감)2,091	1,391,409	
A1	A1	26,960	-	26,960	-	유산동 72번지 일원	26,960	-	26,960	분할 및 합병 가능
A2	A2	31,584	-	31,584	-	유산동 90번지 일원	31,584	-	31,584	
A3	A3	48,401	-	48,401	-	유산동 342번지 일원	48,401	-	48,401	
A4	A4	20,323	-	20,323	-	유산동 99번지 일원	20,323	-	20,323	
A5	A5	376,606	68	376,674	-	유산동 30번지 일원	376,606	68	376,674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A6	A6	112,642	-	112,642	-	유산동 333-1번지 일원	112,642	-	112,642	
A7	A7	98,658	-	98,658	-	유산동 289번지 일원	98,658	-	98,658	
A8	A8	49,746	-	49,746	-	유산동 131-1번지	49,746	-	49,746	
A9	A9	154,611	감)364	154,247	-	유산동 259번지 일원	154,611	감)364	154,247	
A10	A10	120,446	감)451	119,995	-	유산동 134번지 일원	120,446	감)451	119,995	
A11	A11	86,806	감)37,782	49,024	-	유산동 170-1번지 일원	86,806	감)37,782	49,024	
	A19	-	25,180	25,180	-	유산동 152-9번지 일원	-	25,180	25,180	
	A20	-	11,650	11,650	-	유산동 160-50번지 일원	-	11,650	11,650	
A12	A12	13,354	-	13,354	1	유산동 196-6번지 일원	13,354	감)3,642	9,712	
					2	유산동 204번지 일원	-	3,642	3,642	
A13	A13	12,545	-	12,545	-	유산동 200번지 일원	12,545	-	12,545	
A14	A14	48,400	2,155	130,058	-	교동 9-27번지 일원	48,400	2,155	130,058	
A15		79,503			-	유산동 211번지 일원	79,503			
A16	A16	65,303	-	65,303	-	유산동 159-25번지 일원	65,303	-	65,303	
A17	A17	38,773	감)4,347	34,426	-	교동 72번지 일원	38,773	감)4,347	34,426	
	A21	-	985	985	-	교동 53-2번지 일원	-	985	985	
	A22	-	815	815	-	교동 53-6번지 일원	-	815	815	
A18	A18	8,839	-	8,839	-	교동 1-4번지 일원	8,839	-	8,83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A5	유산동 30번지 일원	·가구면적 증대 - 면적 : 376,606㎡ → 376,674㎡ (증 64㎡)	·인접필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녹지1 일부해제로 인한 가구면적 증대
A9	유산동 259번지 일원	·가구면적 감소 - 면적 : 154,611㎡ → 154,247㎡ (감 364㎡)	·녹지14(A=815㎡) 신설에 따른 A9 가구면적(815㎡중 364㎡) 감소
A10	유산동 134번지 일원	·가구면적 감소 - 면적 : 120,446㎡ → 119,995㎡ (감 451㎡)	·녹지14(A=815㎡) 신설에 따른 A10 가구면적(815㎡중 451㎡) 감소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A11	유산동 170-1번지 일원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1 → A11, A19, A20 - 면적 : A11(86,806㎡) → A11(49,024㎡/감37,782㎡)	·녹지13 및 소로3-A호선 신설에 따른 가구 분할
A19	유산동 152-9번지 일원	·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1 → A11, A19, A20 - 면적 : A11(86,806㎡) → A19(25,180㎡)	·녹지13 신설에 따라 A11에서 분할하여 신규 가구번호 A19 부여
A20	유산동 160-50번지 일원	·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1 → A11, A19, A20 - 면적 : A11(86,806㎡) → A20(11,650㎡)	·소로3-A호선 신설에 따라 A11에서 분할하여 신규 가구번호 A20 부여
A12	유산동 196-6번지 일원	· 획지분할 - A12 → A12-1 / A12-2	·유치업종 계획에 따른 획지 분할
A14	교동 9-27번지, 유산동 211번지 일원	· 획지합병 - A14, A15 → A14	·소로1-30호선 노선축소에 따라 A14, A15가구번호 조정
A17	교동 72번지 일원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7 → A17, A21, A22 - 면적 : A17(38,773㎡) → A17(34,426㎡/감4,347㎡)	·녹지11 및 소로1-302호선, 주차장369번 경에 따른 가구·면적 조정
A21	교동 53-2번지 일원	·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7 → A17, A21, A22 - 면적 : A17(38,773㎡) → A21(985㎡)	·녹지11 신설에 따라 A17에서 분할하여 신규 가구번호 A21 부여
A22	교동 53-6번지 일원	· 가구번호 분할 - 가구번호 : A17 → A17, A21, A22 - 면적 : A17(38,773㎡) → A22(815㎡)	·녹지11 신설에 따라 A17에서 분할하여 신규 가구번호 A22 부여

나) 구조고도화지구(변경 없음)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130	-	8,130	-	-	8,130	-	8,130	-
B1	B1	8,130	-	8,130	-	유산동 산50-1번지 일원	8,130	-	8,130	-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513	-	16,513	-	-	16,513	-	16,513	-
C1	C1	2,204	-	2,204	-	어곡동 158번지 일원	2,204	-	2,204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C2	C2	7,369	-	7,369	-	어곡동 159-3번지 일원	7,369	-	7,369	분할 및 합병 가능
C3	C3	1,862	-	1,862	-	유산동 127-50번지 일원	1,862	-	1,862	
C4	C4	1,193	-	1,193	-	유산동 128-52번지 일원	1,192	-	1,193	
C5	C5	3,207	-	3,207	-	유산동 159-71번지 일원	3,207	-	3,207	
C6	C6	679	-	679	-	교동 53-3번지	679	-	679	

라)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및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9,842	감)116	9,726	-	9,842	감)116	9,726	-	
D1	D1	2,040	-	2,040	어곡동 138-8번지 일원	2,040	-	2,040	-	
D2	D2	2,058	감)1	2,057	어곡동 166-1번지 일원	2,058	감)1	2,057	-	
D3	-	2,516	감)2,516	-	유산동 212-14번지 일원	2,516	감)2,516	-	-	
D4	D4	3,228	감)369	2,859	교동 62번지 일원	3,228	감)369	2,859	-	
-	D5	-	1,792	1,792	유산동 144-21번지 일원	-	1,792	1,792	-	
-	D6	-	978	978	유산동 128-16번지 일원	-	978	978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D2	어곡동 166-1번지 일원	· 면적오차 정정 - 가구면적 2,058㎡→2,057㎡(감1㎡)	· 가구 D2의 토지이용 용도인 주차장367 시설면적으로 정정 (양산시고시 제2020-89호/20.3.19)
D3	유산동 212-14번지 일원	· 가구번호 폐지 - 가구면적 2,516㎡→2,516㎡(감2,516㎡)	· 가구 D3의 토지이용 용도인 주차장 368 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어 폐지
D4	교동 62번지 일원	· 면적 조정 - 가구면적 3,228㎡→2,859㎡(감369㎡)	· 소로1-302호선 노선조정에 따라 D4의 토지이용 용도인 주차장369 선형 변경 으로 인한 면적 감소
D5	유산동 144-21번지 일원	· 신규 결정 - 가구면적 0㎡→1,792㎡(증1,792㎡)	· 주차장 368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D6	유산동 128-16번지 일원	· 신규 결정 - 가구면적 0㎡→978㎡(증978㎡)	· 주차장 368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확보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A5, A9, A13~A15 , A17, A18	권장용도	-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섬유제품 제조업(C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A1~A5, A9, A12-2, A13, A14, A17, A18, A21, A22	권장용도	-
		용도	허용용도 ^{주)}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섬유제품 제조업(C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로변)

주) 단, 위 건축물용도계획에도 불구하고 가구번호 A5 용지중 유산동 106-9번지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를 허용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A6~A8, A10, A16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섬유제품 제조업(C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임주제한업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변)		

주) 단, 위 건축물용도계획에도 불구하고 가구번호 A6 용지중 유산동 333-1번지, A16 용지중 유산동 159-25번지는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를 허용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A11, A12,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 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p>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섬유제품 제조업(C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 (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 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변경	A11, A12-1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 정보서비스업(J63) - 연구개발업(M70) - 전문 서비스업(M7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 사업지원 서비스업(N75)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p>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 음료 제조업(C11) - 섬유제품 제조업(C13)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 전기장비 제조업(C2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허용용도 ^{주)}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을 위한 공장 및 부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변)		

주) 단, 위 건축물용도계획에도 불구하고 가구번호 A11 용지중 유산동 137-52번지, 137-95번지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를 허용함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입주제한업종

구 분	입 주 제 한 업 종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염색업 등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악취발생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사제품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 중 악취물질 배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운반업 및 폐수처리업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업체
기타업종 중 악취 및 특정유해 물질 배출 예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나) 구조고도화사업지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B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의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기반시설 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연구개발업(M70)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중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허용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3m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다)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C1~C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 시설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운전학원 제외)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 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4m(간선도로로변)

다) 공공시설용지(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정	D1~D4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		
변경	D1,D2, D4~D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건축물 옥상 및 지붕에 한하여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태양력발전업(D35114)
		불허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건축한계선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1~A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되는 시설의 필요규모에 따라 획지내 분할·합병 가능 • 대지 분할 최소면적 : 1,650㎡ 	산업시설용지
변경	A1~A14, A16~A20		
-	C1~C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되는 시설의 필요규모에 따라 획지내 분할·합병 가능 • 대지 분할 최소면적 : 300㎡ 	지원시설용지

5)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E1	유산동 333-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전체 • 건축용도 : 복합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및 지원시설내 입지가능 시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기반시설 설치, 가구 및 획지계획 등 세부개발계획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수립 •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은 양산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규모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5 및 시행령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E2	유산동 289번지 일원		
E3	유산동 127-27번지 일원		
E4	유산동 170-1번지 일원		
E5	유산동 159-25번지 일원		

- 주1)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추후 토지소유자 등이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전제로 세부계획을 제안하여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주2) 지역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의 분할 시행, 허용용도(단, 허용용도 중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용도-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등 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주3) 토지소유자 등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을 제안할 경우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양산시와 협의하여야 함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1)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가)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총괄조서(변경)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물(㎡)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0,851	-	50,851	-	33.2	33.2	-	33.2	33.2	100.0	-	
공원시설	4,394	734	5,128	-	33.2	33.2	-	33.2	33.2	10.1	시설율:10.1%	
도로 및 광장	도로 및 광장	3,124	241	3,365	-	-	-	-	-	6.6	-	
	휴양시설	802	감)22	780	-	-	-	-	-	1.6	-	
	운동시설	-	-	-	-	-	-	-	-	-	-	
	편익시설	468	515	983	-	33.2	33.2	-	33.2	33.2	1.9	-
	조경시설	-	-	-	-	-	-	-	-	-	-	-
녹 지	46,457	감)734	45,723	-	-	-	-	-	-	89.9	녹지율:89.9%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기정	변경	변경후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유산동 산4-1번지 일원		50,851	-	50,851	-	33.2	33.2	-	33.2	33.2	
공원시설				4,394	734	5,130	-	33.2	33.2	-	33.2	33.2	시설율:10.1%
도로 및 광장	소 계			3,124	241	3,365	-	-	-	-	-	-	
	-	도 로		3,124	241	3,365	-	-	-	-	-	-	8개노선→12개노선 신설4개, 변경4개
	①	철 탑		-	-	-	-	-	-	-	-	-	
	-	철 탑		-	-	-	-	-	-	-	-	-	
	②	등, 평의자		-	-	-	-	-	-	-	-	-	19개→3개
휴양 시설	소 계			802	감)22	780	-	-	-	-	-	-	
	2-1	휴게시설		140	감)140	-	-	-	-	-	-	-	-
	⑥	앉음벽		-	-	-	-	-	-	-	-	-	2개
	-	앉음벽		-	-	-	-	-	-	-	-	-	-
	2-2	휴게시설		342	감)231	111	-	-	-	-	-	-	-
	②	파고라		-	-	-	-	-	-	-	-	-	-
	-	파고라		-	-	-	-	-	-	-	-	-	-
	③	등, 평의자		-	-	-	-	-	-	-	-	-	1개
-	등, 평의자		-	-	-	-	-	-	-	-	-	-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시설 구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축물(㎡)						수량
							건축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2-3	휴게시설		320	감)63	257	-	-	-	-	-	-	-
	②	파고라		-	-	-	-	-	-	-	-	-	1개
	-	파고라		-	-	-	-	-	-	-	-	-	-
	③	등, 평의자		-	-	-	-	-	-	-	-	-	4개
	-	등, 평의자		-	-	-	-	-	-	-	-	-	-
	④	야외운동기구		-	-	-	-	-	-	-	-	-	3개
	⑤	전망테크		-	-	-	-	-	-	-	-	-	1개
	⑤	전망테크		-	-	-	-	-	-	-	-	-	-
	2-4	휴게시설		-	309	309	-	-	-	-	-	-	-
	2-5	휴게시설		-	28	28	-	-	-	-	-	-	-
	2-6	휴게시설		-	28	28	-	-	-	-	-	-	-
2-7	휴게시설		-	47	47	-	-	-	-	-	-	-	
편익 시설	소 계			468	515	983	-	33.2	33.2	-	33.2	33.2	-
	3-1	주차장		468	318	786	-	-	-	-	-	-	-
	①	철 탐		-	-	-	-	-	-	-	-	-	2개
	①	철 탐		-	-	-	-	-	-	-	-	-	-
	3-2	화장실		-	197	197	-	33.2	33.2	-	33.2	33.2	1개 / 1층
녹지 및 기타	소 계			46,457	감)734	45,723	-	-	-	-	-	-	녹지률 : 89.9%
	-	녹 지		46,457	감)734	45,723	-	-	-	-	-	-	-
	①	철 탐		-	-	-	-	-	-	-	-	-	2개

다)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비고
합계	기정				1,185	3,124	-	-	-
합계	변경				1,280	3,365	-	-	-
기정	소로	3	1	5	60	303	소로 1-10	지구계 서측	진입로
변경	소로	3	1	6	58	347	3-1 주차장	지구계 서측	진입로
기정	소로	3	2	5	196	982	3-1주차장	유산동 24-2입	진입로
변경	소로	3	2	5	177	885	3-1 주차장	소로 2-A	진입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기정	소로	3	3	3	71	209	2-2 휴게시설	진입로 3-2	산책로
변경	소로	3	3	2~3	22	254	2-2 휴게시설	3-1 주차장	산책로
기정	소로	3	4	3	241	361	산책로 3-3	유산동 50-1	산책로
기정	소로	3	5	3	56	142	산책로 3-4	2-3 휴게공간	산책로
기정	소로	3	6	2	147	306	유산동 50-1	2-3 휴게공간	진입로
기정	소로	3	7	2	38	73	진입로 3-6	유산동 50-1	산책로
기정	소로	3	8	2	376	748	2-2 휴게시설	진입로 3-6	산책로
변경	소로	3	8	2	379	753	2-2 휴게시설	진입로 3-6	산책로
신설	소로	3	9	1.5	73	110	2-3 휴게시설	산책로 3-8	산책로
신설	소로	3	10	1.5	72	107	진입로 3-2	산책로 3-8	산책로
신설	소로	3	11	1.5	13	19	3-1 주차장	지구계 서측	산책로
신설	소로	3	12	2	4	8	진입로 3-1	3-2 화장실	진입로

Ⅰ 민간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형태 및 공간활용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건축지침과 공공시설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의 적용은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과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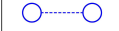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본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관련조례에 따른다.
- ②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다.
- ③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된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설계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 ④ 지침의 일부 규제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과 서로 다를 경우 이들 중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 ⑤ 대지 상호간의 상이한 시행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필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본 지침과 시행지침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시행지침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⑦ 민간부문 시행지침은 민간사업 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지침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단, 민간부문사업 시행중 공공부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⑧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건폐율”이라 함은 건축법 제47조(건축물의 건폐율)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3.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당해 획지에서 건축 가능하도록 지정된 건축의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 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필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7.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8.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9.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어야 한다.)
10.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1.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2.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3. “대지 분할 최소면적”이라 함은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로 분할할 수 없는 면적을 말한다.
14. “특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3-15-1에 따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 “공동개발”이라 함은 2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도면표시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가 상이한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제6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준용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적용하되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지구단위계획 내용

제1절 산업시설용지

제7조 (건축물의 용도 : 규제사항)

- ①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예시)

구 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중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입주제한업종

구 분	입주 제한 업종
용수다소비 및 입주부적격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탄, 시멘트, 레미콘, 아스팔트 및 포장재료 제조업, 임가공도축업, 원피가공업, 원모피처리업, 염색업 등
화합물, 화학제품 및 약취발생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살균·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사제품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 중 악취물질 배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및 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축산폐기물 수집·처리·운반업 및 폐수처리업 •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업체
기타업종 중 악취 및 특정유해 물질 배출 예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② 표준산업분류라 함은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표준 산업분류를 말한다.
 ③ 불허용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상의 허용용도에도 불구하고 건축할 수 없다.

제8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 규제사항)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 (예시)와 같다.

(예시)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높이)	350%	-
건폐율 이하	-	80%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80%이하로 한다.
- ③ 용적률은 350%이하를 적용한다.
-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규제사항)

- ① 건축물은 그 크기로 인하여 위압감이 크므로 건물과 설비를 분산배치 하도록 하며, 지붕이나 벽면의 분절화를 통하여 위압감을 줄이도록 한다.
- ② 건축부지와 도로경계부가 접할 경우 그 사이에 반드시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토록하며, 일체감 있는 식재 등으로 부드럽게 구획한다.
- ③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2. 도면표시방법

건축한계선 : ※ 식별요령 : 청색 점선으로 표기(규제)

제10조 (건축물의 색채 : 권장사항)

- ①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써 연속성이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자연경관, 건축물과의 조화 및 과도한 이미지 최소화를 위해高明도, 저채도의 무채색(N), YR, B 계열 적용 • 인위적인 도색 페인트 등의 적용 금지 및 재료 자체의 색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련된 이미지 표출을 위해 저·중명도, 중·고채도의 B계열 적용 • 옥탑부를 제외한 입면부 5%내외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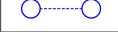
제11조 (필지의 분할과 합병 : 규제사항)

① 필지는 최소개발규모는 1,650㎡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단, 가구번호 A21, A22는 제외한다)

② 필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합병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2조 (자율적공동개발 : 권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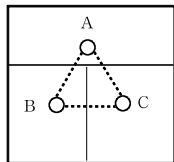
① 공동개발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 도면표시 : 공동개발(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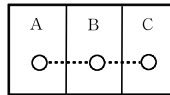
②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공동개발의 표기가 없더라도 당해 대지와 연결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공동개발이 가능하다.

③ 자율적공동개발은 아래 적용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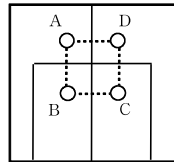
계 획 지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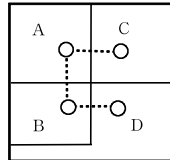
[적용기준1]
 ① B+C 공동개발
 ②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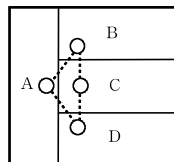
[적용기준2]
 ① A+B 또는 B+C 공동개발
 ② A+B+C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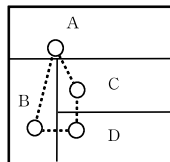
[적용기준3]
 ① A+B 공동개발
 ② C+D 공동개발
 ③ (A+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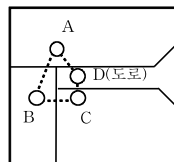
[적용기준4]
 ① A+C 공동개발
 ② B+D 공동개발
 ③ (A+C)+(B+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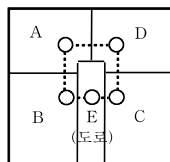
[적용기준5]
 ① B+C 또는 C+D 공동개발
 ②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B+C+D)+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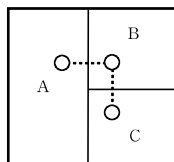
[적용기준6]
 ① C+D 공동개발
 ② (C+D)+B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C+D)+B}+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적용기준7]
 ① B+C 공동개발
 ②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B+C)+D}+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적용기준8]
 ① A+B 공동개발
 ② C+D 공동개발
 ③ (A+B)+E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④ (C+D)+E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⑤ {(A+B)+E}+(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③만족)
 ⑥ {(C+D)+E}+(A+B) 공동개발
 (선행조건:④만족)



[적용기준9]
 ① B+C 공동개발
 ②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 상기 적용예시는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이 상기 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을 토대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1. 자율적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2. 자율적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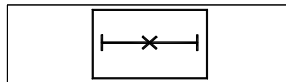
제13조 (담장의 형태 : 규제 및 권장사항)

- ① 전통적인 산업시설은 그 외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담장을 의무화한다.
- ② 가시철조망이나 유리조각보다는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한다.
- ③ 담의 색채나 재료의 유형화를 통하여 구역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부여하도록 한다.
- ④ 보행자도로, 공원·녹지 등과 면한 담장은 1m 이하의 친환경적 재료나 수목을 이용한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이용자의 통행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 규제사항)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도로모퉁이에서 10m 이내인 지역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③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의 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2.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



※ 식별요령 : 검정색으로 표기(규제)

제2절 지원시설용지

제15조 (건축물의 용도 : 규제사항)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구 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제6호의 종교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부대시설 -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운전학원, 정비공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6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 규제사항)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최고층수
건폐율	최저층수

400	-
80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80%이하로 한다.
- ③ 용적률은 400%이하를 적용한다.
-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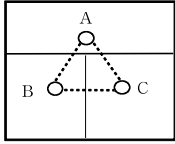
제17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규제사항)

-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 ③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와 보행자전용도로변과의 고저 차는 2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형의 부득이한 이유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변 필지의 경우 맞벽건축을 통해 연속된 가로벽면을 형성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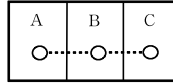
제18조 (자율적공동개발 : 권장사항)

-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공동개발의 표기가 없더라도 당해 대지와 연접한 토지소유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공동개발이 가능하다.
- ② 자율적공동개발은 아래 적용원칙 및 예시에 따라 처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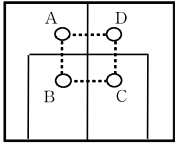
계 획 지 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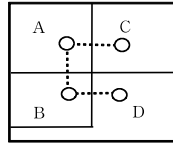
- [적용기준1]
 ① B+C 공동개발
 ②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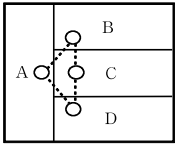
- [적용기준2]
 ① A+B 또는 B+C 공동개발
 ② A+B+C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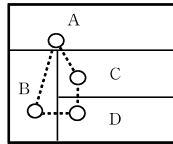
- [적용기준3]
 ① A+B 공동개발
 ② C+D 공동개발
 ③ (A+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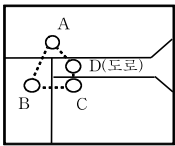
- [적용기준4]
 ① A+C 공동개발
 ② B+D 공동개발
 ③ (A+C)+(B+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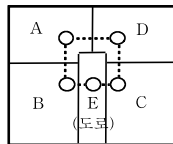
- [적용기준5]
 ① B+C 또는 C+D 공동개발
 ②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B+C+D)+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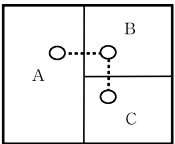
- [적용기준6]
 ① C+D 공동개발
 ② (C+D)+B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C+D)+B)+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 [적용기준7]
 ① B+C 공동개발
 ② (B+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③ {(B+C)+D)+A 공동개발
 (선행조건:② 만족)



- [적용기준8]
 ① A+B 공동개발
 ② C+D 공동개발
 ③ (A+B)+E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④ (C+D)+E 공동개발
 (선행조건:①,② 만족)
 ⑤ {(A+B)+E)+(C+D) 공동개발
 (선행조건:③만족)
 ⑥ {(C+D)+E)+(A+B) 공동개발
 (선행조건:④만족)



- [적용기준9]
 ① B+C 공동개발
 ② (B+C)+A 공동개발
 (선행조건:① 만족)

※ 상기 적용예시는 일반적인 사항을 표기한 것으로서 실제 현황이 상기 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 기준을 토대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공동개발이라 하더라도 공동개발을 불허한다.

1. 자율적공동개발에 의한 대지의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2. 자율적공동개발에 의해 인접필지가 맹지가 되거나 부정형하게 되는 경우

제19조 (건축물의 색채 : 권장사항)

-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高明도, 저채도의 무채색(N), YR계열의 색채 적용 • 인위적인 도색 페인트 등의 적용 금지 및 재료 자체의 색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明도, 저채도의 무채색(N), YR, BG계열의 색채 적용 • 인위적인 도색 페인트 등의 적용 금지 및 재료 자체의 색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산시의 정체성을 담은 중심적인 산업단지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저·중高明도, 저·중채도의 BG계열 적용 • 옥탑부를 제외한 입면부 5%내외로 적용(원색의 화려한 색채 적용 금지)

제20조 (획지분할에 관한 사항 : 규제사항)

- ① 지원시설용지는 도입되는 시설의 필요규모에 따라 획지분할이 가능하다.
- ② 단, 소규모 필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지 분할 최소면적은 300㎡이하로 설정한다.
- ③ 필지의 합병은 공동개발계획을 반영하여 합병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1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 규제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차장 : 규제사항)

지원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양산시 조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 규제사항)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양산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24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규제사항)

-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1개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이용 간판(단독형 및 연립형)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 ② 가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는 간결한 경관형성을 위해 우측 상단에 가로형 간판 1개소 설치를 권장하고,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에서 4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지원시설용지 건축물에는 1층부 해당 업소당 1개설치를 원칙으로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를 권장하고, 입체형 문자(가로×세로 각 60센티미터), 세로 폭 30센티미터 이내에 바 활용 가능토록 한다.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 5제곱미터이내, 합계 1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에서 6미터 이내, 개별 간판 면적 0.8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양산시 관련 조례 등에 따른다.

제25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 규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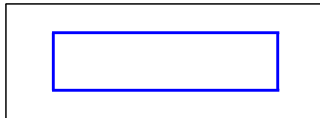
-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제6장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제26조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 ① 현재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인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향후 토지소유자 등이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전제로 세부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특별계획구역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제25조 하단의 표를 참조한다.
- ③ 도면표시

특별계획구역
(파란색)



제27조 (특별계획구역의 계획 및 운용)

- ① 토지소유자 등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다.
- ② 건축용도는 복합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및 지원시설내 입지가능 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며, 필요시 기반시설의 설치, 가구 및 획지계획 등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변경 계획할 수 있다.
- ③ 토지소유자 등 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 추진 시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을 양산시와 협의하여 계획 및 이행한다.

<특별계획구역 및 계획내용>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E1	유산동 333-1번지 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해당 특별계획구역의 전체 • 건축용도 : 복합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의 첨단업종 및 지원시설내 입지가능 시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400% 이하 • 기반시설 설치, 가구 및 획지계획 등 세부개발계획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수립 • 용도지역 변경(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에 따른 공공기여방안은 양산시와 협의를 거쳐 개발규모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법」 제39조의15 및 시행령 제44조의13(개발이익의 재투자)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E2	유산동 289번지 일원		
E3	유산동 127-27번지 일원		
E4	유산동 170-1번지 일원		
E5	유산동 159-25번지 일원		

- 주1)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은 추후 토지소유자 등이 용도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을 전제로 세부계획을 제안하여 추진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주2) 지역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의 분할시행, 허용용도(단, 허용용도 중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용도)등 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주2) 지역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양산시와 협의하여 특별계획구역의 분할시행, 허용용도(단, 허용용도 중 입주제한업종을 제외한 용도- 재생사업지구계획[양산시 고시 제2020-89호(2020.3.19.)] 이전 관리기본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19-468호(2019.10.31.)]에 따라 입주한 업종은 재생사업지구계획 이후 관리기본계획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함)등 계획 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주3) 토지소유자 등은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을 제안할 경우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양산시와 협의하여야 함

제7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28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축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제8장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관한 사항

제29조 (범죄예방환경설계의 목적)

- ①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조명과 조경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라 함은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말한다.

제30조 (범죄예방환경설계의 기본방향)

- ① 본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기준 및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경상남도 조례 제4247호) 제3조의 기본원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거나 주변 시설물을 배치할 때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③ 조경, 울타리, 표지 등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설계한다.
- ④ 건축물이나 공원 등을 설계할 때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 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한 눈부심방지(glare-free)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공공부문에 관한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① 본 공공부문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양산산업단지 재생지구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시설물, 공원 및 녹지,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 등 공공(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문을 말한다.

제2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 ① 지침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나 조례, 편람, 지침 등에 따른다.
- ② 지침의 일부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 법규의 허용 범위에서 동 시행 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 ③ 단, 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동 지침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시설별 시행지침

[도로 시설물]

제3조 (적용범위)

-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 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본 지침을 을 따르며,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조 (도로 설계기준)

- ① 차선폭은 주행차선이 3m~3.25m, 보도측 차선은 3.5m~3.75m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 유형별 폭원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5조 (과속방지 시설)

-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② 교차로 부근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속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설치 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④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20m 내외)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 ⑤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 색으로 요철 포장을 한다.

[포 장]

제6조 (기본원칙)

- ① 포장재의 형태 및 규격은 가로 전체의 통일성과 주변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유도한다.
- ② 공공부문의 포장 원칙은 통일성과 조화의 유도와 민간부문의 포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안을 제시하며 민간부문의 개별포장 기준보다는 우선순위를 둔다.

- ③ 가능한 구간별 장소별 인지도를 부각시키고 전체적 통일감과 이미지 제고를 유도한다.

제7조 (재료선정 기준)

- ① 재료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 높고 견고한 재료
 2. 내구성과 마모성이 있으며, 자연배수와 세척 및 수선상 용이한 재료
 3. 보행자 하중은 물론이고 중차량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료 권장
 4. 질감이나 색채가 아름답고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물성에 변화가 없는 재료
 5. 각 가로의 정체성(identity) 및 특수한 환경에 부합되는 특성 있는 재료
 6. 시공과 개수가 용이하고, 염가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재료

제8조 (시설표지)

- ① 시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제9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 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구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가로식재]

제10조 (가로수 수종선택)

- ① 가로의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 ③ 이식이 용이하고 성장속도가 빠르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해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레르기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11조 (가로수 식재방법)

- ① 도로폭 15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원보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 ④ 정류장 설치 구역에 교통관련 시설물 및 안전 시설물 외의 시설물 식재 금지하고 보행로에 정류장 10m 이내에 풀이나 화단을 배치하여 정차하는 곳에 자연적 요소 식재 설치한다.

제12조 (완충녹지)

- ① 도로변 완충녹지는 상록수와 활엽수를 혼식하여 4계절 변화감 있는 녹지경관을 연출하도록 하고, 하부식재를 통하여 소음과 시각적 완충효과를 도모하도록 한다.

[가로 장치물]

제13조 (안내시설물)

-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은 통합 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 진입부에 집단 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정보의 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 하여 효율적 안내체계 구축한다.
- ③ 다른 가로 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한다.
- ⑤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의 독자적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한다.

제14조 (가로시설물)

-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 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 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한다.
-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 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 설치하여 보도 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 ④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하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방호울타리(펜스)를 설치한다.
- 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반도로 경계부근에 설치하며 1-2m정도 간격으로 배치하여 차량통행을 막도록 한다.
- ⑥ 교차로 및 횡단보도 각각부분 보도로의 무단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고 비상시 차량진입을 위해 이동식을 권장한다.

[조 명]

제15조 (가로등 설치방식)

- ① 가로등 시설은 도로의 성격, 기능, 위계(폭원)에 따라 적합한 조도, 배열방식, 높이, 색상 등을 달리한다.
- ② 구역 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 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제16조 (가로등 설치기준)

-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③ 가로변에는 일정한간격으로 설치하며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횡단보도 등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과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 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 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	교동	3-8	도	1,100	994	-	경상남도		
2	교동	5	장	12,831	49	-	주식회사원립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95 9층(서초동 원립빌딩)	
3	교동	5-1	장	4,237	948	-	주식회사원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립빌딩 9층	
4	교동	5-2	장	11,038	230	-	주식회사원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립빌딩 9층	
5	교동	5-8	장	1,117	499	-	주식회사원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립빌딩 9층	
6	교동	5-9	장	43	25	-	주식회사원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2-6 원립빌딩 9층	
7	교동	9-16	도	610	116	610	경상남도		
8	교동	9-19	잡	587	103	-	경상남도		
9	교동	44-1	답	356	18	-	씨에이오토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3길 37 (교동)	
10	교동	45-1	대	107	149	-	이경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501동 1603호(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	
11	교동	45-2	전	498	224	-	이경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03 501동 1603호(구서동 구서동롯데캐슬골드)	
12	교동	45-3	대	48	-	48	양산시		
13	교동	45-4	전	90	-	90	양산시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4	교동	46	대	563	261	-	씨에이오토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3길 37(교동)	
15	교동	46-1	대	75	-	75	양산시		
16	교동	53-1	답	728	684	688	양산시		
17	교동	53-3	잡	677	-	1	하상호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중앙로 10 (북정동)	
18	교동	53-6	장	818	9	-	김석태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8 107동 203호 (화명동 화명푸르지오헤리센트)	
19	교동	53-7	장	44	-	29	김석태	부산광역시 북구 산성로 28 107동 203호 (화명동 화명푸르지오헤리센트)	
20	교동	56-2	대	80	71	72	양산시		
21	교동	59-1	도	409	49	-	경상남도		
22	교동	62	답	1,826	1,465	1,569	양산시		
23	교동	64	답	325	233	325	양산시		
24	교동	65	전	169	169	169	양산시		
25	교동	66	묘	767	448	767	양산시		
26	교동	80	장	766	766	766	양산시		
27	교동	104	답	545	271	545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물금면 어곡리 540	
28	교동	110	잡	1,057	512	-	쿠쿠전자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 14(교동)	
29	교동	110-1	잡	230	-	230	양산시		
30	교동	110-2	잡	284	-	284	양산시		
31	교동	112-1	전	345	477	-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물금면 어곡리 540	
32	교동	112-2	전	478	-	478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물금면 어곡리 540	
33	교동	114-1	전	45	24	45	주식회사한울 에이치엔피이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 19 (교동)	
34	교동	114-3	장	8,257	2	-	주식회사한울 에이치엔피이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 19 (교동)	
35	교동	114-4	전	188	-	188	양산시		
36	교동	114-5	장	5	-	5	양산시		
37	교동	115-2	전	126	-	126	양산시		
38	교동	117-12	장	139	-	139	양산시		
39	교동	963-1	도	365	240	133	국(기획재정부)		
40	교동	965-1	장	2	2	2	경상남도		
41	교동	965-18	도	133	285	-	국(기획재정부)		
42	교동	965-21	도	270	-	90	국(기획재정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43	교동	산41	임	844	1,287	-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어곡리540	
44	교동	산41-1	임	1,139	-	1,140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어곡리540	
45	교동	산42-2	임	12,165	1,229	-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물금면 어곡리 540	
46	교동	산42-4	임	1,212	-	1,212	경주최씨 양산종친회	물금면 어곡리 540	
47	북정동	263-1	장	11,233	292	-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11길 11(유산동)	
48	북정동	263-41	장	10	5	-	동아타이어공업 주식회사	유산리 90	
49	북정동	263-45	장	292	-	292	양산시		
50	북정동	263-51	장	5	-	5	양산시		
51	북정동	832-1	제	30	19	19	국(국토교통부)		사용
52	북정동	832-7	제	152	78	78	국(환경부)		사용
53	북정동	834-1	제	284	2	2	국(국토교통부)		사용
54	북정동	834-2	제	1,673	839	838	국(국토교통부)		사용
55	북정동	842	천	98,565	746	746	국(환경부)		사용
56	북정동	848-14	도	23,294	375	375	국(국토교통부)		사용
57	상북면 소토리	518-1	답	4	13	-	주식회사센푸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소주동)	
58	상북면 소토리	518-6	수	227	19	-	주식회사센푸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소주동)	
59	상북면 소토리	518-8	전	31	19	-	유숙련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48 101동 1001호 (교동 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	
60	상북면 소토리	518-9	답	27	-	27	양산시		
61	상북면 소토리	518-11	수	19	-	19	양산시		
62	상북면 소토리	518-12	전	10	-	10	유숙련	경상남도 양산시 회현1길 48 101동 1001호 (교동 교동일동미라주아파트)	
63	상북면 소토리	519	잡	41	98	-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64	상북면 소토리	519-1	수	18	16	-	정한유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1199	
65	상북면 소토리	519-8	잡	98	-	98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66	상북면 소토리	519-10	수	16	-	16	정한유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1199	
67	상북면 소토리	1224-2	도	822	35	-	국(농림축산식품부)		
68	상북면 소토리	1224-4	도	36	-	36	국(농림축산식품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69	상북면 소토리	1226-1	답	2,220	230	-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70	상북면 소토리	1226-2	답	1,781	269	-	주식회사젠푸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소주동)	
71	상북면 소토리	1226-3	답	866	131	-	김선희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엘지메트로시티 116-1502	
72	상북면 소토리	1226-4	답	869	136	-	김선희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엘지메트로시티 116-1502	
73	상북면 소토리	1226-5	답	1,751	283	-	김선희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엘지메트로시티 116-1502	
74	상북면 소토리	1226-6	답	1,761	290	-	주식회사젠푸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소주동)	
75	상북면 소토리	1226-7	답	2,368	297	-	김선희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엘지메트로시티 116-1502	
76	상북면 소토리	1226-15	답	423	53	-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77	상북면 소토리	1226-18	답	750	83	-	김선희	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엘지메트로시티 116-1502	
78	상북면 소토리	1226-20	도	362	78	-	국(기획재정부)		
79	상북면 소토리	1226-21	구	104	333	-	국(농림축산식품부)		
80	상북면 소토리	1226-22	답	233	-	233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81	상북면 소토리	1226-23	답	269	-	269	양산시		
82	상북면 소토리	1226-24	답	132	-	132	양산시		
83	상북면 소토리	1226-25	답	133	-	133	양산시		
84	상북면 소토리	1226-26	답	279	-	279	양산시		
85	상북면 소토리	1226-27	답	289	-	289	양산시		
86	상북면 소토리	1226-28	답	382	-	382	양산시		
87	상북면 소토리	1226-29	답	53	-	53	한종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우성아파트 7-1002	
88	상북면 소토리	1226-30	도	80	-	80	국(기획재정부)		
89	상북면 소토리	1226-31	구	339	-	339	국(농림축산식품부)		
90	상북면 소토리	1243	구	315	52	-	국(기획재정부)		
91	상북면 소토리	1243-2	구	54	-	54	국(기획재정부)		
92	상북면 소토리	1246-1	답	163	261	-	주식회사젠푸드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회야로 45-73(소주동)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93	상북면 소토리	1246-17	답	292	-	292	양산시		
94	어곡동	97-2	도	154	40	40	양산시		
95	어곡동	138-5	구	817	390	390	경상남도		
96	어곡동	138-8	도	1,190	1,081	1,164	양산시		
97	어곡동	148	도	6,109	404	404	양산시		
98	어곡동	157-3	도	3,577	260	260	경상남도		
99	어곡동	157-6	구	703	703	703	경상남도		
100	어곡동	157-16	도	5,442	6	-	양산시		
101	어곡동	157-19	구	198	198	198	경상남도		
102	어곡동	157-21	도	115	115	115	양산시		
103	어곡동	162-2	구	13	13	13	경상남도		
104	어곡동	166-1	구	248	248	248	경상남도		
105	어곡동	167	구	33	33	33	경상남도		
106	어곡동	175	장	462	394	408	양산시		
107	어곡동	175-12	도	156	156	156	양산시		
108	어곡동	221-1	구	20	20	20	경상남도		
109	어곡동	225-1	구	13	13	13	경상남도		
110	어곡동	226-1	구	211	211	211	경상남도		
111	어곡동	227-4	구	326	323	326	경상남도		
112	어곡동	228-4	대	7	7	7	이두호	양산군 물금면 어곡리 218	
113	어곡동	2008-10	구	60	1	1	국(농림축산식품부)		
114	어곡동	2008-11	구	24	24	24	국(농림축산식품부)		
115	어곡동	2012-2	천	75	58	58	국(국토교통부)		
116	어곡동	2012-6	도	354	1	1	국(국토교통부)		
117	어곡동	2013-12	도	18	12	12	국(기획재정부)		
118	어곡동	2013-13	구	61	61	61	국(기획재정부)		
119	어곡동	2013-14	도	7	4	4	국(기획재정부)		
120	어곡동	2013-16	도	6	4	4	국(기획재정부)		
121	어곡동	2013-17	구	12	12	12	국(기획재정부)		
122	어곡동	2013-18	도	13	7	7	국(기획재정부)		
123	어곡동	2013-19	구	51	51	51	국(기획재정부)		
124	어곡동	2013-21	구	43	42	42	국(기획재정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25	유산동	127-27	장	65,325	-	7	고려제강 주식회사	부산시 남구 망미동 475	
126	유산동	127-43	수	1,261	897	897	국(환경부)		사용
127	유산동	127-51	수	40	40	40	국(환경부)		사용
128	유산동	127-85	답	9	9	9	양산시		
129	유산동	127-86	도	16	16	16	양산시		
130	유산동	127-87	수	55	55	55	국(환경부)		사용
131	유산동	127-91	수	55	55	55	국(환경부)		사용
132	유산동	128-5	수	1,197	1,195	1,197	국(환경부)		사용
133	유산동	128-16	수	294	294	294	국(환경부)		사용
134	유산동	128-19	수	3	3	3	박순덕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마을길 22-21(어곡동)	
135	유산동	128-25	도	47	47	47	양산시		
136	유산동	128-27	수	145	145	145	국(환경부)		사용
137	유산동	128-30	도	73	73	73	양산시		
138	유산동	144-21	수	337	337	337	국(환경부)		사용
139	유산동	144-25	도	153	153	153	양산시		
140	유산동	149-4	수	10	10	10	국(환경부)		사용
141	유산동	149-21	수	13	13	13	국(환경부)		사용
142	유산동	149-23	수	185	185	185	양산시		
143	유산동	149-24	수	496	496	496	양산시		
144	유산동	149-26	수	440	440	440	양산시		
145	유산동	149-28	수	175	175	175	양산시		
146	유산동	149-29	수	6	6	6	경상남도		
147	유산동	149-30	수	122	122	122	양산시		
148	유산동	149-33	도	408	408	408	양산시		
149	유산동	152-1	장	1,581	1,299	1,380	경상남도		
150	유산동	152-3	수	7	7	7	경상남도		
151	유산동	152-8	장	11,091	-	2	주식회사 대현상공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273-10	
152	유산동	156-13	도	157	157	157	양산시		
153	유산동	156-18	도	540	-	540	경상남도		
154	유산동	160-50	장	3,315	-	6	성림부역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5길 8(유산동)	
155	유산동	162-21	천	1,334	790	799	국(환경부)		사용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56	유산동	162-23	수	1,517	18	18	국(환경부)		사용
157	유산동	162-131	제	848	192	192	국(기획재정부)		사용
158	유산동	162-139	임	47	1	1	국(기획재정부)		
159	유산동	162-141	천	1,728	620	619	국(환경부)		사용
160	유산동	168-121	수	522	517	517	국(환경부)		사용
161	유산동	168-132	도	176	176	176	양산시		
162	유산동	170-9	장	24	24	24	국(국토교통부)		
163	유산동	190-1	장	2,897	2,897	2,897	양산시		
164	유산동	212-14	잡	2,370	2,370	-	양산시		
165	유산동	249-16	장	1,885	1,885	1,885	양산시		
166	유산동	249-27	장	787	787	787	양산시		
167	유산동	249-28	장	2,206	2,206	2,206	경상남도		
168	유산동	273-2	장	13,460	54	703	경상남도		
169	유산동	476	천	106,637	973	973	국(국토교통부)		사용
170	유산동	476-62	제	45	16	16	국(국토교통부)		
171	유산동	485-10	수	67	67	67	국(환경부)		사용
172	유산동	486-13	도	21	21	21	양산시		
173	유산동	486-15	수	26	26	26	국(환경부)		사용
174	유산동	490-1	구	76	76	76	국(기획재정부)		
175	유산동	490-3	구	50	32	39	국(기획재정부)		
176	유산동	산24-1	임	13,403	13,403	13,403	국(산림청)		
177	유산동	산24-2	수	1,289	1,289	1,289	국(환경부)		
178	유산동	산25	임	8,722	8,722	8,722	경상남도		
179	유산동	산26	임	397	397	397	양산시		
180	유산동	산27	임	198	198	198	경상남도		
181	유산동	산28	임	496	496	496	경상남도		
182	유산동	산29	임	198	198	198	경상남도		
183	유산동	산47-5	수	300	300	300	국(환경부)		
184	유산동	산48-2	수	694	694	694	국(환경부)		
185	유산동	산49-2	수	298	298	298	국(환경부)		
186	유산동	산50-1	임	14,233	14,233	13,945	경상남도		
187	유산동	산50-5	도	26	26	26	국(기획재정부)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성명	주소	
188	유산동	산50-10	도	1	2	1	국(기획재정부)		
189	유산동	산50-16	도	21	40	21	국(기획재정부)		
190	유산동	산51-1	임	1,798	1,798	1,798	양산시		
191	유산동	산51-2	수	23	23	23	배달막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3 216동 2103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92	유산동	산52-2	수	992	992	992	국(환경부)		
193	유산동	산53-2	수	1,388	1,388	1,388	국(환경부)		
194	유산동	산61-2	수	43	43	43	국(환경부)		

11. 토지거래허가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토지거래 허가구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유산동 어곡동 등) 일원	1,846,898	-	1,846,898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 3. 19. ~ 2021. 3. 18.(1년)

12.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양산시 투자유치과(☎055-392-348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13. 관련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게재 생략)

● 양산시 공고 제2023-684호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산대학교 [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실버·생활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6번지 일원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산대학교 [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실버·생활단지] 조성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양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양산 도시계획시설사업
- 명칭 : 부산대학교 [학교: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실버·생활단지] 조성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총장

4. 사업규모

- 첨단산학단지 부지면적 : 390,348.8㎡
 - 건축면적 : (당초) 286㎡, (변경) 2,066.09㎡ (증1,780.09㎡)
 - 건축연면적 : (당초) 380.44㎡ (변경) 5,695.44㎡ (증5,315㎡)
- 실버·생활단지 부지면적 : 152,030.6㎡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12. 15. ~ 2024. 12. 31

6. 열람기간 :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23일(14일간)

7.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물금읍 범어리	2762-6	학	390,348.8	390,348.8	국(교육부)		첨단산학단지
2	물금읍 범어리	2762-12	학	152,030.6	152,030.6	국(교육부)		생활·실버단지
계				542,381.4	542,379.4			

● **의령군 고시 제2023-26호**

의령군관리계획(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2번지 일원 의령군관리계획(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의령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의령군수

1. 의령군관리계획(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 어린이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상동 어울림공원	어린이공원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02번지 일원	-	증) 5,990	5,990	-	중복결정 (중로3-2호선 158m ²)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어린이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상동 어울림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신설 A=5,990㎡ • 중로3-2호선 일부 중복 결정 A=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으로 제공하고자 어린이공원 신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1,103	중로 2-1 호선	소로 2-30 호선	일반 도로	-	1977.01.26. (경상남도 고시 제1977-127호)	중복결정 (중로3-2호선 15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중로 3-2호선	중로 3-2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로3-2호선 터널상부 어린이공원 중복 결정 - 중복결정 면적 A=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 결정에 따른 중복 결정

2.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총괄표

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원면적	5,990	5,990	100	
시설면적	3,041.40	3,041.40	50.8	
도로	1,174.30	1,174.30	19.6	
조경시설	181.8	181.8	3	
유회시설	1,213.60	1,213.60	20.3	어린이놀이터
휴양시설	471.7	471.7	7.9	휴게쉼터
녹지	2,948.60	2,948.60	49.2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 분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²)	비 고
총계			5,990.0	
시설소계			3,041.4	
도로		소계	1,174.3	
		도로	1,174.3	
조경시설		소계	181.8	
	①	조경석쌓기	79.5	
	②	옹벽	102.3	
유희시설		소계	1,213.6	
	가-1	어린이놀이터1	554.1	
	가-2	어린이놀이터2	418.1	
	가-3	어린이놀이터3	241.4	
휴양시설		소계	471.7	
	나-1	휴게쉼터1	232.3	
	나-2	휴게쉼터2	192.9	
	나-3	휴게쉼터3	46.5	
녹지소계			2,948.6	
녹지		소계	2,948.6	
	①	녹지	2,948.6	

3. 관계도면 : 생략(의령군 도시재생과 비치)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도시재생과(☎055-570-35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 고시 제2023-29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21-131호(2021. 5. 13.)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를 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 명칭: 고성군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대지면적: 8,747㎡
- 건축면적 / 연면적: 1,700.24㎡ / 7,185.34㎡(지하 2,674.53㎡, 지상 4,510.81㎡)
- 건축물 개요: 1개동, 지하 2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 성명: (당초)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김학빈 → **(변경)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김우용**

5.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기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협의 시

● 고성군 고시 제2023-30호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1. 고성군 고시 제2023-5호(2023. 1. 19.)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조성공사
- 명칭: 고성군 유스호스텔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 대지면적: 8,747㎡
- 건축면적 / 연면적: 1,700.24㎡ / 7,185.34㎡(지하 2,674.53㎡, 지상 4,510.81㎡)
- 건축물 개요: 1개동, 지하 2층, 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34
- 성명: (당초)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김학빈 → (변경)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김우용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없음)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4년 10월 31일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아래 참조

7.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8,747	8,747						
1	고성읍 신월리	657-9	657-9	잡종지	225	225	기획재정부					
2	고성읍 신월리	657-14	657-14	잡종지	376	376	고성군					
3	고성읍 신월리	산10	산10-9	임야	7,754	7,754	고성군					
4	고성읍 신월리	산13	산13-3	임야	181	181	박재수	수남동				미등기
5	고성읍 신월리	산13-1	산13-4	임야	13	13	박재수	수남동				미등기
6	고성읍 신월리	산14	산14	임야	198	198	신도준	진양군 평거면 우수리				미등기

● **고성군 공고 제2023-359호**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고성 Nobel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열람공고

1. 고성군 공고 제2018-1495(2018. 12. 20.)호로 공사완료 공고된,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53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고성 Nobel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15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사업
- 명칭: 고성 Nobel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사업의 면적(변경 없음): 1,400,466.1㎡
-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회원제 27홀 골프장
- 주요 변경내용
 - 저류지 조성(9개소→ 10개소) : (당초) 15,463㎡→ (변경) 29,110㎡(증 13,647㎡)
 - 조성녹지 변경: (당초) 447,938㎡→ (변경) 434,291㎡(감 13,647㎡)
- ※ 금회 시행: 저류지 추가 조성 1개소(13,6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경남 고성군 회화면 회진로 567
- 성명: (당초) (주)고성관광개발 대표이사 최경훈→ (변경) (주)고성관광개발 대표이사 박광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3년 12월 31일

6.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23일
- 열람장소: 고성군 도시교통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아래 참조

8.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고성 Nobel 컨트리클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1,400,466.1	1,400,466.1						
1	회화면 봉동리	1530	임야	222,227.3	222,227.3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2	회화면 봉동리	1531	채	1,033,887.0	1,033,887.0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3	회화면 봉동리	1532	임야	144,351.8	144,351.8	주식회사 고성관광개발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문현동)				

● **고성군 공고 제2023-362호**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0호선(배둔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성군 고시 제2020-119호(2020. 6. 1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347-43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0호선(배둔 도시계획도로)]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347-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성군계획시설(도로: 소로2-50호선) 조성사업
- 명칭: 배둔도시계획도로(소로2-5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연장 123m, 폭원 8m, 면적 1,02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사업의 착수일: 2022년 2월 23일
- 사업의 준공일: 2022년 12월 12일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055-670-25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 공고 제2023-372호**

고성군계획시설(항만: 병산항) 조성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경상남도 고시 제2009-4호(2009. 1. 8.)로 최초 군계획시설 결정된,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270-9번지 지선 공유수면의 군계획시설(항만: 병산항) 조성사업 실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고 성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270-9번지 지선 공유수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항만: 병산항) 조성사업
- 명칭: 어촌정주어항(병산항) 시설 확충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물량장 확장(927㎡)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 성명: 고성군수(해양수산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사업의 준공예정일: 2023년 9월 30일

6.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3년 3월 9일 ~ 2023년 3월 23일
- 열람장소: 고성군 도시교통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계				-	927						
1	삼산면 병산리	270-9번지 지선 공유수면	-	-	927	공유수면					

8. 관계도서: 실음 생략(고성군 도시교통과에 비치)

● **산청군 고시 제2023-40호**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따른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

산청군 일원의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산 청 군 수

1. 산청군관리계획 결정

- 1)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붙임
- 2) 관계도면: 게재생략

2. 관계도서는 산청군청(지역발전과, 055-970-73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붙임> 산청군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2	차황시장	주거	차황면 장위리 22-2 일원	-	86,433	산고 제1989-113호 (89.08.01)	
변경	2	차황시장	주거	차황면 장위리 22-2 일원	-	86,433	-	
기정	3	어서	주거	생초면 어서리 293-2 일원	-	269,139	산고 제1994-94호 (94.05.25)	
변경	3	어서	주거	생초면 어서리 293-2 일원	-	266,796	-	
기정	4	주상	주거	금서면 주상리 167-1 일원	-	286,135	경고 제1993-12호 (93.02)	
변경	4	주상	주거	금서면 주상리 167-1 일원	-	286,497	-	
기정	8	입석	주거	단성면 입석리 793-1 일원	-	109,605	산고 제1995-274호 (95.10.30)	
변경	8	입석	주거	단성면 입석리 793-1 일원	-	104,345	-	
기정	9	단계	주거	신등면 단계리 845 일원	-	216,231	산고 제1995-70호 (95.04.25)	
변경	9	단계	주거	신등면 단계리 845 일원	-	215,817	-	

■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차황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의 선형 부정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선형 조정
3	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조정 및 면적 축소 ◦ 면적=269,139m²→266,796m² 감) 2,34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의 선형 부정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선형 조정
4	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조정 및 면적 증가 ◦ 면적=286,135m²→286,497m² 증) 362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의 선형 부정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선형 조정
8	입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조정 및 면적 축소 ◦ 면적=109,605m²→104,345m² 감) 5,260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의 선형 부정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선형 조정
9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조정 및 면적 축소 ◦ 면적=216,231m²→215,817m² 감) 41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와의 선형 부정합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선형 조정

● 함양군 공고 제2023-312호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5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의견청취 공람·공고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04-2번지 일원의 “금천 군계획시설도로(소로2-35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9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04-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종 류		사 업 명	사 업 량	비 고
시설명	시설의 세분			
도로	소로2-35	금천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35호선) 개설공사	도로개설 L=43.0m, B=8.0m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도시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6. 12. 31.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공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경 남 공 보

제2601호

2023. 3. 9.(목)

7.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붙임 참조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조사

-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총 계 (7필지)				7,625	356						
1	안의면 금천리	204-2	도	53.0	9.0	국토교통부					
2	안의면 금천리	204-5	대	10.0	10.0	최*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 (부곡동)				
3	안의면 금천리	205-3	대	25.0	25.0	최*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 (부곡동)				
4	안의면 금천리	253-1	도	7295.0	70.0	국토교통부					
5	안의면 금천리	205-2	도	125.0	125.0	함*군					
6	안의면 금천리	211-1	대	69.0	69.0	신*숙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 월립리 ***-*				
7	안의면 금천리	206-4	대	48.0	48.0	박*애	경상남도 함양군 안이면 월립리 ***-*				

위 치 도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공고 제2023-26호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이차보전)’ 시행지침에 따라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어업인후계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선정년도 포함 2년 이내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발생에 따라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장

1. 제 목 : 수산업경영인 선정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9.~ 2023. 3. 23.(14일간)

3. 처분사유 :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선정 취소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순번	선정 년도	성명	주소	사업분야	취소사유
1	2021	정*원	경남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가길 6-*	어선어업	어업경영체 미등록

5. 기타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처분에 대한 의견제기 시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2023. 3. 22.(수)까지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55)254-3759,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778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남해지원(☎ 055-254-3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15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장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낙서면 정곡리 533번지 외 14필지 일원 면적 : 2,275㎡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사유 :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 점용목적 : 배수장 및 토출암거 설치(정곡, 여의배수장) ○ 시설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정곡1배수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출수로(1,000m/m×3런) : L=76.5m - 토출수로(600m/m) : L=25.5m, 돌망태(이불형) 80㎡ ②정곡2배수장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출관로(D=2300mm) L= 47.0m, 세굴방지공 : 전석쌓기 A= 973.0㎡ - 차수공 : 그라우팅 36공 (L=30.0m) ③여의1배수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출수로(600m/m×2런) : L=51m, 돌망태(이불형) 40㎡, 전기공사 : 1식 ④ 여의2배수장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출관로 (D=1500mm) L= 53.0m, 세굴방지공 : 전석쌓기 A= 649.0㎡ - 차수공 : 그라우팅 36공(L=30.0m)
점 용 기 간	당초 : 2018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변경 : 2023년 4월 22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2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김해시장(산림과)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 5-7번지 외 3필지 일원 면적 : 381㎡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창룡산 산림레포츠 숲길 진입구간 정비사업 ○ 시설개요 : 숲길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포장 : B=2.5m, L=50.0m - 목책(35경간), 목재난간(46경간)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6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